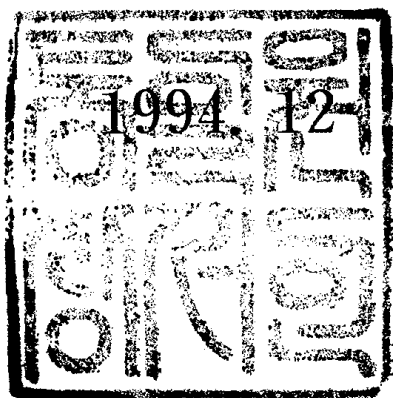


統獨過程研究 94—VII

# 東·西獨 頂上會談 事例集



統一院

0 이 책자는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자료들을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취합·정리한 것입니다.

0 통일원은 주독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연구소로부터 통독관련 연구자료 및 양독간 교류협력 실태자료를 송부받고 있으며,

당실은 분단국 통합사례연구의 일환으로 독일통일 관련자료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0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 《 목 차 》

○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 .....	1
○ 동·서독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접촉 .....	20
○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의 동독방문 세부일정('70. 3. 19) .....	43
○ 『빌리·슈토프』 동독수상의 서독방문 세부일정('70. 5. 21) .....	53
※ 부록 : 동·서독 1, 2차 정상회담 기조발언문 .....	57
1. 동·서독 1, 2차 정상회담 기조발언문 요지 .....	59
2. 동·서독 1, 2차 정상회담 기조발언문(全文) .....	62
가. 제1차 정상회담(에어플트, '70. 3. 19) .....	62
①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문 .....	62
②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 .....	74
③ 공동성명 .....	82
나. 제2차 정상회담(캣셀, '70. 5. 21) .....	84
①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회담전 성명문 .....	84
②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의 답변 .....	85
③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오전) .....	86
④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문(오전) .....	90
⑤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오후) .....	100
⑥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문(오후) .....	108

# 東・西獨 頂上會談 事例

## 《 目 次 》

1. Brandt-Stoph간 第1次 頂上會談  
(東獨 Erfurt, '70. 3. 19)
2. Brandt-Stoph간 第2次 頂上會談  
(西獨 Kassel, '70. 5. 21)
3. Schmitt-Honecker간 第3次 頂上會談  
(東Berlin 근교, '81. 12. 11-13)
4. Khol-Honecker간 第4次 頂上會談  
(Bonn, '87. 9. 7-11)

## 1. Brandt-Stoph간 第1次 頂上會談 (東獨 Erfurt, '70. 3)

### 가. 추진경과

- o '69. 10. 28, Brandt 수상이 취임시정 연설에서 양독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동독측에 협상 제의
- o '69. 12. 17, 동독 국가수반(Walter Ulbricht)이 서독대통령(Gustay Heinemann)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동·서독간 동등한 관계수립을 골자로한 국가조약안 협상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
  - 협상대표로 Willy Stoph 동독수상과 Otto Winzer 동독 외무상을 지명함.
- o '69. 12. 19, 서독대통령이 이를 환영한다고 회신함.
- o '70. 1. 22, 서독 수상(Brandt)이 동독수상(Stoph)에게,
  - “두 국가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중에서도 동등한 관계의 설정문제에 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실질문제에 관한 협상을 통해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상회담 수락을 밝힘.
  - 회담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대표로 Egon Franke 서독 내독 관계성장관을 지명함.
- o '70. 2. 20, 양측은 3월 2일에 첫 회담준비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

- 실무접촉 대표로 ① 서독측은 수상실 차관보인 Dr. Ulrich Sahm을, ② 동독측은 내각사무처 부처장인 Dr. Gerhard Schuessler를 각각 임명함.

나. 실무회담 개최 ('70. 3월 3, 5, 9, 12일)

- o 실무접촉 과정에서는 『의제문제』보다 『장소문제』가 더 쟁점이 됨.
  - 동독측은 Brandt 서독수상이 西Berlin을 거쳐 東Berlin을 방문하는 것에 반대
  - 서독측은 여론조사 결과, 서독주민의 86%가 회담장소로 Berlin 이외 지역을 거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계속 주장
  - 결국 동독측이 제3의 장소로 Erfurt를 제안, 서독측도 이를 수락함.

다. 정상회담 개최 ('70. 3. 19)

- o '70. 3. 19, 07:45 Brandt 수상 일행은 특별열차편으로 국경에 도착, 동독 내각사무처장 Dr. Michael Kohl과 외무성 의전장 Horst Hain의 영접을 받음.
- o 특별열차는 , 09:30 Erfurt 중앙역에 도착, 마중나온 동독 수상 Willy Stoph의 환영을 받음.
- o 양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협상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 東獨側(7개 항)

1. 국제법의 기초위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동독과 서독  
간에 동등한 정상적인 관계의 수립, 어떤 형태로든지  
서독정부에 의한 단독대표라는 월권의 포기
2. 다른 국가의 대외관계에서의 불간섭, 할슈타인 원칙  
궁극적이고도 명백한 포기
3.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제한없는 국제법상의 주체  
의 상호승인, 영토보전과 기존 국경선 불가침성의  
상호승인하에 동·서독간에 무력 포기
4. 동독과 서독의 UN기구에의 가입신청
5. 핵무기 소유의 포기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  
처분권의 포기, 생화학무기의 생산, 사용 및 저장의  
포기, 군비지출의 50% 감축
6.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재의 제거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들의 토의
7. 동독에 대한 서독의 모든 부채의 청산과 서독에 의한  
배상 규정 마련

- 西獨側 (6개 항)

1. 양 국가는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수호할 의무를 짐, 양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모든 차별의 배제, 영토보존의 존중, 모든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의무 및 양측경계의 존중의무 이행
3. 조약 파트너의 영역안에 있는 사회구조를 폭력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함.
4. 양 정부는 선린관계적 협력, 특히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 상호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함.
5. 전체로서의 독일과 Berlin에 관한 강대국의 현존하고 있는 권리와 책임들은 존중되어야 함.
6. Berlin과 그를 에워싼 지역의 개선에 관해 합의하려는 강대국의 노력을 지지해야 함.

o Stoph는 연설을 통해 동독이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서독측으로부터 제한조건없이 국제법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서독은 이미 파리조약을 통해 스스로 외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동서독 관계는 내독간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서독측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독국방성이 동독과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함.
  - 원칙 제7항에서 제기한 배상은, '61. 8. 13 Berlin장벽 구축 이전의 국경개방 때 서독측에 의한 인력의 유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탈출한 고급 인력)에 대한 대가라고 함.
- o 서독측은, 양국간의 관계는 차별금지·동등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한편이 다른 한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Brandt는 Stoph의 서독국방성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원칙 제2항 상호 차별금지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포기를 의미한다고 함.
  - Brandt는 동독의 국제관계에 관한 서독과 그 우방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독측의 태도에 달려 있고, 독일민족의 자결권은 그 어떤 조약을 통해서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확인함.
  - 마지막으로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해 '70. 5월초에 Stoph를 서독으로 초청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특별전권위임자나 공동위원을 임명하자고 제안했음.
- o '70. 3. 19 오후에 속개된 Brandt와 Stoph간의 단독회담에서,
- Stoph는 Brandt의 특별전권위임자나 공동위원의 임명 제안을 동독의 대사교환제의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였고,

- Brandt는 원칙 제7항에서 동독측이 제안한 배상요구를 “양측이 각기 도입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거부함.
- o '70. 3. 19 오후, Brandt 수상은 Winzer 동독 외무상의 안내로 나찌 수용소 기념관이 있는 Buchenwald를 방문하여 현화함.
  - 이곳 방문시 데모대들이 “서독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군국주의와 신나찌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서독의 노동자와 학생들의 민주적이 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o '70. 3. 19 저녁, 양측은 짙막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70. 5. 21, Kassel에서 제2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함.
  - 회담대표중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내독관계성장관은 각각 “장관”(Minister)으로만 호칭됨.
- o 동독정부는 51개국 616명의 언론인에게 동 회담의 취재를 허용함.
  - 이 중에는 136명의 서독 언론인과, 15명의 西Berlin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음.
- o '70. 4. 29, 양독간에 상호협력이 증대되리라는 기대속에서 양독 우편성은 ① 상호 우편배달에 따른 대금청구와 청산에 관한 합의, ② 전화 및 텔레스선 설치문제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었음.

## 2. Brandt-Stoph간 第2次 頂上會談(西獨 Kassel, '70. 5)

### 가. 정상회담 개최 ('70. 5. 21)

- o 오전에 동독측의 Stoph 수상은 기초연설에 앞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차별적인 입법조치에 대해 항의함.
  - “서독의 법률과 법령, 판결문, 서독국가기관의 결정 및 행위들이 그 기존 국경안에 있는 서독과 서독시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 관할권을 넘어 동독과 동독 시민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
  - 이에 대해 Brandt 수상은 준비한 연방공보처에서 작성한 동·서독 입법조치에 관한 문서를 전달하며 동독측의 주장을 반박함.
  - 서독정부는 동독을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련의 우리 법률들은 동독주민에게 명백히 이득을 주고 있음.
  -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독일 땅 위에 있는 독일민족이 현존하는 사실상 두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따라서 서독은 입법실제에 있어 기본법의 효력권에 대해서만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서독의 국적규정에 관한 기본법 제116조는 동독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서독 통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 기본법의 효력권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거나 서독의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됨.

- 0 점심 휴식시간에 동독 Stoph 수상은 서독 공산당 (DKP) 당수인 Kurt Bachmann을 접견하고 환담함.
- 0 1차때와 달리 회담후 다음번 회담속계를 언급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음.
- 0 동독측은 동독으로 떠나기에 앞서 Brandt 수상의 안내로 파시즘희생자 위령탑을 방문하고 헌화함.

#### 나. 회담장 밖의 극우단체와 극좌단체간 충돌

- 0 극우단체의 청년 3명은 회담장의 동독국기를 끌어내려 찢어버렸으며, 동독회담 대표들에게 투석을 하고, 파시즘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함.
- 0 한편 서독공산당 (DKP)은 1968년 서독정부로부터 창당이 허용된 이래 이번 동독수상의 방문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주요 계기로 삼고,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와 타협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함.
  - 서독 공산당은 애초 노조, 사민당내 좌파와 자민당내의 진보세력을 망라하여 십만이상의 시위대를 Kassel로 동원할 계획이었으나, 서독공산당원과 다른 좌파그룹 등 3,000명을 동원하는데 그침
  -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층을 동원하여 서독공산당의 잠재적 지지계층을 확인할 수 있게됨.
  - 서독공산당의 시위목표는, Kassel에서의 협상실패가 서독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음.

다. 서독측 주장요지

- o Brandt 수상은 양독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과 조약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20개항을 제시함.
- 1. 자신의 헌법에서 민족의 통일(단일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독과 동독은 평화와 보장, 미래와 민족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독일안에 있는 양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주민과 양국가간의 결속관계를 개선하며, 상호분단으로 인한 불이익들을 제거함에 기여할 조약에 합의함.
- 2. 그 조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태로 양측의 입법기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 3. 양측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인권, 동등권, 평화적 공동번영 및 차별금지의 기반위에서 관계를 맺겠다는 의사를 공표함.
- 4. 양측은 상호간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중지하고, 그들간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짐. 이것에는 영토 보전과 기존 경계선 존중의무도 포함됨.
- 5. 양측은 그들의 내적인 통치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어 양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함.
- 6. 양측의 어느나라도 다른 나라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다른나라를 대표할 수 없음.
- 7. 양측은 다시는 독일땅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언명함.

8. 양측은 제민족의 평화적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시킬 의무를 짐.
9. 양측은 구주안보를 강화시킴에 기여하는 군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확인함.
10. 이 조약은 두개의 국가안에서 살고 있지만 한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독일과 독일인의 특수상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부터 출발해야 함.
11. Berlin과 전체로서의 독일에 관한 이들 강대국의 특수한 권리와 합의에 입각하는 프랑스, 영국, 미국 및 소련에 대한 모든 의무들은 불변임.
12. Berlin과 독일에 관한 4대강국 합의들은 존중됨. 西베를린과 서독간에 성립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양측은 Berlin 지위의 정상화를 위한 4대강국의 노력을 지지할 의무를 짐.
13. 양측은 어떤 분야에서 양국가의 입법조치들이 상호저촉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함. 아울러 양국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상호 저촉성이 제거되어야 함. 또한 양국은 양측의 국가고권이 각기 자국의 영토안에 한정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함.
14. 이 조약은 상호간의 여행왕래를 확대시키고 또한 자유왕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함.
15. 이산가족으로 생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

16. 양독간 경계선에 접한 군과 면들이 그곳에 현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웃끼리 해결함을 가능케 해야 함.
17. 양측은 특히 교통, 통신, 정보교환, 과학, 교육, 문화, 환경문제들 및 '스포츠' 분야에 걸쳐 상호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협동을 강화하고, 확대함은 물론 구체적 조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함.
18. 양독간의 경제교류를 위해 앞으로도 기존의 협정, 위임(사항)과 합의들이 노력을 가짐. 통상관계는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함.
19. 양측의 정부들은 장관급의 전권대표자를 임명하고 전권대표자의 상주 수임자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함. 전권대표자와 그의 수임자의 과업은 상세히 확정되며, 그들에게는 각기 정부청사가 있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에 필요한 업무면제와 특권이 보장됨.
20. 서독과 동독은 그들간에 합의할 수 있는 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조약에의 가입과 협력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

라. 동독측 주장요지

o Stoph는 오전·오후 2회에 걸친 연설을 통해,

- Brandt 수상이 제시한 20개항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분명히 거부 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함.

- 동독측으로서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없이 양독관계의 그 어떤 문제도 제도화가 불가능함.
- 동독측은 파리조약 7조의 효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독일민족의 통일은 이미 불가능함.
- 동독에서는 이미 포츠담 협정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4대 점령군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단지 서독과 관련된 문제임.
- 西Berlin은 결코 서독에 속하지 않으며, 동독 영토내에 존재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체임.
- 양독 국가가 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서독측이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문제에 관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때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

### 3. Schmitt-Honecker간 第3次 頂上會談 (東Berlin 근교, '81.12)

- o 관계 정상화이후 양독관계는 심화 발전되었으나, 국제적인 신냉전 기운은 고조되는 가운데 3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음.
-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폴란드 노조사태, 소련의 유럽 핵무기 배치에 맞선 NATO의 중거리 핵탄두 서독 배치로 10년간의 긴장완화 이후 유럽에서 새로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음.



- 동독측으로서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없이 양독관계의 그 어떤 문제도 제도화가 불가능함.
- 동독측은 파리조약 7조의 효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독일민족의 통일은 이미 불가능함.
- 동독에서는 이미 포츠담 협정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4대 점령군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단지 서독과 관련된 문제임.
- 西Berlin은 결코 서독에 속하지 않으며, 동독 영토내에 존재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체임.
- 양독 국가가 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서독측이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문제에 관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때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

### 3. Schmitt-Honecker간 第3次 頂上會談 (東Berlin 근교, '81.12)

- o 관계 정상화이후 양독관계는 심화 발전되었으나, 국제적인 신냉전 기운은 고조되는 가운데 3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음.
-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폴란드 노조사태, 소련의 유럽 핵무기 배치에 맞선 NATO의 중거리 핵탄두 서독 배치로 10년간의 긴장완화 이후 유럽에서 새로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음.

- 미·소간의 관계악화로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던 동·서독은 구주의 긴장완화 유도와, 국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독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었음.
- 0 제3차 정상회담은 신냉전하에서 독일민족의 현명함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회담임과 동시에, 동·서독간에 제조약과 협정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내독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한 회담이었음.
- 서독의 Schmitt수상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성실한 이행, CSCE 결의사항 준수, 소련 핵무기의 위협제거, 구주평화를 위한 동·서독의 의무를 강조했음.
  - 동독의 Honecker 서기장은 동·서진영간 대립의 첩병으로 전락한 동·서독의 긴장완화, 구주평화유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중거리 핵탄두의 서독 배치를 비난함.
- 0 양측은 정상회담이후 제1, 2차 때완 달리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별도로 실무자급(내독성장관 - 동독외상, 경제장관과 경제담당 정치국원) 회담을 열어 실질관계 개선에 합의를 유도했음.
- 공동성명에서는 평화정착과 긴장완화가 선언적으로 강조되었음.
  -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청소년·체육·학술·문화·언론 분야의 교류, 내독간 국경중 하안수역보호, 더 나은 기자 취재활동 편의보장, 여행·방문 조건의 완화, 무역·경제·기술협력의 확대, 각료급 상호방문등에 합의하였음.
  - 서독측은 Honecker를 서독에 공식초청하였고, Honecker는 이를 수락하여 제4차 정상회담 개최의 기틀 마련

### <제3차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 0 독일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됨.
- 0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군사 동맹국에 속해있지만, 양측이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평화의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함.
- 0 양국은 국가간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연합 헌장과 CSCE의 목표 및 원칙을 재확인함.
- 0 양독간 기본조약과 후속협정을 기초로 양독관계를 발전시킴.
  - 이산가족의 재결합, 인도적인 분야에서 해당인들의 고통 완화에 중점
  - 여행자, 방문자 교류확대, 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한 쟁점 사항 개선, 학문·과학·기술·교육분야에서 협력강화
  - 문화교류 증점, 언론이 활동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간 정보교류의 중요성 강조
  - 내독간 교역의 강화와 제3국에서 경제협력(소련의 천연 가스개발 및 공급과 관련) 강화
- 0 CSCE 후속회의의 결정사항 중 군비축소 회담에 지지표명
- 0 다른지역 분쟁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UN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0 양독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정치적인 분야에서 고위급 접촉, 다른 영역에서 대화와 접촉의 중요성 강조

#### 4. Khol-Honecker간 第4次 頂上會談 (Bonn, '87. 9)

- o 제4차 정상회담은 제3차 정상회담이후 조속히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적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음.
  - 사민·자민 연정의 Schmitt 수상이 퇴임하고, 기민·자민 보수 연립내각의 Khol 수상이 취임함에 따라 연기됨.
    - 아울러 서독인 여행자가 동독 점문소에서 고문치사 당한 사건이 발생, 내독관계가 냉각되었음.
  - 소련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대형 재정차관 제공('83. 10억 DM, '84. 9억 5천만DM)에 대해 비난을 함으로써 동·서독간의 관계 급진전을 우회적으로 경고함에 따라, Honecker의 서독방문은 연기됨.
    - '84. 7. 17 소련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서독은 동독의 체제붕괴를 노려, 정치·경제적 유대라는 미명하에 동독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
  - 소련의 체르넨코 서기장은 소련내부의 권력변동기에 편승한 동구제국의 대서방 접근, 특히 동독의 대서독 접근을 견제함으로써 방문이 연기됨.
- o Honecker의 서독방문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됨.
  - 체르넨코 장례식의 동·서독 양정상 비공식 회동에서 양독간 선린우호관계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에 합의함.
  -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동·서 진양간 화해분위기가 지속된 이후, '87. 4 고르바초프는 동독방문시 Honecker의 서독방문을 양해함.

- 0 Honecker 서기장은 서독으로부터 의전상으로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고향을 포함한 4개주 지역 방문이 있었음.
  - 서독측은 내독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국가 연주, 국기계양, 의장대 사열에 합의했음.
- 0 동 정상회담에서 동·서독간의 거의 마지막 협약이 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보와 경험교환 등 3개협정이 서명되고, Kohl수상의 동독방문 초청이 수락·합의되었음.
- 0 양측은, 국제정치적 현실과 유럽의 평화유지에 대한 공동 책임에 대해서는 상호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견차이를 해소시키지 못해 통일문제는 미해결인채 유보되었음.
  - 특히 Honecker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관계를 『물과 불의 관계』로 비유하며, 동독체제의 차별성을 재삼 강조 했음.
- 0 그러나 동·서독은 경제협력 강화와 인적교류 확대, 정치적 차원의 접촉 강화등에 합의하여 정상간의 접촉을 통해 내독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제4차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 0 상호이해와 현실인식이 건설적·실질적 관계를 구축하는 기본이 되어야 하며, 민족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에 견해 차이가 있으나, 평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내정·외교의 자주·독립성을 상호 존중함.

- 0 선린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해 친족왕래, 청소년교류, 관광 여행, 도시자매결연, 체육·문화교류 등을 강화하고 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치적 차원 및 여타분야에서의 접촉을 강화함.
- 0 통상이 동서독 관계발전을 안정시키는 주요요소이며, 기계·전자·에너지·환경관계 기술제품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경제합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교섭을 시작함.
- 0 유럽의 평화에 대한 역사적 공동책임에서 독일내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와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며, 동서독관계는 구주에서의 협력과 대화촉진을 통한 동서긴장완화의 관건임.
- 0 서로의 군사동맹 (NATO·WARSAW) 내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구주의 평화는 군사적 수단으로서는 달성이 불가능함.
- 0 헬싱키 합의사항의 실현을 적극 추구하고 미·소간을 포함한 동서군축협상 타결에 기여하고 우주의 군사화 방지와 핵무기의 제한, 철폐 및 재래식무기의 감축을 추구하고.

## ※ 頂上會談 및 高位級 接觸 概觀

회담 · 접촉대표		일시 및 장소		논의내용
공 식 회 담	1. 브란트 수상 - 슈토프 수상	1970. 3. 16	에어푸르트 (동독)	양국관계 정상화
	2. 브란트 수상 - 슈토프 수상	1970. 5. 21	카셀 (서독)	양국관계 정상화
	3. 슈미트 수상 - 호네커	1981. 12. 11 ~ 12. 13	동베를린 근교 (동독)	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
	4. 콜수상 - 호네커	1987. 9. 7 ~ 9. 11	본 (서독)	동독인들의 서독 자유 여행, 환경 · 과학 기술분야 교류
	5. 콜 수상 - 모드로 수상	1989. 12. 19 ~ 12. 20	드레스덴 (동독)	대동독 경제 지원 및 동독 개혁
	6. 콜 수상 - 모드로 수상	1990. 1. 16	본 (서독)	대동독 경제 지원 및 통일방안
비 공 식 접 촉	1. 카스텐스대통령 - 호네커	1982. 11. 14	모스크바 (소련)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석
	2. 콜수상-호네커	1984. 2. 14 ~ 9. 11	모스크바 (소련)	안드로포프 장례식 참석
	3. 콜수상-호네커	1985. 3. 12	모스크바 (소련)	체르넨코 장례식 참석

## 동·서독 정상회담 및 고위급 접촉

### 1-3. 정상 회담 및 고위급 접촉

#### 1-3-1. 회담 및 접촉 개관

회담·접촉대표		일시 및 장소		논의내용
공 식 회 담	1. 브란트 수상 - 슈토프 수상	1970. 3. 19	에어푸르트(동독)	양국관계 정상화
	2. 브란트 수상 - 슈토프 수상	1970. 5. 21	카셀 (서독)	양국관계 정상화
	3. 슈미트 수상 - 호네커 국가평의회위원장	1981. 12. 11 ~12. 13	동베를린 (동독) 근교	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4. 콜 수상 - 호네커 국가평의회위원장	1987. 9. 7 ~ 9. 11	본 (서독)	동독인들의 서독여행, 과학 문화분야 교류
	5. 콜 수상 - 모드로 수상	1989. 12. 19 ~12. 20	드레스덴 (동독)	대동독 경제 지원 및 동독 개혁
	6. 콜 수상 - 모드로 수상	1990. 1. 16	본 (서독)	대동독 경제 지원 및 통일 방안
비 공 식 접 촉	1. 카스텐스 대통령 - 호네커 국가평의회위원장	1982. 11. 14	모스크바 (소련)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석
	2. 콜 수상 - 호네커 국가평의회위원장	1984. 2. 14 ~ 9. 11	모스크바 (소련)	안드로포프 장례식 참석
	3. 콜 수상 - 호네커 국가평의회위원장	1985. 3. 12	모스크바 (소련)	체르넨코 장례식 참석

#### 1-3-2. Brandt-Stoph의 에어푸르트 (Erfurt)에서 양독간 첫 정상회담

- 양독간의 첫 정상회담은 Brandt 수상이 1969. 10. 28 취임시정연설에서 양독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동독측에 협상을 제의한 이래, 먼저 동독측의 구체적인 회담개최 제안에 의해 이루어짐.



- '69.12.17 동독 국가수반인 Walter Ulbricht는 서독대통령 Gustav Heinemann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동·서독간 동등한 관계수립을 골자로 한 국가조약안 협상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협상대표로 Willy Stoph 동독수상과 Otto Winzer 동독외무상을 지명함.
- 이에 대해 Heinemann 대통령은 Ulbricht에게 '69.12.19 협상제안을 환영하며 서독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회신함.
- '70.1.22 서독 Brandt 수상은 동독수상 Stoph에게 서신을 보내고 "두 국가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중에서도 동등한 관계의 설정문제에 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실질문제에 관한 협상을 통해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독간 정상회담 (수상간)을 수락한다고 밝힘.
  - 아울러 회담의 사전준비와 진행 등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대표로 서독측에서는 Egon Franke 내독관계성 장관을 지명함.
- 그 이후 Dr.Horst Ehmke 서독 수상실장관과 Michael Kohl 동독 내각 사무처 처장간의 전문교환을 통해, '70.2.20 양측은 '70.3.2 첫 회담 준비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
  - 실무접촉 대표로 서독측은 수상실 차관보인 Dr.Ulrich Sahn을, 동독측은 내각 사무처 부처장인 Dr.Gerhard Schuessler를 각각 임명함.
  - 이 실무회담은 '70.3월 3, 5, 9, 12일에 각각 개최됨.
- 실무접촉 과정에서는 의제문제보다 회담장소 문제가 더 쟁점이 되었음.
  - 동독측은 '70.3.9 양독 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Brandt 서독수상이 서베를린을 거쳐 동베를린을 방문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함.
  - 서독측은 Tuebingen의 Wicker-Institut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독 주민의 86%가 회담장소로 Berlin 이외의 지역을 거부하고 있음을 상기

시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결국 동독측은 서베를린 문제로 제기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3의 장소로 Erfurt를 제안했고, 서독측도 이를 수락함.
- o Brandt 수상 일행은 특별열차편으로 '70.3.19일 7:45 에 국경에 도착했으며, 동독 각료회의 내각사무처 처장인 Dr.Michael Kohl과 외무성 의전장인 Horst Hain의 영접을 받음.
- o 특별열차는 '70.3.19일 9:30에 Erfurt 중앙역에 도착했으며, 마중나온 동독수상 Willy Stoph는 "나는 당신이 동독땅을 밟게 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나의 초청을 수락하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라고 짤막한 인사말을 건네고 양측은 각 회담대표를 소개함.
- o '70.3.19 Erfurt 첫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기초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협상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

- 동독측 (7개항)

1. 국제법의 기초위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동독과 서독간에 동등한 정상적인 관계의 수립, 어떤 형태로든지 서독정부에 의한 단독 대표라는 월권의 포기
2. 다른 국가의 대외관계에서의 불간섭, 할슈타인 원칙의 궁극적 이고도 명백한 포기
3.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제한없는 국제법상의 주체의 상호 승인, 영토보전과 기존 국경선 불가침성의 상호승인하에 동·서독간에 무려 포기
4. 동독과 서독의 유엔기구에의 가입신청
5. 핵무기 소유의 포기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 처분권의 포기, 생화학무기의 생산, 사용 및 저장의 포기, 군비지출의 50% 감축

6.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재의 제거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들의 토의

7. 동독에 대한 서독의 모든 부채의 청산과 서독에 의한 배상 규정 마련

- 서독측 (6개항)

1. 양 국가는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수호할 의무를 짐. 양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모든 차별의 배제, 영토 보존의 존중, 모든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의무 및 양측경계의 존중 의무 이행

3. 조약 파트너의 영역안에 있는 사회구조를 폭력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함.

4. 양 정부는 선린관계적 협력, 특히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 상호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함.

5.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강대국의 현존하고 있는 권리와 책임들은 존중되어야 함.

6. 베를린 그리고 베를린을 에워싼 지역의 개선에 관해 합의하려는 강대국의 노력을 지지해야 함.

- 동독측은 Stoph의 연설을 통해 이날 회담에서 동독이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서 서독측으로부터 제한조건없이 국제법적인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서독은 이미 파리조약을 통해 스스로 외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양 국가간의 관계는 내독간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Stoph는 양독은 서로 상이한 사회체제를 갖고 있으며, 서로 그 어떤 간섭이나, 체제간의 잘못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Brandt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동독공산당 (SED)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초위에 차후에 통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서독 내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서독측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독국방성이 동독과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함.

- 원칙문제 7항에 제기한 배상은, 1961.8.13 베를린장벽 구축 이전에 국경이 개방되어 있을 때 서독측에 의해 저질러진 “경제전쟁” (Wirtschaftskrieg)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탈출한 고급 인력)에 대한 대가라고 함.

- 서독측은 양국간의 관계는 차별금지, 동등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한편이 다른 한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Brandt는 Stoph의 서독국방성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상호 차별금지 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함.

- Brandt는 자신의 '69.10.28자 서독의회에서의 시정연설을 상기 시키며 동독의 국제관계에 관한 서독과 그 우방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독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함.

- 아울러 Brandt는 독일민족의 자결권은 그 어떤 조약을 통해서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확인함.

- 마지막으로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해 '70.5월초에 Stoph를 서독으로 초청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특별전권위임자나 공동위원을 임명 하자고 제안했음.

- '70.3.19 오후에 속개된 회담은 Brandt와 Stoph 간의 단독면담으로 이루어졌는데, Stoph는 Brandt의 특별전권위임자나 공동위원의 임명 제안을 동독의 대사교환제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 하였고, Brandt는 원칙문제 7항에서 동독측이 제안한 배상요구를 “양측이 각기 도입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거부함.

- '70.3.19 오후에 Brandt 수상은 Winzer 동독 외무상의 안내로 이전 나찌 수용소 기념관이 있던 Buchenwald를 방문하여 헌화함.
  - 이곳 방문시 데모대들이 “서독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군국주의와 신나찌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서독의 노동자와 학생들의 민주적이 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 '70.3.19 저녁 양측은 짙막한 공동성명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 양측은 '70.5.21 Kassel에서 제2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함.
  - 양국의 회담대표중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내독관계성 장관은 각각 “장관”(Minister)로만 호칭됨.
- 동독정부는 Erfurt 정상회담에서 51개국 616명의 언론인에게 취재를 허용함.
  - 이 중에는 136명의 서독 언론인과, 15명의 서베를린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음.

### 1-3-3. Brandt - Stoph의 카셀 (Kassel) 제2차 정상회담

- 1970년 5월 21일 양 독일국가는 에어푸르트 (Erfurt)에서 합의한 대로 양독간의 관계수립을 위한 제2차 수상간 정상회담을 가졌음.
  - 오전에는 양측의 각각 기조연설 (서독측이 먼저)이 있었던 바, 동독측의 Stoph 수상은 기조연설에 앞서 동독을 차별하는 서독 연방법의 국제법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서독측을 비난했음.
  - 점심 휴식시간에 동독 슈포트 수상은 서독 공산당 (DKP) 당수인 쿠어트 바흐만 (Kurt Bachmann)을 접견하고 환담함.
  - 오후에는 양측이 제2차로 각각 입장을 설명했으며, 그 이후는 또 한번의 브란트-슈토프간 단독회담을 가짐.

- 에어푸르트에서와는 달리 회담후 다음 번 회담속계를 언급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음.
  - 동독으로 떠나기에 앞서 동독측은 브란트 수상의 안내로 파시즘 희생자 위령탑을 방문하고 헌화함.
-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장 밖에서는 극우단체와 서독공산당 (DKP)이 주도하는 극좌단체간의 충돌이 일어났음.
- 극우단체의 청년 3명은 회담장의 동독국기를 끌어내려 찢어버렸으며, 동독회담 대표들에게 투석을 하고, 파시즘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함.
  - 한편 서독공산당 (DKP)은 1968년 서독정부로부터 창당이 허용된 이래 이번 동독수상의 방문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주요 계기로 삼고, 대대적인 인력동원을 계획하고 서독정부에게는 동독정부와 타협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함.
    - 서독 공산당은 애초 노조, 사민당내 좌파와 자민당내의 진보적인 세력을 망라하여 십만 이상의 시위대를 카셀로 동원할 계획이었으나, 서독공산당원과 소수의 다른 좌파그룹 등 3,000명을 동원하는데 그침.
    -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층을 동원하여 이를 계기로 서독내에서 서독공산당의 잠재적 지지계층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서독공산당의 시위계획의 목표는, 동독공산당은 사회주의 통일당 (SED)이 동독주민에게 그려왔듯이, 서독공산당을 서독주민에게 카셀에서의 협상실패가 서독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하였음.
- 브란트 수상은 양독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과 조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20개 항을 제시함.
- 동독측 슈토프 수상은 기초연설에 앞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차별적인 입법조치에 대해서 항의함.

- 그는 “여전히 서독에는 서독의 정부기관들과 재판소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서독의 국경선을 넘어 동독과 동독시민들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률, 판결, 국가적 행위의 전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주장함.
  - 아울러 브란트 수상에게는 “서독의 법률과 법령, 판결문, 서독국가 기관의 결정 및 행위들이 그 기존 국경안에 있는 서독과 그의 시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동독과 그의 시민들에까지 국제법을 위반하여 확대함은 무효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브란트 수상은 준비한 연방공보처에서 작성한 동·서독 입법 조치에 관한 문서를 전달하며 동독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동독은 서독 입법에 있어 ‘내국’ 이라는 개념이 1937.12.31의 경계선안의 제국영역으로 알고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동독의 견해에 의하면 서독은 이로써 다른 국가와 그 국가의 주민들에 관한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적인 단독대표라는 월권’ 이 문제되고 있고, 새로운 동방정책과 구주평화질서를 위해 서독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배후에는 침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고, 이는 ‘법률적인 침략’ 또는 ‘계획된 합병의 법률적인 선제 조치’ 라고 주장하고 있음 …
  - … 서독정부는 동독을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해 ‘법률적인 침략책’ 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음. … 오히려 일련의 우리 법률들은 동독주민에게 명백히 이득을 주고 있음. 특히 내독간 (양독) 경제교류에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하여 동독에게 상당한 재정적인 이득을 만들어 주고 있는 1961년 6월 21일자의 관세법은 물론, 구주경제공동체 내에서 서독의 노력에 의하여 독일 내의 양 국가의 무역과 구주경제공동체의 공통적인 무역정책의 규제들을 구주경제공동체의 조약에서 제외시키고, 그리하여 동독에 매년

마다 1억 ‘마르크’ 이상 규모의 이득을 제공해주고 있는 규정을  
관철시킨 1957년 3월 25일자의 양독간 통상에 관한 ‘의정서’ 를  
언급할 수 있음.

…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독일 땅 위에 있는 독일민족은 1970년에  
현존하는 사실상의 경계안에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는 인식  
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기반위에서 서독은 그의 입법  
실체에 있어 기본법의 헌법질서가 기본법의 효력권에 대해서만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확신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어떤 형태로든  
동독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서독의 법률들이 그의 형식적인 효력을  
1937년 12월 31일자의 경계안에 있었던 옛날의 독일제국의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들은 그의 실제적인  
적용을 기본법의 효력권에 국한시키고 있음.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적  
으로 형식상 1937년 12월 31일자의 경계에 있던 독일제국의 영역’ 에  
까지 요구하고 있는 1967년 5월 29일자의 매상세법의 적용을 관세관청  
관할권에 관한 규정들에 의해 오직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 있는  
그의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에 국한시키고 있음.

… 1945년 이후 독일 점령지대들간에 완전한 법의 평등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동독과 서독에 법률체계가 각기 별도로 발전했고 1949년  
이후 동독에서는 전해오는 동독법을 새로운 입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기하려는 경향이 명백히 나타나기 시작했음.  
동독의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이러한 새로운 입법은 어떤  
경우 빈번히 그의 효력을 서독에도 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음.  
그에 대한 좋은 예는 소위 1950년 12월 15일자의 평화보호법이 바로  
그것임.

… 항의를 받고 있는 서독의 국적규정에 관한 기본법 제116조는 동독  
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서독 국가권력 행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기본법 제116조는 그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 기본법의  
효력권안에 자기 주소 또는 일시적인 체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에게만 해당하거나 자신이 서독의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함. … 동독의 형법전 제3장 제80조를 근거로 하여 ‘다른 국가의



시민들 및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동독의 주권에 대한 범죄를 또는 동독에 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동독 밖에서 범한 범행때문에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음. 1950년 12월 15일자의 평화보호법 제3장 제10조는 '독일국가 시민의 행위가 동독의 영역안에서 범해지지 않는 경우, 비록 그 행위자가 동독의 영역안에서 여하한 주소나 통상적인 체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독의 최고재판소가 관할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 1965년 12월 12일자 동독친족법 시행법 제1장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동독시민과 다른 국가의 시민간의 결혼은 '비록 그 결혼이 동독 밖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호적제도 문제를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 이것은 서독 연방지역안에서 동독의 주민과 결혼하고자하는 모든 옛날의 동독 피난민은 물론 그의 후손들도 동독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규제으로써 동독은 상당한 정도로 그의 입법과 사법권의 영역을 서독시민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독이 서독을 비난하고 있는 바를 자신이 범하고 있는 것임"

○ 슈토프의 오전·오후 2회에 걸친 연설을 통한 동독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 브란트 수상이 제시한 20개항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분명히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함.
- 동독측으로서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없이 그 어떤 문제에 관한 구정을 통한 양독관계의 제도화도 불가능함.
- 동독측은 파리조약 7조의 효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독일민족의 통일은 이미 불가능함.
- 동독에서는 이미 포츠담 협정의 기본정신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4대 점령군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단지 서독관 관련된 문제임.
- 서베를린은 결코 서독에 속하지 않으며, 동독 영토내에 존재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체임.

- 양독 국가가 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서독측이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문제에 관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

1-3-4. 과거 등 서독간 주요 정상회담 행사사례 조사표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 회담일시	- '70. 3. 19	- '70. 5. 21	- '81. 12. 11 - 13 (3일간)	- '89. 9. 7 - 11 (5일간)
○ 회담대표	- 서독측 · 브란트 수상	좌 동	- 서독측 · 슈미트 수상	- 서독측 · 쿨수상
○ 영부인 대동여부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대동하지 않음
○ 수행원	- 서독측 < 공식 > · 프랑케 내독관계성 장관 · 도른 내무성차관 · 알리스 공보처장	좌 동	- 서독측 : 54명 < 공식 > · 프랑케 내독관계성 장관 · 람스도르프 경제성 장관	- 동독측 : 51명 < 공식 > · 미타크 정치국원 겸 국가 평의회 부의장 · 피쉬 외무성 장관 · 바일 대외무역성 장관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 수상실 차관보</li> <li>· 바이히르트 내독 관계성</li> <li>· &lt;비공식 실무진 &gt;</li> <li>· 슈테른 수상실 과장</li> <li>· 뮐러 공보처 과장</li> <li>· 리첼 수상비서</li> <li>· 만케내독관계성과장</li> <li>· 쉬어바움 내독 관계성 과장</li> <li>· 프리취 연방수사국 과장</li> <li>· 그의 9명의 속기, 경호, 의전관계자</li> <li>- 동독측</li> <li>· &lt;공식 &gt;</li> <li>· 빈케 외무성 장관</li> <li>· 콜 내각사무처차관</li> <li>· 콘르트 외무성차관</li> <li>· 슈슬러 내각사무처 부처장</li> <li>· 보쓰 외무성차관보</li> <li>· &lt;비공식 실무진 &gt;</li> <li>· 로르프 외무성 국장</li> </ul>	<p>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은케 수상실 국무장</li> <li>· 빌링 상주대표부 대표</li> <li>· 베커 공보처장</li> <li>· 뷔트첸 경제성 차관</li> <li>· 히르트 내독관계성 차관보</li> <li>· 마이흐스너 내독 관계성 차관보</li> <li>· 리호트호펜 수상실 국장</li> <li>· 브로이티감 외무성 국장</li> <li>· &lt;비공식 실무진 &gt;</li> <li>· 슈테른 수상실 국장</li> <li>· 헬백 상주대표부 부대표</li> <li>· 웨인크 수상실 과장</li> <li>· 뢰쉬 경제성 과장</li> <li>· 브룬스 수상실 수상 비서</li> <li>· 플뢰벨 공보처 과장</li> <li>· 뵐펠 주치의</li> <li>· 포겔 경제성 공보과장</li> <li>· 킨더 의전담당 참사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르만 국가평의회 의장</li> <li>· 비서실장 (차관급)</li> <li>· 니어 외무성 차관</li> <li>· 몰트 상주대표부 대표</li> <li>· &lt;비공식 실무진 &gt;</li> <li>· 레트너 당국제정치 · 경제 위원장</li> <li>· 켈름 당서기장 개인비서</li> <li>· 볼프 소장</li> <li>· 크뤼케 미르크 개인비서</li> <li>· 크리버취 외무성 기획국장</li> <li>· 메이어 외무성 공보국장</li> <li>· 야르눔스끼 외무성 의전장</li> <li>· 니클라스 외무성장관</li> <li>· 비서실장</li> <li>· 사이델 외무성 서독담당 국장</li> <li>· 슈테커 대외무역성 차관보</li> <li>· 파울 대외무역성 국장</li> <li>· 데바옥스 외무성 본부대사</li> <li>· 로텐사이트 외무성 공보 과장</li> <li>· 소트 외무성 의전과장</li> </ul>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세 외무성 국장</li> <li>· 비틀링 수상비서</li> <li>· 뒤쓰 외무성국장</li> <li>· 사이델 외무성 부국장</li> <li>· 비움게스텔 외무성 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명의 기자담당자 (공보처, 상주대표부)</li> <li>· 3명의 수상실 여비서</li> <li>· 1명의 공보처 속기사</li> <li>· 1명의 상황실 요원</li> <li>· 1명의 문서기록 요원</li> <li>· 1명의 사진사(공보처)</li> <li>· 2명의 화물담당자</li> <li>· 6명의 통신요원(연방 국경수비대)</li> <li>· 13명의 특별열차 운행 관계자</li> <li>· 15명의 경호요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명의 여비서</li> <li>· 3명의 각료회 문서기록 요원</li> <li>· 3명의 의사</li> <li>· 1명의 상주대표부 1등 서기관</li> <li>· 5명의 통신요원</li> <li>· 17명의 경호요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측 피쇄 외무성장관 야놉스키 외무성 의전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독측 브로이티감 상주대표부 대표</li> <li>· 두이스베르그 수상실 국장</li> <li>· 슐렌부르그 외무성 의전장</li> <li>· 2명의 의전관계자</li> <li>· 1명의 주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열차</li> <li>· 국경까지는 자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li> <li>·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때는 특별공군기 (보잉 7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폴르크 특별 민항기</li> </ul>
- 양태교통수단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편지역내 이동</li> <li>- 수상전용차량을 갖고 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전차량</li> <li>- 안갖고 있으며 초창국 의전차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등</li> <li>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등</li> <li>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기, 의전차량</li> <li>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영접</li> <li>- 영접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었음</li> <li>- 슈토폴 수상 각 공식 수행인 도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었음</li> <li>- 브린트 수상 각 공식 수행인 도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의무성 의전장, 서독 상주대표부 대표</li> <li>- 호네커 당 서기장겸 국가평의회 의장 겸 마티크 정치국원 겸 국가평의회 부의장 . 피셔 외무성장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성 의전장, 동독 상주 대표부 대표</li> <li>- 쇼이블레 수상실 장관 . 브로이티감 상주대표부 대표 . 레딩 내무관계장 차관 . 두이스베트그 수상실 국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착시 영접</li> </ul>				

사 해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 도착 환영식				
- 장소	- 행사 따로 없었음 · 바로 회담장인 호텔 로 직행	좌 동	- 행사 따로 없었음	- 수상실
- 국가연주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양독국가연주 있었음 · 동독국가 먼저
- 의장대 사열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있었음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 예포발사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o 국기 게양				
- 환영식장	- 환영식 없었음	좌 등	- 공항의 국기 게양대에서 각각 1개씩	- 수상실에 각각 8개의 동독 국기와 서독국기 게양
- 숙소	- 회담장이자 숙소인 호텔앞에 양국국기 1개씩	좌 등	- 영빈관에 양국국기 각각 1개씩	- 영빈관에 양국국기 각각 1개씩
- 거리	- 동독국기와 적색기 게양	- 게양하지 않음	- 게양하지 않음	- 게양하지 않음
- 회담테이블	- 양국 국기를 놓았음	- 없었음	- 양국국기를 놓았음 (동독의 의전관례)	- 양국 국기를 놓지 않았음 (서독의 의전관례)
- 차량	- 수상 동승차량에 양국 국기 부착	좌 등	좌 등	좌 등
- 기관 및 지역 방문시	- 기관 및 지역 방문 없었음	좌 등	- 국가의 전사항은 아니고 각지역에서 스스로 결정	좌 등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키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 도착후 숙소 또는 회담장까지 동행	- 슈토프 수상 동행	- 브린트수상 동행	- 호네커 당서기장 숙소 까지 동행	- 쇼이블레 수상실 장관이 수상실까지 동행 수상실에서 숙소까지는 의전장이 동행
○ 모더 싸이클 동원	- 없었음	- 없었음	- 13대 동원 · 국빈대우	- 7대 동원 · A급 수상 실무 방문 대우 · 본지역과 주간에만 동원 · 바이에른주에서는 국빈 으로 대우하여 15대 동원
○ 가두시민 환영 또는 시위	-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 으로 앞과 연도에서 브린트수상 환영 (브린트의 첫 이름인 '빌리, 빌리'를 외침)	- 서독공산당(DKP) 을 위시한 극좌파 와 독일민족주의 당(NPD)등의 극우 파가 시위중 충돌 을 벌여짐.	- 회담이 동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호숫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담 장 주변에서 주민들의 환영 또는 시위 없었음	- 극우파 단체의 시위는 있었 으나 미미했음 · 동독에서 데려온 경호요원 15명 이외에도 상주대표부 직원 50명이 경호에 참가 경호조직에 동독측이 신경 을 많이 썼음 ·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주민 들과의 거리에서의 대화는 없었음.
	- 동독정부에 의해 동원 된 관제 데모대가 플랑카드('우리는 동독의 승인을 원한다 : '신나찌주의를 철폐	- 극우파 청년 3명 이 호텔앞에 게양 된 국기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음	- 귀스트로 방문시 · 보안요원들이 주민들 을 차단했기 때문에 에어푸르트에서와 같은 자발적인 지지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허리' )를 들고 구조를 외침	슈토프 카셀의 피씨즐 회생자 위령탑에 헌화 . 브란트 수상 안내	시위 없었음	
○ 헌화	- 브란트수상이 부헨 발트 나찌 유대인 집단수용소 기념관 방문 헌화 . 빈쾨 등독외무장 안내	- 슈토프 카셀의 피씨즐 회생자 위령탑에 헌화 . 브란트 수상 안내	- 슈미트 수상이 직접하지 않고, 내독관계성 장관 이 식센하우센을 후은커 수상실 국무상이 할배를 각각 방문하여 나찌 집단수용소 기념관에 대신 헌화 . 외무성 부의전장이 각각 안내 서독측에서는 국가 예방적인 성격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여 슈미트 수상이 직접 하지 않음	- 뮌헨방문시 근교의 다하우 나찌회생자 위령탑에 헌화 . 다하우시장 안내 . 등독측이 다하우를 택한 것은 호네커 자신이 개인 적으로 나찌의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려 하였고, 본 근교에는 "전쟁과 폭력지배 회생자" 모역이 있으나, 서독에서 는 폭력지배 회생자의 범주에 나찌 회생자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 회생자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등독측에서 이를 반대함
○ 공식 연회	- 없었음	- 없었음	- 슈미트수상 초대만찬	- 폴수상 초대만찬(9.7)
- 만찬	- 없었음	- 없었음	- 슈미트수상 초대만찬	- 폴수상 초대만찬(9.7)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키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 오찬	- 없었음	- 없었음	- 호네커 당서기장 초대 오찬 (12.12)	- 바이체키 연방대통령 초대 오찬(9.7) 라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츠 주지사 초대오찬 (9.9) 포겔 라인란트팔츠 주지사 초대오찬(9.10) 슈트라우스 바이에른 주지사 초대오찬(9.11)
- 공식연사회 공연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0 지역방문	- 회담개최 장소와 헌화 장소 이외에는 다른 지역 방문 없었음	좌 동	- 귀스트로 방문 슈미트 수상이 개인적 으로 현대미술가인 에안스트 발락을 좋아 했기 때문에 그의 기념관 방문 시장이 열리는 광장을 지나 교회 방문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 란트 팔츠, 자르란트, 바이에른 등 4개주 방문 각 주지사 면담 부퍼탈 프리드리히 엥겔스 생가 방문 트리어 칼막스 생가 방문 노인키르헨 호네커 고향 방문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 환송식	- 슈트포수장이 에어 푸르트역에서 귀환 하는 브란트수상 전송	- 브란트 수장이 카셀역에서 귀환 하는 슈트포수상 전송	- 호네커 서기장이 수행원 과 함께 퀴스트로역에서 전송 외무성 의전장 기차내 까지 안내	- 슈트라우스 바이에른주지사 가 공항에서 전송 바이에른주 의전장이 기내 에 까지 안내
○ 속 소	- 역에서 가까운 호텔	좌 등	- 영빈관 후버투스스특성	- 영빈관 김니희성
- 장소	- 현판설치 없음 도착역에 "동독은 평화와 사회주의의 무가다"라고 적힌	- 환영현판 설치 없음	- 현판설치 없음	- 현판설치 없음
- 속소에 환영 현판 설치여부	-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 초청자측에서 메뉴 결정 선발대가 기피음식 기호음식 사전 통보	- 초청자측에서 메뉴결정 선발대가 기피음식, 기호 음식 사전 통보
- 음식준비(메뉴 결정, 기피음식 기호음식 통보)	- 검식		- 방문자측에서 원하면 할 수있으나, 서독측은 하지 않았음	- 동독측은 경호요원들의 요구 로 했음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본 ('87)
- 전용요리사 대동 여부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없었음
○ 본국과의 통신 수단				
- 통신장비	- 가져감	좌	좌	좌
- 직통전화 개설	- 통신요원간의 협조하 에 개설	좌	좌	좌
○ 경호용 무기 반출입	- 사용무기 명세를 상대방에 통보하고 반출입	좌	좌	좌
○ 선발대 파견	- 회담준비 사전 실무 접촉을 갖음 · 공보 '경호' 의견 회담 장소문제 논의	좌	- 서독 외무성 의견장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선발대 파견 · 다른국가 방문시와 미찬가지로 선발대 구성	- 동독 외무성 의견장을 단장 으로 한 10명의 선발대 파견 · 다른국가 방문시와 미찬 가지로 선발대 구성 · 각 행사별로 공보 '경호' 의전사항 확인

사 례 \ 행 사	에어푸르트 ('70)	카셀 ('70)	동베를린 근교 ('81)	분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 및 행사비용 부담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비용 동등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비용 서독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 및 행사비용 모두 동등 부담</li> <li>· 동독측은 수행원 규모에 관련없이 항상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 및 행사비용 모두 서독 부담</li> <li>· 서독측은 국빈과 15명의 수행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동독측과는 상호주의에 의거 모든 비용을 다 부담 각 주를 방문할때는 연방에서 교통·통신 분야 비용만 부담하고 숙식은 각 주가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 대동 및 구급차량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 대동하지 않으나 동독측 구급차량 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 대동하지 않으나 서독측 구급차량 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명 주치의 대동, 동독에서 제공한 구급차량이 주치의들 태우고 행사에 따라 다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명의 주치의 대동, 서독에서 제공한 구급차량이 주치의들 태우고 행사에 따라다님</li> </ul>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의 동독방문 세부일정('70. 3. 19)

수행원

서독 수상 수행원

내독성 장관	에곤 프랑케
내무성 정무차관	볼프람 도른
공보처장 겸 사무차관	콘라트 알러스
수상실 실무단장	올리히 잠 박사
내독성 실무단장	위르겐 바이셔트

실무 요원

수상 비서관	리첼 박사
수상실 담당관	에언스트 귄터 슈테른
내독성 담당관	쉬어바움 박사
내독성 담당관	망케 박사
공보처 국장	뮐러 박사
내무성 경호단장	프리취 박사
내독성 장관실장	에드가 히어트
도른 정무차관 비서관	뷔게
알러스 공보처장 비서관	슈네펠 박사
공보처 담당관	플뤼 박사
공보처 담당관	헤리베르트 슈니펜뢰터

기타 수행원

의전 담당관	포겔
경호원	바우하우스

경호원  
속기사  
속기사  
여비서  
여비서  
여비서  
여비서

구트차이트  
플레스  
헤닉  
란더러  
람프카  
뮐러  
하이덴

동독 수상 수행원

외무부 장관  
각료평의회 사무차관  
외무부 사무차관  
각료평의회 사무처 차장  
외무부 국장

오토 빈처  
미샤엘 콜 박사  
귄터 코르트  
게어하르트 쉬슬러 박사  
한스 포츠 박사

실무 요원

외무부 공보국장  
외무부 국장  
각료평의회 의장비서  
외무부 국장  
외무부 부국장  
외무부 부국장

로르프  
뮐쉐 박사  
뵘틀링  
쾨프 박사  
자이델  
바움게어텔



## 일 정

### 1970년 3월 18일 (수요일)

- 20:00 브란트 수상 및 수행원 일행 특별 열차편으로 본 중앙역 출발
- 수행원 일행 19:45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 브란트 수상 19:55 본 중앙역 도착
  - 수상실장 엠케 교수로부터 인사 받음.
  - 내독성 프랑케 장관이 수행원으로서 플랫폼에서 브란트 수상에게 인사.
  - 차내에서 저녁 식사

### 1970년 3월 19일 (목요일)

- 07:45 특별열차 동독내 동·서독 국경도시 게어스통겐 역 도착
- 미샤엘 콜 사무차관 및 동독 의전실장 하인이 역에 마중 나옴.
  - 잠 실무단장 및 리첼 비서관이 열차에서 내린 후 콜 사무차관 및 하인 의전실장을 수상 전용 살롱 객차로 안내
  - 브란트 수상이 콜 사무차관 및 하인 의전실장과 인사를 나눈 후 잠 실무단장 및 리첼 비서관과 함께 살롱 객차에 직결된 식당차에 자리함.
- 08:05 게어스통겐 출발
- 09:30 에어푸르트 중앙역 도착
- 브란트 수상은 프랑케 내독성 장관 및 비서관 리첼 박사 와 함께 살롱 객차의 오른 쪽 앞문을 통해 하차
  - 플랫폼에서 대기 중이던 슈토프 의장 및 빈처 외무장관

과 하인 의전실장으로부터 인사 받음

- 이어서 슈토프 의장은 브란트 수상에게 수행원 일행을 소개
- 서독측 수행원 일행은 식당차 오른 쪽 앞문을 통해 하차
- 브란트 총리가 수행원 (기타 수행원 제외)을 슈토프 의장 및 동독 수행원 일행에게 소개
- 브란트 총리 및 슈토프 의장, 그리고 수행원 일행은 회담장인 호텔 “에어푸르터 호프”로 향하기 위하여 역내 터널을 이용하여 중앙역 광장에 도보로 이동
- 중앙역 광장에는 두 개의 바츨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동독의 사복 경찰관에 의해 차단됨.
- 브란트 수상의 특별 열차가 정차한 에어푸르터 중앙역 벽면에는 흰색 천 위에 동·서독 국기가 수직으로 게양됨.
- 플랫폼으로부터 중앙역 광장 사이에는 붉은 색 양탄자가 깔려 있음.
- 플랫폼과 역내 터널에는 생화로 장식됨.
- 호텔 정문 좌우에 2명의 동독 의장대가 도열

### 신분증명에 관한 규정

- 서독측 수행원 일행은 다음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었음.

#### 신분증 A

수행원 중 정상회담에 참석하거나 회담장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

#### 신분증 B

회담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기타 수행원, 그러나 회담장인 호텔 “에어푸르터” 및 역구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신분증 C

역구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열차승무원 및 통신용 객차 승무원

### 특별 열차의 구성

- 제1호 객차    살롱 식당차, 살롱 및 10인분 좌석
- 제2호 객차    수상전용 살롱 객차, 살롱 1개 및 6인분 좌석  
                  2개의 침대 객실  
                  2개의 1인용 객실
- 제3호 객차    수행원 전용 식당차, 42인분 좌석
- 제4호 객차    수행원 전용 침대차, 12개의 1인용 객실
- 제5호 객차    수행원 전용 침대차, 12개의 1인용 객실
- 제6호 객차    수행원 전용 침대차, 12개의 1인용 객실
- 제7호 객차    통신용 객차
- 제8호 객차    언론인 전용 식당차
- 제9호 객차    언론인 전용 침대차, 12개의 2인용 객실
- 제10호 객차    언론인 전용 침대차, 12개의 2인용 객실
- 언론인 전용 제9호, 10호 객차로부터 수행원 전용 객차 간의 통행은 긴급시에만 허용됨.
  - 동독의 게어스통겐 역에서 동독측 기술요원용 객차가 특별 열차에 접속됨.

## 객차 좌석 배치

- 제2호 객차    살롱 객실 제1호: 브란트 수상  
                  살롱 객실 제2호: 리첼 박사  
                  1인용 객실 제1호: 경호원  
                  1인용 객실 제2호: 열차 승무원
- 제4호 객차    1인용 객실 제 1호: 슈네펠 박사  
                  1인용 객실 제 2호: 망케 박사  
                  1인용 객실 제 3호: 쉬어바움 박사  
                  1인용 객실 제 4호: 잠 박사  
                  1인용 객실 제 5호: 바이셔트  
                  1인용 객실 제 6호: 프랑케 장관  
                  1인용 객실 제 7호: 알러스 공보처장  
                  1인용 객실 제 8호: 도른 정무차관  
                  1인용 객실 제 9호: 스테른 담당관  
                  1인용 객실 제10호: 프리취 경호단장  
                  1인용 객실 제11호: 뮐러 박사  
                  1인용 객실 제12호: 플릭 박사
- 제5호 객차    1인용 객실 제 1호: 경호원 바우하우스  
                  1인용 객실 제 2호: 경호원 구트차이트  
                  1인용 객실 제 3호: 속기사 폴레스  
                  1인용 객실 제 4호: 속기사 헤닉  
                  1인용 객실 제 5호: 여비서 란더러  
                  1인용 객실 제 6호: 의전담당관 포겔  
                  1인용 객실 제 7호: 공보처 담당관 슈니펠뢰터

1인용 객실 제 8호: 여비서 램프카

1인용 객실 제 9호: 여비서 필러

1인용 객실 제10호: 여비서 하이덴

1인용 객실 제11호: 열차 승무원

1인용 객실 제12호: 열차 승무원

제6호 객차 1인용 객실 제 1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2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3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4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5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6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필요할 경우 2인용 객실로 사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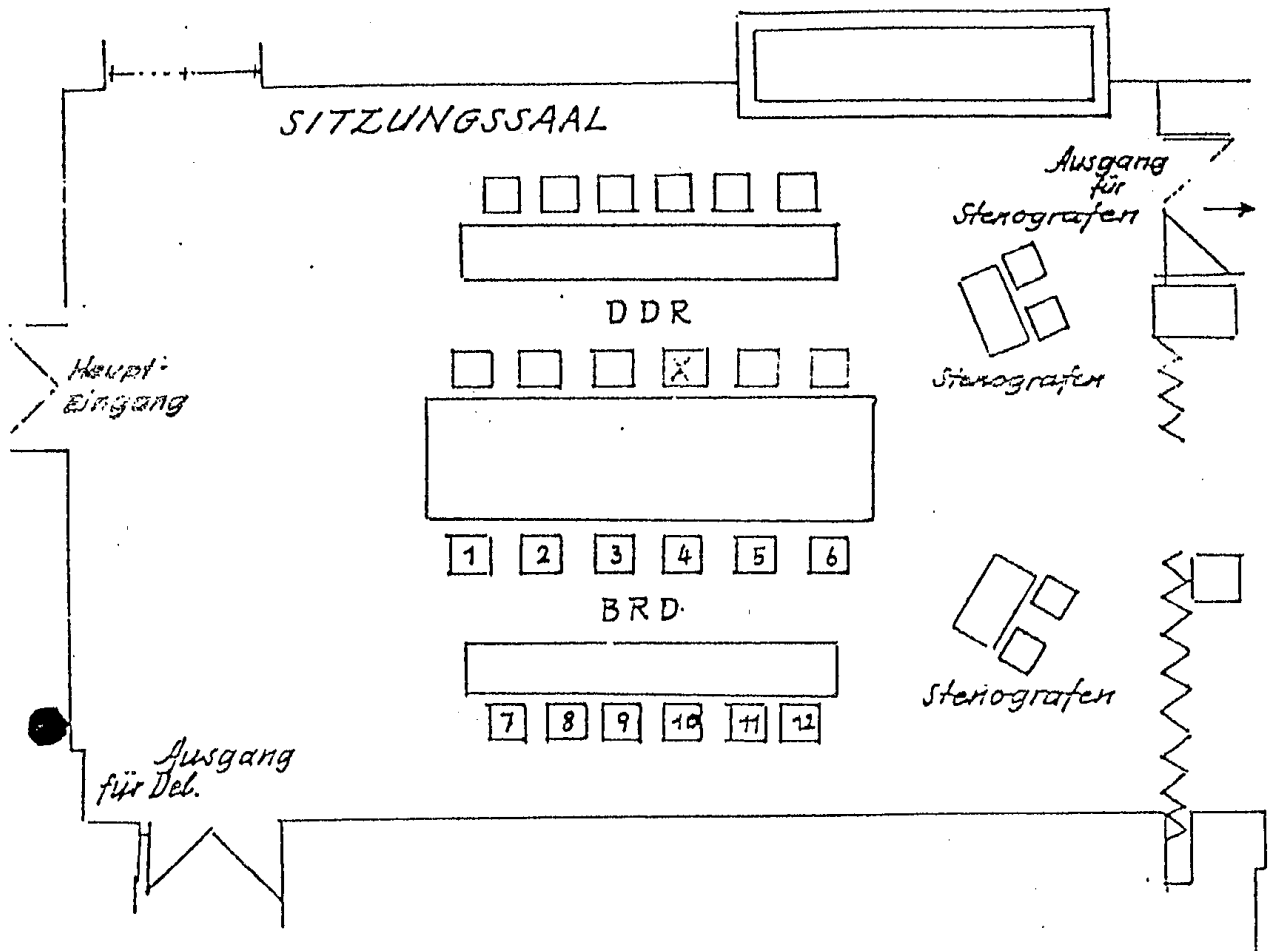


그림 설명

Sitzungssaal: 회담장

Haupteingang: 주 출입문

Ausgang für Del.: 수행원 전용문

Ausgang für Stenografen: 속기사 전용문

Stenografen: 속기사

DDR: 동독

BRD: 서독

## 회담장 좌석 배치

### 서독측

- 제 1호: 바이서트
- 제 2호: 도른 정무차관
- 제 3호: 프랑케 내독성 장관
- 제 4호: 브란트 수상
- 제 5호: 알러스 공보처장
- 제 6호: 잠 박사

- 제 7호: 슈테른 담당관
- 제 8호: 뮐러 박사
- 제 9호: 리첼 박사
- 제10호: 망케 박사
- 제11호: 쉬어바움 박사
- 제12호: 프리취 박사

### 동독측

지금까지 좌석배치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고 있으나 슈토프 의장이 브란트 수상의 맞은 편 X표에 자리 잡을 것이며 제1호로부터 제6호 및 뒷 좌석에 기타 수행원이 자리잡게 될 것임을 통보했음.

## 통신망 (Erfurt-Bonn 사이)

- 특별 열차에 통신용 객차가 접속되어 Bonn 으로부터 Erfurt 로 운행 도중 텔레타이프를 통한 통신이 가능토록 함.
- Erfurt 에 도착한 후 회담장인 호텔 “Erfurter Hof” 3층 제251호실에 설치된 수행원 사무실에 Bonn과 연결하는 3회선의 직통선이 가동됨.
- 특별 열차의 통신용 객차와 Bonn 사이에 제4차 직통선이 가동됨.
- 특별 열차의 통신용 객차의 텔레타이프 교신용 2회선이 확보됨.
- 프레스 센터로부터 서독 사이의 전화와 텔레타이프를 위한 회선이 가동됨. 정확한 회선수는 아직 불확정.
- 호텔 내 회담장과 식당 사이 복도에 2개의 전화 박스가 있으며 그 중 1박스는 수행원 사무실과 직접 연결되고 다른 박스로부터 호텔의 모든 객실과 통화할 수 있음.
- 이 2개의 전화 박스에는 서독측 기술자가 상시 대기함.



『빌리·슈토프』 동독수상의 서독방문 세부일정('70. 5. 21)

일 정

1970년 5월 20일 (수요일)

- 18:00 브란트 수상, 수상실 전용 헬기편으로 Kassel-Wilhelmshöhe로  
향발
- 18:36 수행원 일행 급행열차편으로 Siegburg 출발,  
Kassel- Wilhelmshöhe 로 향발
- 수행원용 급행열차는 1인용 객실이 있는 객차와 식당차가  
접속됨.
- 19:00 브란트 수상 Kassel- Wilhelmshöhe 도착
- Kassel-Wilhelmshöhe 의 슬로쓰 호텔에서 비공식 저녁식  
사
- 21:56 수행원 일행 Kassel- Wilhelmshöhe 역에 도착
- 곧 이어 승용차 편으로 슬로쓰 호텔 및 용단전문학교로  
이동
  - 용단전문학교에 숙소가 정해진 수행원에게는 슬로쓰호텔  
까지의 이동을 위해 승용차가 상시 대기

1970년 5월 21일 (목요일)

- 07:00 잠 박사와 바이셔트 국장은 슬로쓰 호텔로부터 Bebra 역으로  
이동
- 08:00 용단전문학교에 숙소가 정해진 수행원에게는 슬로쓰 호텔로  
이동

- 08:19 슈토프 의장의 특별 열차가 동독의 Gerstungen 역을 출발
- 08:42 슈토프 의장의 특별 열차 Bebra 역에 도착
- 잠 박사와 바이셔트 국장이 슈토프 의장을 영접한 후 Kassel- Wilhelmshöhe 까지 수행
- 08:53 슈토프 의장의 특별 열차 Kassel-Wilhelmshöhe 로 향발
- 09:00 Hessen 주 수상 Osswald와 Kassel 시장 Branner 박사가 솔로쓰 호텔에 도착,
- 09:15 브란트 수상과 함께 승용차로 Kassel-Wilhelmshöhe 역으로 출발
- 09:15 브란트 수상과 수행원 일행 승용차 편으로 솔로쓰 호텔을 출발, Kassel-Wilhelmshöhe 역으로 향함 (차량 운행 시간 약 6 분간).
- 09:30 슈토프 의장의 특별 열차 Kassel-Wilhelmshöhe 역에 도착
- 출영을 위해 플랫폼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대기
    - 브란트 총리
    - 프랑케 내독성 장관
    - 도른 정무차관
    - 알리스 사무차관
    - 오스발트 주 수상
    - 브란너 시장
    - 리첼 박사

- 슈테른 담당관
  - 포겔
  - 잠 박사와 바이셔트 담당관은 특별 열차 도착 직후 승용차 편으로 슬로쓰 호텔로 가서 브란트 총리와 슈토프 의장을 맞을 준비를 함.
- 09:35 브란트 수상과 슈토프 의장 및 양측 수행원 일행은 승용차편으로 슬로쓰 호텔로 향함 (오스발트 주 수상과 브란너 시장은 별도로 출발).
- 09:40 Kassel-Wilhelmshöhe 의 슬로쓰 호텔에 도착
- 이어서 브란트 수상과 슈토프 의장 및 수행원 일행은 슬로쓰 호텔 내 예약된 객실로 향함.
- 10:00 회담장에서 회담 시작
- 서독측 수행원의 좌석 배치
- 왼쪽부터 바이셔트-도른-수상-프랑케-알리스-잠  
(단독 회담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음:
- 회담장 옆에 있는 서독측 수행원 회의실
  - 서독 수상 집무실
  - 동독 의장 집무실
  - 호텔 테라스
- 12:45경 오전 회담 종료
- 12:45 오스발트 주 수상과 브란너 시장이 슬로쓰 호텔에 도착

13:00 오찬 (소규모 식당)

- 브란트 수상, 프랑케 장관, 도른 정무차관, 알러스 사무차관, 잠 박사, 바이셔트 담당관, 오스발트 주 수상, 브란너 시장
- 동독측 참석자는 아직 미정
- 기타 양측 수행원 일행은 클럽실에서 식사
- 오찬후 일기가 좋으면 호텔 테라스에서 커피타임이 있을 것임.

16:00 회담 속개

18:00경 저녁 식사 (덥지 않은 간이 식사: 소규모 식당)

- 수행원 일행은 클럽실

이어서 출발

- 브란트 수상과 수행원 일행이 역에서 슈토프 의장과 동독 수행원 일행에게 작별 인사
- 잠 박사와 바이셔트 담당관은 슈토프 의장을 Bebra 역까지 수행
- 서독측 수행원을 위해 1량의 식당차, 1량의 좌석있는 객차, 3량의 침대차가 준비되어 있음.

## 부 록

### 동·서독 1, 2차 정상회담 기초발언문

1. 동·서독 1, 2차 정상회담 기초발언문 요지
2. 동·서독 1, 2차 정상회담 기초발언문(全文)

#### 가. 제1차 정상회담(에어폴트, '70. 3. 19)

- ①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초발언문
- ②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초발언문
- ③ 공동성명

#### 나. 제2차 정상회담(캣셀, '70. 5. 21)

- ①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회담전 성명문
- ②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의 답변
- ③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초발언문(오전)
- ④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초발언문(오전)
- ⑤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초발언문(오후)
- ⑥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초발언문(오후)

# 東·西獨 1, 2次 頂上會談 基調發言文 要旨

< 1970. 3. 19 『에어플트』 第1次 會談 >

西 獨	東 獨	備 考
<p>- 『6개항목』의 基本立場 제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서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며,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님.</li> <li>2. 양독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적 원칙, 특히 모든 차별배제, 영토보전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 양독 국경선 존중등의 의무를 이행함.</li> <li>3. 양독은 상대편내 사회구조를 폭력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의무를 지님.</li> <li>4. 양독 정부는 상호 선린적 협력 특히 기술적, 전문적 협력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문제 해결</li> <li>○ 경제·기술분야 교류 추진</li> <li>○ 교통·통신분야 개선·발전</li> <li>○ 동·서베를린, 동·서독간 상호방문</li> <li>○ 문화·스포츠 교류확대 등</li> </ul> </li> <li>5. 전체 독일 및 베를린시에 대한 4대국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li> <li>6. 베를린시 지위개선과 베를린 문제해결을 위한 4대국의 노력 지지</li> </ol>	<p>- 『7개항목』의 基本立場 제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법에 기초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정상적이며 평등한 관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으로 독일민족을 대표한다는 서독정부의 월권포기</li> </ul> </li> <li>2. 상대방의 외교관계 불간섭과 『할슈타인원칙』의 포기</li> <li>3. 『유엔』 헌장 제2장 4항에 따라 주권존중, 영토보전, 불가침의 원칙하에 상호 폭력행사 포기</li> <li>4. 동·서독 『유엔』 가입 신청</li> <li>5. 핵무기 보유포기, 상호핵무기 제조·사용·저장의 포기, 군비 50% 감소</li> <li>6.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문제의 토의</li> <li>7. 동독에게 서독이 부담해야 할 부채 청산과 배상 의무 규정</li> </ol>	<p>○ 동회담에서 동·서독은 각기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구체적 진전사항은 없었으나, 공동성명을 통해 70. 5. 21 『캣셀』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발표 함으로써 동·서독 공히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나타냄.</p>

< 1970. 5. 21 『캣셀』 第2次 會談 >

西 獨	東 獨	備 考
<p>『동·서독간 동등한 지위와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 : 『캣셀』 20개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족의 평화 및 통일을 위한 조약 체결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정상화</li> <li>○ 연대성 강화</li> <li>○ 불이익 해소</li> </ul> </li> <li>2. 조약은 쌍방 입법기관의 비준을 받을 것</li> <li>3.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입각, 관계 정상화 용의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 동등권</li> <li>○ 평화애호</li> <li>○ 무차별의 원칙</li> </ul> </li> <li>4. 무력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토보전</li> <li>○ 국경선 존중</li> </ul> </li> <li>5. 양국 주권과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있어서 상호독립과 자주성 존중</li> <li>6. 일방은 타방의 대표 및 대행 금지</li> <li>7. 독일내에서 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선언</li> <li>8. 평화공존의 준수 의무</li> <li>9. 군축·군비통제 노력의 지지 (구주 평화 기여)</li> </ol>	<p>○ 국제법상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상 규제된 동·서독간의 평화공존 관계 수립 제의</p> <p>(국제법상 제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을 강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제법상 평등권</li> <li>② 주권 항유권</li> <li>③ 타국의 주권 존중의무</li> <li>④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의 불가침</li> <li>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의 자유로운 선택 및 발전의 권리</li> <li>⑥ 국제적 의무 엄수, 타국과의 평화관계 유지 의무</li> </ol> <p>○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 승인을 요구 - 단독대표권 및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p> <p>○ 동·서독의 『유엔』 가입</p>	<p>○ 동·서독은 공식회담에 앞서 성명발표 - 동독은 서독정부가 관과 법원이 동독에 저촉되는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p> <p>- 서독은 이에 대해 반박</p> <p>○ 동독측은 국제법상의 주권평등원칙을 역설하면서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승인을 요구하였음.</p> <p>○ 서독측은 『1민족 2국가』 원칙에 입각하여 양독간의 관계를 『특수한 내적관계』로 규정하고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기본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회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음.</p>

西 獨	東 獨	備 考
<p>10. 조약의 출발점: 2차대전 이후 독일의 특수한 상황, 즉 두개의 국가이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1민족 2국가」 원칙</p> <p>11. 전독일 및 베를린시에 대한 4대국의 권리·책임 존속</p> <p>12. 「베를린에 대한 4대국협정」 존중, 베를린 문제 해결을 위한 4대국의 노력을 지지</p> <p>13. 각자의 주권행사는 각자의 국가영토에 국한</p> <p>14. 조약을 통해 상호왕래의 확대, 자유로운 여행 조치강구</p> <p>15. 이산가족 문제 해결</p> <p>16. 쌍방 경계선상의 지방행정 구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선린적 해결</p> <p>17. 교통, 우편, 통신, 정보, 학술, 교육, 문화, 환경문제, 스포츠 등의 교류·협력확대 및 분야별 협상개시</p> <p>18. 내독 교역에 관한 기본협정에 의거한 교류의 계속 추진</p> <p>19. 장관급 전권대표 임명 및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 전권대표 및 연락사무소의 특권보장</p> <p>20. 양국은 조약에 입각, 「국제기구가입신청」 방안을 강구</p>		



## 2. 동·서독 1, 2차 정상회담 기조발언문(全文)

### 가. 제1차 정상회담(에어플트, '70. 3. 19)

#### ①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문

존경하는 聯邦首相!

本人은 본 會晤를 始作함에 있어서 貴下와 貴下의 隨行員들이 獨逸民主共和國에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本人은 貴下가 本人의 招待에 應한데 대해 滿足을 表明하며 다만 우리의 會談이 原來의 合意대로 獨逸民主共和國의 首都인 伯林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貴下는 그 原因과 우리의 立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政治的 重要性을 갖는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 처음으로 獨立된 主權國으로서 兩國家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한 基本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政府首腦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人民들, 歐洲의 모든 市民들은 이 會談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歐洲의 緊張에 直面한 그들은 우리 大陸의 心臟部에서 平和를 保障하는데 兩國家의 建設的인 貢獻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과장하거나 沈黙을 지키지 아니하고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서로 아주 솔직히 이야기할 것에 合意했습니다. 貴下와 本人이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政府는 결코 다시는 獨逸땅위에서 戰爭이 일어나지 않게 할 무거운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 今世紀의 그 무서운 兩次 世界大戰은 獨逸帝國主義政府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數週日이 지나면 獨逸帝國이 피와 鐵로써 創立되었다가 피와 鐵로 沒落한 날인 5月 25日이 됩니다. 最後의 순간까지 「파시즘」의 支配者들은 數百萬의 人間生命과 그 엄청난 값비싼 裝備를 희생하면서 諸國民을 파괴하는 戰爭을 수행했으며 결국은 그 戰爭을 自國안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終局에는 「히틀러·파시즘」의 破壞, 獨逸軍國主義의 無條件 降伏, 帝國主義獨逸帝國의 沒落이 뒤따랐으며 獨逸은 몇개의 占領地域으로 分割되었습니다. 獨逸帝國主義의 不幸했던 政治에서 教訓을 얻어 平和를 持續적으로 保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人間的인 渴望임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政府首腦는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人은 이러한 崇高한 責任을 充分히 意識하여 우리의 모든 政治目標을 平和確保에 두겠다는 것을 保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責任에서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발터·울브리히트」는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구스타프·하이네만」 博士에게 1969年 12月 17日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的 諸原則에 立脚하여 同等하고 無差別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草案을 전달했습니다. 이 條約은 궁극적으로 眞正한 同等資格과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할 수 있는 可能性을 提供하고 있습니다.

지난 20年동안 相互理解와 平和確保를 위한 獨逸民主共和國의 「이니셔티브」는 多樣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政策에 대해 從來의 모든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肯定的인 反應을 보여 주지 않았고, 더우기 그 政府들이 냉혹하게 拒否立場을 取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軍事武装化를 加速化하여 東獨을 전복함으로써 兩次 世界大戰의 諸結果를 白紙化시키려는 그들의 目的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政策이 挫折된 以後, 우리는 오늘날 唯一한 代案, 即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한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機會를 다시는 잃지 않도록 努力할 것을 期待합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二次的, 三次的 問題를 規制하기 위해 이 곳에서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歐洲安保와 우리 國家 人民들의 平和로운 生活에 대한 關心에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하나의 轉機를 마련하려는 모든 根本的 問題가 提起되고 있습니다.

現在 우리 國家間의 關係는 完全히 非正常的입니다. 그로부터 중대한 危險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關係의 持續的이고 原則的 規制가 議事日程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 規制는 完全한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脚하여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그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條約草案이 立證하고 있는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대해 이미 우리 스스로가 取하고 있는 立場, 그 이상의 것을 期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純粹한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立場이므로 雙方中의 어느 一方의 降伏이 問題로 된다는 소문은 事實을 完全히 歪曲한 것이며 또 一方의 威信이란 것도 問題되지 않습니다. 本人은 가장 人間的인 渴望이 平和의 確保問題임을 다시 한번 強調합니다. 모든 紛爭問題를 省略할 수 있다는 여하한 示唆에 의해서도 이러한 基本問題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現狀과 歐洲國境線 및 第二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모두 修正하고자 하는 政策으로 因해 세워진 障壁들은 除去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餘地없이 20年以上이나 基民黨/基社黨의 指導下에 復古 勢力과 復仇勢力에 의해 形成된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인 것입니다.

政權交替로 基民黨/基社黨은 축출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政治路線의 變化를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과거 20年에 걸친 平和를 위협한 非現實主義的인 政策으로부터의 轉向을 招來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광범위한 계층의 意思表現으로 보고 있습니다. 聯邦首相, 貴政府는 그와 같은 意思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니면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拒否함으로써 우리 國家間에 惹起되고 있는 緊張關係를 持續해야 하겠습니까? 「아테나워」가 17年동안 힘의 政策과 「롤백」政策에 立脚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에 대해 反對鬭爭을 했던 바와 같이 그 政策을 踏襲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해 必要합니까?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勞動者들에게 결코 有益하지도 않으며, 또한 平和와 安定된 生活

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歐洲市民들에게도 有益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復仇와 征服을 目標로 하는 政策이 成功할 可能性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社會主義 秩序를 暴力으로 除去하려는 「아데나워」政策의 變型이나, 同一한 目的을 가진 其他의 變型도 결코 成功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立證되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現代社會主義國家로 發展한 것은 中斷될 수도 없었고, 또 中斷할 수도 없습니다. 反共主義라는 눈가리개 없이 그리고 幻想없이 狀態를 觀察하는 者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勞動者 農民의 勢力이 人民속에 굳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諸國과의 公고한 友誼속에 結合되어 있으며 社會主義를 독일땅위에서 종식시키려는 모든 希望은 幻想의인 것으로 立證되었습니다. 50年代와 60年代에 敗北의 判決이 내려진 것은 결국 오늘날 근거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獨逸聯邦議會에서 注目할 만한 認識을 表明하였습니다. 貴下는 『獨逸民主共和國과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하여 規制하려는 必然性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면 「바르샤바」條約國들과의 規制에 도달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正常的인 國際法的 關係 즉 外交關係를 樹立한다면, 물론 그것은 이러한 認識과 符合될 것이며,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의 對歐洲政策과도 符合할 것입니다. 그 理由는 兩國家가 그것을 통해 모든 歐洲國家와의 關係를 正常化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本人은 貴下가 지난날처럼 오직 緊張을 激化시키고 歐洲平和의 妨害要因으로 되는 政策을 지속하고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위험한 政策은 首相職에 있었던 모든 貴下의 先任者들도 成功的으로 實現시키지 못했습니다. 낡은 目的을 단지 公式만 새로이 바꾸어 계속 求한다면, 그것을 進歩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獨逸聯邦共和國은 우리 大陸에서 他國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地帶로 남을 것입니다. 그 경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 正常化는 封鎖되고 中歐의 平和는 恒久的으로 위협당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貴下를 포함한 聯邦共和國의 代表들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을 2개의 主權的 獨立國家라고 말하고 있음을 分明히 認知했으며 이것은 물론 相異한 社會秩序를 가진 兩獨逸國家의 平和共存을 可能케 하는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해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關係를 樹立할 때에 비로소 論理的으로 合當합니다.

1970年 1月 22日의 貴下의 書翰에서 貴下는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한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協商을 始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가 現在의 相互關係, 即 서로 主權的인 國際法的 主體로 承認된다는 것과 對立할 수가 없습니다. 聯邦首相, 貴下 自身이 國際法的 諸原則에 관해서 言及한다면 거기에서는 必然的으로 國際法上 効力을 가지는 條約을 締結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의 主權的 平等을 承認해야 한다는 結論이 導出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貴下의 政府는 過去의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들과는 달리 참으로 지난날의 無用한 政策으로부터 解放되어 現實의 土臺위에서 있다는 것을 立證할 것입니다.

本人은 貴政府의 卓越한 代表者들의 表現, 즉 『나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그 洞察의 根據를 分明히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聯邦共和國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의 一方的인 事前措置에 관한 기묘한 言及들이 결부되어 있음

니다. 그것은 우리 社會主義社會秩序의 變化를 占치는 行爲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의 不可避性에 관한 洞察이 그토록 理性的이라면—本人은 그것을 아주 明白히 밝혀야 합니다—그 承認을 어떤 反革命的인 意圖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自明한 事實, 即 國際法的 基本原則을 承認하는데 대해서 代價를 支拂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의 不可避性을 把握한 者는 그 承認을 各 合當한 形態로 表明할 수 있는 政治的 先見之明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本人은 貴下가 獨逸聯邦共和國의 이름으로 이러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우리側이 提議한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條約을 可能한 限 빨리 締結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協商을 始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獨逸民主共和國 首相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聯邦共和國에서는 빈번히 聯邦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가 「파리」條約에 의해 制限받고 있다는 論難을 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곳에서 聯邦共和國의 主權問題가 어느 限界까지 要求되고 있는지에 관한 質問은 그만 두려고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중요시하는 問題는 社會民主主義의 으로 영도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自主的인 政治를 할 意圖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있어 自身의 主權을 制限받지 않고 行使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하는 質問입니다.

兩側이 善意를 가지고 政策을 追求하며 平和와 兩國市民에게 關心을 가지고 成果를 이루고자 한다면 言行에 矛盾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政策裏面에는 그와 같은 矛盾들이 있음을 示唆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者들이 公的으로 緊張緩和와 規制된 共存에 관해 言及하고 있지만 同時에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위험한 軍事計劃들을 계속 發展시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無關心할 수 없으며 오히려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社會主義諸國, 특히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都市, 村落 및 人民들에 대해 細目別로 作成된 前進 戰略計劃이—어떠한 名稱下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왔든—聯邦軍將星들과 貴 國防相의 鐵甲의 울안에 準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分明한 侵略計劃을 위한 國防豫算이 聯邦共和國에서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前보다 急増되고 있고, 輿論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核武裝化가 계속 推進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實들이 平和的인 意圖,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同等關係에 관한 公式的인 宣言과 어떻게 合致될 수 있습니까? 勢力關係를 誤判해 왔던 獨逸聯邦共和國內의 影響力있는 集團은 오늘날도 露骨的으로 위험한 장난을 試圖하고 있으며, 그러한 計劃과 行爲들은 끊임없이 導火線을 향해서 推進되고 있어 軍事的인 紛爭의 危險事態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聯邦軍을 統帥하는 長官 「슈미트」氏가 武裝化를 加速化시킨다면,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이러한 發展을 無關心하게 도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本人이 聯邦首相인 貴下에게 보낸 書信에서 明白히 陳述한 바와 같이—가장 眞正한 意味에서는 平和나 戰爭이냐가 主要한 問題로 됩니다. 그런데 貴下는 公的으로 平和만이 問題된다고 回答했습니다. 그러나 領土的인 現狀 및 歐洲國境線의 變更을 피하는 모든 目的을 포기하지 않는 限, 平和의 確保는 不可能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平和를 確保하고자 한다면 모든 導火

線과 紛爭의 要因을 除去해야 한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습니다.

政治的, 領土的 地位가 分明하고도 留保없이 承認되지 않는 限, 平和에 關係 言及할 수 없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에 對한 國際法的 承認을 이른바 講和條約이 締結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로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意圖입니까? 講和條約의 締結에 對한 逆反應을 보였던 側은 바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였습니다. 앞서 意識的으로 講和條約을 妨害했던 者들이 오늘날 그것을 구실로 1970年의 境界를 承認하기를 拒否하고 이러한 境界를 오직 變更하기 위한 道를 追求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歐洲의 諸國民을 侵略하고 獨逸帝國主義와 「파시즘」이 罪를 犯하고 그리고 無條件降伏을 한 후에 어떻게 侵略을 받았던 諸國民들에게 그 무슨 「權利의 要求」를 할 수 있습니까?

「로카르노」條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方的으로 西方強大國들과 同盟을 맺고 西方의 國境을 承認했음에도 不拘하고 東方의 國境을 保留하려는 데에 「슈트레제만」의 政策(Politik von Stresemann)을 反復하려는 意圖이 숨어 있으며, 獨逸帝國主義者들이 第1次 世界大戰 以後에 行勢하고, 그들과 함께 「히틀러」가 戰爭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境界의 問題가 提起된다면 어떻게 過去를 克服하여 平和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歐洲住民들은 聯邦政府가 歐洲의 境界를 國際法上 拘束力있는 것으로 承認하고 또한 現在는 물론 未來에도 그 境界를 變更시키려 시도하지 않겠다는 聯邦共和國의 義務를 公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國境變更에 있어 暴力을 전혀 使用하지 않겠다고 宣言하는 것은 소위 平和的 手段으로 國境變更을 위해 鬪爭한다는 戰術, 즉 이미 「히틀러」가 그의 侵略時 使用했던 戰術을 회상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슈트라우스」氏와 「슈뢰더」氏의 命題에 매우 가까이 接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歷史의 經驗을 무시한다면 重大한 結果를 초래합니다. 國境變更을 目標로 한 帝國主義的 強大國 政策이 今世紀에 두번이나 獨逸住民을 流血戰爭과 破局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侵略을 받았던 人民들의 苦痛은 形容할 수 없었으며, 우리 社會主義者들은 모든 政治陣營의 多數의 反「파시스트」들과 共同으로 恒時 「파시즘」과의 戰爭에 對抗해서 決定的으로 鬪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反「파시즘」勢力들은 2次 世界大戰의 勃發을 阻止할 수 있는 地位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파시즘」이 敗北하고 獨逸帝國이 沒落한 후, 오늘날 獨逸民主共和國의 領域에 있는 團結된 勞動者階級과 그의 階級同盟者들은 이 機會를 새로운 反帝國主義的인 秩序를 樹立하기 위해 利用했습니다.

모든 人民의 利害와 一致시켜, 「포츠담」協定에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을 이곳에서는 實現하였습니다. 즉 軍國主義 및 「나찌즘」과 戰爭의 根源除去, 戰爭犯罪者 및 戰爭利得者로서 戰爭에 對한 主要責任者인 大企業系列(Konzerngewaltigen)의 無力化 그리고 獨逸「파시즘」의 侵略을 당했던 이웃 民族들을 위한 올바른 國境의 確定이 實現되었습니다.

大資本을 除去한 후, 獨逸民主共和國에는 軍備와 戰爭에서 利潤을 취할 수 있는 者는 存在하지 않으며, 戰爭宣傳, 人民들의 煽動과 種族憎惡는 法的으로 禁止되고 있습니다. 이미 1950年에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會議는 侵略行爲, 侵略戰爭의 宣傳과 準備에 對해 處罰하는 平和守護法을 議決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者階級이 農民, 知識層, 企業經營者들과 同盟하여 國家權力을 行使하고 있습니다. 大獨逸農民戰爭 以後 議事日程에 올랐으나, 1848年의 「브르조아」革命에서도 實現되지

못한 民主的인 改革들을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實現했으며, 그후 社會主義社會의 建設로 移行 하였습니다. 民主的인 土地改革을 통해 數百年동안 農民과 農業일꾼에게 加해졌던 不法을 말살했을 뿐 아니라 地主(Junker)層을 無力化시킴으로써 軍國主義의 發生素地가 除去되었습니다. 옛 支配階級들의 不當한 教育特權들은 中斷되었고, 편협한 愛國主義와 民族主義의 不健全한 精神은 永遠히 學校와 大學에서 驅逐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現代社會主義的인 教育體制를 建設하는데 決定的인 前提였습니다.

우리의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勞動하는 人民은 自由로운 意思決定으로 發展된 社會主義社會를 形成 하고 있으며, 自由로운 決定과 民主的인 方法으로 人民投票를 實施, 壓到的인 支持로써 社會主義憲法을 採擇했습니다. 國際法的 主體로서의 모든 屬性을 지닌 우리 國家는 鞏固해진 平和秩序위에 存立하고 있습니다.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로서 우리는 確固한 友誼와 利害의 平等에 立脚하여 蘇聯 및 其他 社會主義諸國과 持續的인 同盟을 맺어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平和的인 對外關係를 追求하고 있으며, 바로 그 理由로해서 國際적으로 尊重받는 國家로 發展했습니다.

貴國의 內的인 發展을 評價하는 問題는 물론 聯邦共和國市民의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聯邦共和國 外部에서 결코 無關心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局面과 作用이 지난 25년에 걸친 이러한 內的 發展속에 存在하고 있습니다. 貴國은 1945年 以後의 期間을 有用하게 利用하지 않았는 바, 「포츠담」協定을 意識的으로 履行치 않았으며, 過去를 克服하지 않고 낡은 權力關係를 계속 存續시켰음이 確實합니다. 이러한 復古主義는 直接的으로 緊張을 초래했습니다. 그 당시 西獨의 聯邦議會議長은 『全獨逸이 半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半의 獨逸이 全體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西獨의 大資本은 낡은 所有構造를 救濟하고 再建하기 위해 힘의 政治에 依存하여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修正하기 위해 西方強大國들과 同盟하여 獨逸을 分斷시켰습니다.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聯邦首相이었던 「아데나워」는 그 스스로 民族을 破壞하기 위한 일을 한 후에 그에게는 民族의 統一보다도 西歐統合이 더 중요하다고 솔직히 是認했습니다. 이미 1945年 10月 5日 「아데나워」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言論人代表들 앞에서 『3個의 西方占領地域을 하나의 聯邦國家로 形成』할 意圖를 分明히 밝혔으며, 그후 1948年의 獨自的인 通貨改革은 經濟的 斷切을 초래하였고, 西方占領地域들은 西獨 「마르크」貨를 導入함으로써 計劃的으로 外換外國 (Devisenausland)이 되었습니다. 1年後의 聯邦共和國樹立으로 獨逸은 分斷國家가 되었고 民族도 完全히 分斷되었습니다.

우리는 事態가 이렇게 發展하는 것을 막기 위해 恒常 努力했습니다. 50年代에 獨逸民主共和國과 蘇聯은 相互理解와 平和確保를 目標로 하며, 恒久的인 分斷狀態를 止揚하기 위해서 正當하고 建設的인 提案을 數次 提示했습니다. 특히 1952年 3月 蘇聯의 講和條約案은 그러한 좋은 機會를 提供했습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現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하이네만」博士가 1958年 3月 25日 「본」의 聯邦議會에서 그러한 蘇聯의 「이니시어티브」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事實을 想起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機會 역시 당시의 聯邦府에 의해 虛事가 되었습니다. 民族의 單一性問題는 西獨輿論의 憂慮와 우리의 警告를 無視함으로써 破壞되었습니다. 分斷과 西獨의 單獨政府樹立에 反對했던 西獨

의 唯一한 政黨은 共產黨이었고 그래서 同黨의 活動은 後에 不法化되었고 禁止되었습니다.

民族의 分斷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再武裝과 1945年の 「파리」條約의 締結에 의해, 그리고 1955年 聯邦共和國이 「나토」에 加入함으로써 굳혀졌으며, 「아테나워」가 주도했던 「본」政府가 「파리」條約에 署名하고 우리의 모든 提議를 拒否함으로써 獨逸聯邦共和國 自體는 窮極의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 外國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의 社民黨黨首 「에릿히·올렌하우어」가 1955年 1月 29日 「프랑크푸르트」의 「파울」教會에서 言及했던 말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파리條約에 署名함으로써,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에서 처음으로 獨逸의 分斷을 굳혀 버리게 될 커다란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政策에 대하여 스스로 決定的이고 大膽한 方式으로 그 責任을 甘受한다.』

現在도 貴下는 聯邦首相으로서 「에릿히·올렌하우어」가 적절하게 특징지었던 外交政策의 遺産과 關係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런 歷史的인 眞實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獨逸을 分斷시키지 않았 습니다. 그 責任은 오직 聯邦共和國과 西方強大國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支配集團들의 利己心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20年前부터 이미 存在하지 않는 「民族의 單一性」에 대해 言及한 다든가 「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하고자 한다는 것은 無根據한 일입니다.

聯邦首相, 貴下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를 말할 때 貴下는 屢번히 「獨逸內部關係」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貴政府의 한 部處는 이러한 名稱을 가지고 있습니다. 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을 分斷시키고 「파리」條約에 署名한 후에는 그러한 表現의 使用은 不合理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 國家들간의 正常的인 同等關係와 調和될 수 없는 政治的 意圖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聯邦共和國이 —모든 警告에도 不拘하고— 「파리」條約으로 「나토」體制에 結合되고,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스스로 外國임을 宣言한 以後에는 獨逸內部關係는 存在할 수 없으며, 「파리」條約에 대한 聯邦共和國政府의 同意는 反民族的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侵略的인 帝國主義的 性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獨逸條約」 第2條를 지적한다면,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條文에는 西方強大國들이 이제까지 그들이 獨逸全體에 대해 行使했거나 保留하고 있던 모든 權利를 가진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특히 第7條는 獨逸民主共和國을 聯邦共和國의 獨占資本主義的 社會體制에 編入시키고 또한 西方 帝國主義的 條約體系속에 統合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貴下 自身の 發言과 같이 이러한 條約들이 現 聯邦政府의 政治基盤을 이루는 경우,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은 聯邦共和國의 帝國主義的 支配體制를 獨逸民主共和國에 擴大시켜 獨逸民主共和國을 「나토」條約에 編成化시킨다는 意味外에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聯邦共和國에서 通用되고 있는 4大國의 責任이라는 命題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首都 伯林에 대해서는 아무 根據가 없으며, 獨逸民主共和國에 관한 限, —우리의 憲法과 이와 관련된 獨逸民主共和國이 締結한 國際法的 條約에 비추어 그것을 確信한다는 것은 용이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4大國의 責任에 예속되지도 않고 3大國의 管轄權에 예속되지도 않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하나의 獨立된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입니다.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에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後見關係에 종속시키려는 낡은 要求가 內包되어 있으며, 現實과 矛盾되는 그와 같은 構想들은 오직 낡은 唯一代表라는 越權을 變型된 形態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差別政策 持續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貴

下는 우리가 그것을 결코 수락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協商目的이 아님을 理解할 것입니다.

우리는 貴下에게 그와 같은 行動을 要求하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試圖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 本人은 다음 事項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聯邦共和國이 「나토」에 加入하지 않고 再武裝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講和條約과 民主的인 統一獨逸을 위한 提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獨逸聯邦共和國에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現實主義的 政策을 支持하는 充分한 先見之明을 가진 政治家가 있으리라는 希望에서 國境까지 開放했으나, 聯邦共和國의 指導的 政治集團들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끊임없는 鬭爭을 위해 公開된 國境을 많이 惡用하였으며, 同時に 그 集團들은 社會主義에 대한 攻擊用 軍事力으로 聯邦軍을 完成하는데 모든 企圖을 했습니다.

「特殊한 獨逸內部關係」와 「人道的 措置」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유난히 不快했던 經驗을 記憶합니다. 1961年 8月 31일까지 國境을 開放했던 期間에 우리는 당시 「本」政府의 敵對的인 干涉 政策으로 인해 매우 값비싼 代價를 支拂해야 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1,000億「마르크」以上을 「損害보았읍니다.」 本人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이 經濟戰의 總規模를 明示하기 위해 이 金額이 1956年과 1957年의 獨逸民主共和國의 總國民所得과 거의 같은 規模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比較를 한다면 위에 든 損害額은 주로 1950년부터 1961년까지 獨逸民主共和國이 支出한 總投資額보다도 더 많은 金額입니다.

「本」當局은 「東쪽의 가난한 兄弟姊妹」에 대해 言及하면서, 그들을 참으로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했고, 우리는 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負債의 支拂과 모든 補償義務를 規制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우리의 立場을 이해하리라고 믿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모든 損害에도 不拘하고 그의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에 힘입어 世界產業國家中 注目할만한 位置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共和國과 人民들은 물론 오늘날 所謂「特殊한 獨逸內部關係」 또는 「人道的 措置」같은 것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욱 잘 存立할 수 있습니다.

1961년에 우리가 國境安全措置를 취한 것은 人道的 措置이었으며, 이것은 우리 人民의 生活과 歐洲平和維持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人民은 1961年 8月 13日 外勢가 國內事情을 偵探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最大의 經濟的인 비약을 經驗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에는 그와 같은 方式의 「特殊한 獨逸內部」狀態를 再確立하는 것을 許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개의 特定國家間的 관계는 他國家와의 關係와 比較하면 언제나 特殊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聯邦共和國의 對「오스트리아」共和國 및 瑞西와의 關係는 그 特殊한 特徵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의해서 佛蘭西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는 區別되고 이러한 것은 모든 國家間的 關係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相互獨立的인 主權國家間的 關係는 언제나 國際法의 普遍妥當한 規範에 基盤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는 獨立的인 兩主權國家間的 關係에 대해서도 完全한 効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獨逸人」이라는 公式으로 國際法的 關係의 拒否를 위장하는 것은 無意味하며 問題가 그렇게 單純한 것도 아닙니다. 19世紀初부터 항상 勞動者階級과 勞動하는 人民의 편에 있는 進步的인 獨逸人 및 資本主義的 反動的인 편에 서있는 獨逸人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社會主義的인 獨逸民主共和



國과 獨占資本主義的 聯邦共和國는 서로 獨立한 두개의 國家로 存在하고 있고, 그 나라의 人民들은 완전히 對立的인 條件下에서 生活하며 勞動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들은 自身の 勞動으로 自身の 福祉와 社會主義社會의 福祉를 增進시키고 있으며, 그와 反對로 聯邦共和國에서는 少數階層의 財閥들이 勞動者의 勞動에서 利潤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武裝化에 기여하고, 權力追求를 擴大함으로써 平和를 威脅하는 것도 同一한 獨占集團입니다. 그러므로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과 獨逸聯邦共和國의 住民間에는 基本的으로 社會的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歷史가 指向하는 바와 같이 大「부르조아지」의 利己的인 階級利害는 항상 國家利益을 詐稱하였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現實을 歪曲한 것이며, 大「부르조아지」에게 有益했던 것은 결국 創造的 人民에게는 害롭고 不幸한 것으로 立證되었으며, 勞動者階級과 全人民의 政治的 利害와 社會的 利害, 社會主義의 利害는 이른바 모든 民族의 共通性에 우선합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스스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立的인 社會體制間에는 「여하한 混合」도 「여하한 진부한 妥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事實上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는 두개의 主權國家는 對立的인 社會秩序가 統合될 수 없기 때문에 相互統合될 수가 없읍니다. 本人은—提示된 바대로—이러한 共通的인 評價가 現實主義的인 政策, 즉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겠다는 理性的 政策을 위한 기반이 된다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누가 이에 관해서 沈黙하겠는가?—社會主義者로서 모든 나라와 聯邦共和國에서 社會主義가 勝利하는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原則에 立脚한 將來의 統合이 可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人民投票의 結果 大多數의 人民이 同意했던 우리의 憲法에는 그것이 分明하게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이나 來日의 問題가 아니라는 것은 自明합니다. 이 問題는 서로 獨立된 主權國으로서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한 協商의 對象도 아닙니다. 그것은 聯邦共和國의 勞動者階級과 勞動하고 있는 階層들의 問題입니다.

서로 獨立되고 對立的인 社會秩序를 가진 두개의 國家가 存在함으로써 惹起되는 明白한 問題狀況과 法的 地位에 비추어 볼 때, 平和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하여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唯一한 方法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最近 外國에서 行한 演說에서 우리 두 國家間에 暫定協定(Modus Vivendi)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말하였읍니다. 國際法的 概念으로서의 暫定協定은 주어진 與件下에서—社會主義諸國과 帝國主義諸國間의 現存勢力關係라고도 말할 수 있음—더 以上の 目的과 意圖들이 達成되지 못한다는에서 出發하는 하나의 一時的인 合意입니다.

確實히 貴下에 의해서도 評價받고 있는 「발헬름·리브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는 暫定協定을 서로 敵對的이라고 생각하는 國家間의 交流를 위한 合意形態의 하나로 解釋했읍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아테나워」가 考案했던 非平和的 共存을 위한 하나의 다른 表現 또는 一般的으로 社會主義的 獨逸國家의 存立에 대한 妥協方式으로서 一旦 「大氣象」(Großwetterlage)이 變化하게 되면 承認되지 않는 國境을 侵犯할 수 있도록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 敵對的인 政策을 계속 追求하는 一種의 잠정적인 解決策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現實的인 政策도 또한 平和指向的 政策

도 아니며 반드시 狀況을 尖銳化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重要的 것은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한 持續的이며 拘束力있는 規制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平和共存關係를 전혀 저해하지 않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國際法上 同等資格을 가진 主體입니다. 우리는 國際法上 主體로서의 聯邦共和國의 國家的 存在를 결코 疑心한 일이 없으며, 우리는 關係規定을 위한 國際法的 條約을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聯邦共和國 政府의 見解는 우리와 相異합니다. 聯邦共和國은 如前히 成立될 수 없는 前提條件을 앞세워 우리에게 國際的 承認과 主權國으로서의 完全한 同等資格을 포기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츠담」協定の 基本規定들을 決定的으로 이행한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이었습니다. 聯邦首相, 問題는 貴下의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從來의 破壞的인 態度를 變化시킬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國際的인 次元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을 계속 差別하여 損害를 끼치는 것이 貴政府의 實際的인 政策인 限, 正常的인 關係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貴政府의 外相이 他國과 獨逸民主共和國과의 正常的 關係樹立을 방해하고 貿易代表部의 設置까지도 방해하기 위해 公式的인 訓令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진지하게 同等資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聯邦共和國의 政府代表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를 規制하려는 第3國의 모든 措置를 妨害하기 위해 얼마나 맹렬한 手段을 動員하는 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國際機構에의 同等한 參與를 위해 努力해온 獨逸民主共和國을 遮斷시키려는 變함없는 企圖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企圖는 특히 崇高한 人道的 要請에 이바지하고 있는 世界保健機構에 獨逸民主共和國이 加入하는 것을 저지할 정도입니다. 貴下의 政府가 다른 「나토」諸國의 뚜렷한 疑懼心과 反對를 무릅쓰고 國際法을 違反하면서 西伯林에 設置한 이른바 旅行局(Travel-Board)이라는 官廳을 유지하기 위해 展開하고 있는 活動 역시 우리에게 대한 差別的인 行動입니다. 占領時期부터 始作해서 오랫동안 되풀이 해온 그 行動은 獨逸民主共和國을 모욕할 만큼 差別政策을 쓰고 있으며 다른 國家의 統治權을 干涉하는 越權을 行使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人民을 계속 差別하는 政策을 具體化하는 방대한 證據資料를 제시할 수 있는 立場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本人은 聯邦共和國의 여러 機關들이 수년 전부터 不斷히 增加하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財政的인 義務를 履行하고 결국 많은 負債를 支拂할 必要性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聯邦首相! 唯一代表權과 「할슈타인」原則을 持續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을 이 以上 差別하지 않겠다고 貴下가 反復하여 천명하고 있는 意圖와 完全히 相反되고 있으며, 결국 여기에 言行間의 깊은 矛盾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方法으로는 어떤 경우든 規制된 共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國際法 違反인 唯一代表權 要求와 이에 立脚한 「할슈타인」原則은 窮極的으로 포기되어야 하며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을 妨害하고 계속 第3國에 壓力을 가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試圖를 放置할 수는 없다는 事實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第3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관계에 부담을 加한다는 主張은 옳지 않으며, 第3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外交關係樹立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를 促進시킬 것입니다.

1969年 以來 周知하는 바와 같이 亞細亞와 「아프리카」의 8個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 外交關係를 樹

있었으며, 같은 해에 처음으로 聯邦共和國政府는 두개의 主權國家인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存在한다고 宣言했습니다. 이들 國家의 元首들과 政府首腦들간에는 國際的 慣例의 節次에 따라 公式的인 接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全世界가 納得할 수 있는 明白한 結論이 나옵니다.

聯邦首相, 貴下의 政府가 참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를 追求한다면 同一한 目標을 향해서 나아가는 他國家들의 모든 措置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冷戰의 壟壕속에 貴下의 政府를 묶어 두려는 集團으로부터 貴政府를 풀어주는 同盟者를 얻게 할 것입니다.

聯邦首相, 어쨌든 貴下는 무엇보다도 社民黨 黨首입니다. 貴下는 마땅히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者 農民이 政治權力을 쥐고 있으며, 모든 「파시스트」의 國家機關이 숙청되었고 또한 大企業이 人民所有로 되었다는 것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1891년에 이곳 「에어폴트」에서 滿場一致로 決議되었던 獨逸社會民主黨의 綱領이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實現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貴下의 現實主義的 態度와 그에 수반되는 必然的인 結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尊敬하는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立場을 밝혔으며,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한 우리 두 國家間의 同等關係에 관한 條約의 必要性을 論證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條約을 締結함으로써 지난 20年歷史에 終止符를 찍을 時點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우리 國家間의 關係規制를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出發을 합시다. 그것이 容易하지 않다는 것은 疑問의 餘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眞正한 平和措置를 위한 善意와 決意가 必要합니다. 우리는 平和, 歐洲安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에 이바지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不幸한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본다면 復仇政策을 維持하려는 努力을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基本問題—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 樹立—의 解決을 가능하게 하는 條約草案을 提議했으며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協議하여 이러한 條約을 締結할 생각입니다. 同等資格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그와 같은 條約이 締結되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史에는 새로운 章이 記錄될 것입니다.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的 原則에 따라 이루어진 그러한 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그리고 歐洲의 모든 國家住民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써 平和나 安保以上の 것이 達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正常的인 關係가 樹立되었다고 해서 聯邦共和國의 軍需財閥, 新「나치」主義者들, 復仇主義的인 結社들의 活動과 威勢, 그리고 나날이 만연되고 있는 復仇思想과 十字軍思想으로부터 發生하는 危險들이 다 除去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注意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5年前부터 始作된 單獨 貨幣改革과 聯邦共和國의 單獨樹立으로부터 再武裝과 「파리」條約을 거쳐 「나토」에의 加入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의 그릇된 措置가 취해진 후, 처음으로 올바른 方向에서 이루어 지는 實際的인 措處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條約草案은 兩國家間에 同等한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 외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

邦共和國間的 暴力拋棄에 合意하자는 提議를 內包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主要한 問題는 暴力拋棄가 條約 當事國과 그의 國境線을 國際法的으로 相互 承認하는 바탕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際法上 効力있는 暴力拋棄協定은 國際法上 主體로서 存在함을 相互 承認하는 國家間에만 締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前提가 成立하지 않고는 暴力拋棄란 無根據한 것이며 속이 빈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拘束力없는 단순한 國境의 尊重이 問題視되는 것이 아니라, 國境과 領土保全에 대한 留保없는 國際法的 承認이 問題視됨을 本人은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지체없이 「유엔」機構加入을 申請하자는 의미깊은 規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政治, 經濟, 文化的인 潛在力을 지닌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同等하게 「유엔」機構의 世界的인 活動에 參加하고 또한 이러한 方法으로 世界人民의 全般的인 平和의 協力에 이바지할 경우, 그것이 우리 兩國家와 그 人民의 利害에 관계됨은 물론 世界機構의 普遍性에도 寄與한다는 데에 疑問을 提起할 者는 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은 끝으로 兩國家가 모든 形態의 核武器를 拋棄하며 自己領土위에서 生化學武器를 生産한다든가 所有 또는 貯藏하지 않는다는 것을 保障하고 軍縮協商을 始作할 것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國際法上 拘束力을 가지는 軍縮에 관한 措置에 合意하자고 다시금 提議합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가장 무섭고도 危險한 武器에 대한 恐怖로부터, 毒「가스」 및 「박테리아」에 대한 恐怖로부터 人間을 解放시키는 것이 가장 人道的인 行爲가 아닌가를 묻겠습니다.

우리의 對話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속에 提示돼 있고 또 建設的인 解決策이 마련된 것처럼 歐洲心臟部의 平和를 確保한다는 決定的인 問題에 관한 直接的인 妥結可能性을 提供해 주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平和共存을 貫徹하는 過程에서 서로 國際法的인 正常關係를 樹立하고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모든 敵對的인 政策이 포기되는 경우, 다른 問題도 解決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平和共存이라는 基本問題 解決은 다른 모든 問題解決을 위한 前提입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協議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對話目的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國際法上 同等關係를 樹立하는 問題에 관해 合意하는데 있습니다.

이 點에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協議를 遂行함에 있어서 貴下에게 提示된 條約草案으로부터 出發하여 그 條約草案의 原則에 立脚해서 다음과 같은 原則的 問題를 다루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1.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正常的인 無差別, 同等關係의 樹立, 모든 形態의 越權的인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唯一代表權 拋棄
2. 他國의 對外關係의 不干涉, 「할슈타인」原則의 궁극적이며 明白한 拋棄
3. 「유엔」憲章 第2條 4項에 따라 制限없는 國際法的 自主權의 相互承認, 領土保全과 既存 國境線 不可侵 및 相互承認下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暴力拋棄
4.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機構 加入申請
5. 核武器 保有의 拋棄, 또는 어떠한 形態로든 核武器 處分權의 拋棄, 生化學武器의 生産, 使用

및 貯藏의 拋棄, 軍費支出의 50% 節減

6. 第2次 世界大戰의 모든 殘滓의 必領的인 除去와 關係된 問題들의 討議

7.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모든 負債의 清算과 獨逸聯邦共和國에 의한 賠償義務의 規制

聯邦首相, 끝으로 本人은 다시 한번 建設的인 解決을 願하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決意를 確認하고 싶습니다. 本人은 問題의 意義와 複雜性에 비추어 볼 때 雙方首相들이 協議를 위해 계속 만나 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隣接地域에 서 貴下와의 對話를 위해 만날 의도가 있습니다. 本人은 다음과 같이 確信합니다. 聯邦共和國 政府가 長期的 眼目으로 勇氣와 決斷을 發揮한다면 平和와 歐洲安保에 寄與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 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를 規制할 수 있는 與件들이 造成될 것입니다. 貴下의 傾聽에 감사합니다.

〈出處: 1970年 3月 20日字 東柏林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 ②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

首相, 그리고 紳士 여러분!

本人이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見解와 상당한 差異가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會談에서 아무것도 美化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지난 20年 또 는 25年間의 功過를 따진다고 해도 거기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現實狀況을 고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將次 平和와 人間을 위해 發展을 가져다주는 雙方의 共同的 利害關係를 追 求해야 합니다.

이 問題에 관한 本人의 見解를 表明하기 前에 우리를 이곳 「에어폴트」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貴下의 友好的인 歡待에 感謝드리고 싶습니다. 우리側의 對話相對方의 誠意있는 準備로써 우리의 相逢은 착오없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貴下는 貴政府와 「에어폴트」地區 그리고 「에어폴트」에서 온 모든 會談參加者와 補助者들에게 그분들의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本人의 人事를 傳해 주시 기 바랍니다.

數週만 지나면 獨逸帝國의 破滅로 民族社會主義者들의 暴力統治가 終末을 고한 지 25년이 됩 니다. 우리가 비록 갈라져 있지만 獨逸帝國의 終末로 因해서 이 곳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 니다.

世界는 獨逸 사람의 이름으로 자행된 非行과 이미 다 저질러진 破壞에 대한 恐怖로 가득 차 있습 니다. 運命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事件에 責任을 져야 합니다. 世界 는 우리가 이러한 責任을 질 것을 善意로 要求하였고, 또 이것은 獨逸이 現狀態로 된 原因에 대해 서도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그러나 歷史的인 論爭은 우리에게 無益합니다. 獨逸民族의 進路가 서로 分離되고 1945年 以後 國

家的 統一의 길이 막혀 있는 現狀은 個人的으로나 民族의 立場에서 悲劇的이며 우리는 그러한 歷史를 無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本人은 序頭에서 現狀況이 平和와 獨逸國民을 위해 將次 發展을 가져다 주는 共同의 利益을 追求할 것을 要求한다고 말했습니다.

今年 3月 19日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은 물론 獨逸民主共和國의 住民들과 모든 獨逸人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兩國家가 樹立된 후 처음으로 政府首腦들이 共同의 關心事를 協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理性만이 必要한 것이 아니라 感情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兩側은 확실히 우리의 會談이 獨逸의 國境을 넘어 全世界의 큰 關心을 받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이 「에어플트」라는 지역이 獨逸人에게 어떤 意味를 지니는 가를 우리는 우리의 共同의 歷史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은 1808年 10月 22日 이곳에서 「괴테」에게 『政治는 運命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에어플트」에서 1850年 3月 20日 그 당시 獨逸을 平和的이며 民主的인 方法으로 統一하려는 마지막 試圖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社會民主主義者들은 1891年의 「에어플트」綱領이 獨逸勞動者運動의 活性化를 위해 발휘했던 役割을 記憶할 수 있습니다. 同 綱領이 恒時 理念史의 한 章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民主主義의 意志, 보다 重大한 社會的 正義에의 意志, 그리고 平和에의 意志가 적절한 時期에 貫徹되었다면 獨逸國民과 歐洲와 全世界가 그 엄청난 不幸을 甘受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民族이 沒落한 것처럼 보인 時期에—전혀 相異한 條件下에서 일지라도—民族에게 새 出發의 機會가 許容된 것입니다. 이것은 獨逸兩地域의 再建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都市들이 破壞로부터 蘇生하였으며, 經濟와 科學이 팔목할만한 水準에 도달했습니다.

相互 分離된 두 國家로의 分斷은 그것을 어느側의 立場에서 觀察하는 가에 따라 根本的으로 相異한 評價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分斷으로 因한 事態發展을 全的으로 否定的 觀點에서 評價한 것은 서로 相對便에게 그 責任과 義務를 轉嫁해야 했고 또 해야 할 必要性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945年以後의 獨逸政治는—兩側의 모든 再建의 경우—全的으로 獨逸을 占領했던 強大國 政治의 한 機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東·西間의 勢力對決은 獨逸의 狀況을 完全히 左右했고, 歐洲를 分斷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分斷을 단순히 以前狀態로 還元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分斷의 諸結果를 緩和시키고 또한 能動的으로 發展에 기여함으로써 歐洲와 獨逸에서의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障礙物들을 除去하기 위해 努力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 本人은 持續的이며 生命力있는 하나의 獨逸民族이라는 現實로부터 出發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本人이 過去의 民族主義的인 思考에서 脫皮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民族의 構成要素들이 歐洲統合과 國際的인 聯合過程에서도 그 當爲性을 상실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確信하고 있습니다. 共同生活을 經驗하고 共同의 責任을 나누며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脫皮할 수 없는 強한 歷史성과 우리로 하여금 共屬感을 느끼게 하는 家族, 言語, 文化 및 其他 모든 無形의 結束關係가 오늘날 하나의 現實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民族의 實存的 基底를 否定

하거나 無視하고자 試圖하는 政策은 敗北하기 마련이라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即, 1970年 現在의 事實上의 獨逸領土內에서 함께 生活해야 할 2개의 國家가 分斷되어 있다는 現實에서 出發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各其 다른 社會秩序를 評價함에 있어서 우리 사이에는 深刻한 見解差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差異가 歐洲平和를 보다 鞏固히하고 兩國家間의—歐洲平和秩序를 展望하면서— 規制된 平和共存을 追求하는 우리의 課題를 排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課題를 업무에 두는 경우에만 우리의 會談은 正當한 意味를 지닙니다. 우리가 問題를 解決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歷史속에 存續할 수 있습니다. 問題의 解決을 가로막는 難關들에 대해서 그릇된 希望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兩獨國民들은 너무도 現實主義的이기 때문에 설사 兩側이 뜻을 같이 한다해도 兩政府 首腦가 現在 國家統一을 實現시킬 수 없다는 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습니다. 世界情勢에 비추어 볼 때, 危險한 不安을 甘受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許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現實을 초월하여 우리 國家의 利益과 우리 國家가 同盟을 맺고 있는 強大國들의 利益이 平和와 人間을 위해 서로 調和를 이루도록 함께 努力해야 합니다.

獨逸당위에 있는 兩國家間의 現關係에서 우리가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國家와 國民들이 相互交流하고 있는 通路에서 밀려난 채 兩獨國民들이 아직도 서로 담을 쌓고 있다는 現實입니다. 이러한 否定的인 特殊狀況은 타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克服되어야 합니다.

緊張 代身에 緊張緩和, 軍事的 對決 代身에 平和의 確保—이것이 우리 政府의 目的입니다. 그리고 本人은 이와 관련해서 本人이 獨逸聯邦共和國內의 責任있는 勢力에 의해 支持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對話가 國家間의 常例의인 方法대로 官吏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頂上의 對話로 始作되었다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關係의 特殊性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들은 政府次元에서의 直接的인 接觸없이 解決이 不可能한 程度로 중대한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分斷은 점차 深化되었습니다.

바로 이 點에 우리의 共同 責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兩國家의 關係規制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全般的 責任을 歷史에게 또는 部分的 責任을 「히틀러」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責任은 現在 우리 自身에게 있는 것입니다.

本人과 本人의 一行은 이곳에서 單純히 友好的인 說得이나 하고 또 같이 만나고 있다는 事實을 통해 雙方의 見解를 一致시킬 수 있다는 幻想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原則的인 差異들을 알고 있으며, 그 差異를 冷靜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가 서로 相對便의 見解를 理解함으로써 自己自身の 政治를 옳게 評價할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을 拋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現實 그 自體의 狀況에서 出發해야 합니다. 歐洲心臟部의 關係가 沮害되고 있는 경우 東西間의 關係가 本質적으로 改善될 수 없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것은 兩政府가 우리 두 國家의 利益과 獨逸民族의 利益을 위해, 우리 大陸의 安保를 위해 나아가야 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엄숙히 試圖해야 할 것을 要求합니다.

그 경우 어두운 過去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앞을 내다 보려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姿勢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國家間에는 서로 友好的인 나라 또는 其他 同盟國家들의 住民間에는 存在하지 않는 特殊한 關係가 있음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他國家들간에는 存在하지 않는 共通性이 있습니다. 우리가 克服해야 할 對決狀態 역시 他民族들간의 對決과는 相異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 對決들은 民族의 單一性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共通性도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高度로 武装한 體—獨逸領土 위에서 서로 對決하고 있는 集團防衛同盟體제의 構成員입니다. 兩 國家는 지난 數年間 戰爭을 防止했고 오늘날 相對的인 安全을 보장함으로써 歐洲의 勢力均衡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眞正한 의미의 平和와 安全은 「블럭」의 對決과 獨逸內의 두 國家의 敵對關係를 함께 終熄시킬 수 있는 歐洲平和秩序에 의해서만 持續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聯邦政府는 平和를 最高의 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땅위에서 더 以上 戰爭이 勃發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兩 獨逸國家는 憲法에 規定된 目的을 追求하기 위해 暴力行使나 暴力으로 威脅할 權利나 그 可能性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平和를 愛護하는 民主的인 獨逸의 統一은 결코 戰爭이나 內亂에 의해 成就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물론 兩 獨逸國家가 指向하는 目標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貴下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간에는 差異가 있습니다. 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記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自由主義社會的 法治國家를 支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우리가 歷史만이 對答할 수 있는 「테마」에 관하여 이곳에서 論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오늘날 歐洲의 여러 國家들을 分斷시키는 障礙들을 除去하게 될 歷史의 發展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獨逸民族이 自由로 스스로 決定해서 함께 生活하려는 努力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以外에도 우리 두 獨逸政府에게 重要한 點을 밝히고자 합니다.

1944年以後에 締結된 獨逸에 관한 4大國協定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두 國家間的 合意는 4大國의 既存權利를 侵害하거나 代置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西方 3大國과 우리의 協定에 대해서는 물론 蘇聯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協定에 대해서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맺은 雙務條約이나 多邊的 條約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協定은 必要한 것이지만 우리사이의 障壁을 解消시키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本人이 4大國協定과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協定에 대해서 言及하는 것은 결코 伯林問題 때문은 아닙니다. 本人은 貴下가 이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기를 請합니다. 獨逸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우리는 伯林的 現狀을 變更시킬 수 없습니다. 本人은 一面 現實을 認定할 것을 要求하면서 또 다른 面에서는 주어진 現狀의 一方的 變更을 要求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聯邦政府가 西伯林을 統治하지 않는다는 事實로 인해, 聯邦政府가 西方 3大國으로부터 一定한 委任을 받아 外部에 대해 西伯林을 代表하거나 伯林的 經濟的 生活能力을 支援하는 일 등이 방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事實上 西伯林은 經濟的, 財政的, 法的, 文化的인 面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分離될 수 없습니다. 伯林은 그러한 點에서 完全히 우리에게 所屬되고 있습니다. 西方 3大國도 獨逸聯邦共



和國도 그리고 직접적 當事者인 伯林住民도 4大國이 確定한 伯林的 地位가 變更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變更은 所屬을 바꾸는 것입니다.

4大國이 伯林에 대해서 그들의 最高權限을 어떻게 行使하는가를 決定하는 것은 4大國의 事項입니다. 現地位의 改善에 關係 4大國間에 約定이 成立한다면 聯邦政府는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政府의 立場에서 볼 때 歐洲中心部의 正常化와 緊張緩和를 위한 努力이 伯林과 伯林周邊의 緊張緩和 및 正常化와 結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한 여지가 없습니다.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昨年 12月 18日 우리의 大統領에게 兩獨國家間의 同等關係樹立에 關係 條約草案을 傳達했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습니다. 聯邦政府는 그 후 條約草案의 內容을 檢討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草案의 內容을 對話를 通해서 다루기 前에는 결코 公表하지 않을 것입니다. 聯邦政府는 우선 意見交換을 始作하자는 것으로 그 立場이 決定되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條約草案에 대한 우리側의 代案을 提示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意見交換의 目的은 우리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를 條約上 規制하기 위한 協商의 可能性與否를 확인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 政府로서는 同 條約이나 協定이 우리들의 政府가 第3國들과 締結하는 모든 協定과 同一한 拘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本人은 우리들의 政府間에 이루어 질 協商의 方式과 對象에 關係 本人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首相이신 貴下에게 이미 1970年 1月 22日字의 書翰으로 通知했습니다. 그 당시 本人이 貴下에게 傳達한 內容, 即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立場을 밝히고 있는 原則들을 다시 한번 確認하겠습니다. 즉,

1. 兩 國家는 獨逸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兩 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니다.
2. 이밖에 雙方은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특히 모든 差別의 排除, 領土保全의 尊重, 모든 紛爭問題의 平和的 解決義務 및 兩側 國境의 尊重義務를 履行해야 한다.
3. 거기에는 條約 雙方의 領域內의 社會構造를 暴力으로 變更시키지 않는 義務도 包含된다.
4. 兩 政府는 특히 專門的, 技術的 協力を 위한 規制等 善隣的 協力を 위해 努力하며 이를 위해서 政府間 協定속에 改善措置를 規定한다.
5. 全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대한 4大國의 既存權利와 責任은 尊重되어야 한다.
6. 伯林內 및 伯林問題의 現狀을 改善하기 위한 4大國의 協定締結 努力을 支持한다.

首相! 지난 1月 22日에 本人은 貴下에게 相互間의 暴力拋棄에 關係해서 合意할 것을 提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關係의 基盤은 우리 두 國家가 歐洲安保와 國際的 安全保障問題에서 뿐 아니라 相互關係에 있어서도 「유엔」憲章 條文의 一般的인 原則과 目的에 따른 것이라는 共同宣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紛爭問題는 오직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兩獨關係에 있어서는 물론 歐洲安保問題에 있어서도 「유엔」憲章 第2條에 따라 暴力威脅 또는 暴力行使를 拋棄할 義務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 兩國家關係를 條約上의 原則위에 세운다는 것은 歐洲를 위한 重大한 措置이며 歐洲의 安保와 協力の 強化에 이바지할 會議를 促進할 것이 確實합니다.

貴 國家評議會 議長의 條約草案에는 國際機構에서의 우리 두 國家의 地位와 관련된 內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本人은 이미 1969年 10月 28日字의 施政演說에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유엔」과 其他 國際機構에서 協力을 強化할 意圖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本人은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와 우리 友邦의 立場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自體의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本人은 우리 對話의 進行過程에서 그리고 우리 對話의 進展에 따라서 이 問題에 관해서도 論議할 것을 提議합니다.

이와 같은 進展이 이루어지면 우리 國民과 우리의 經濟 및 科學의 能力은 全世界의 平和와 發展, 그리고 貧困追放鬪爭에 보다 더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우리는 東西의 兵力과 軍備를 制限하여 均衡을 이루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우리 獨逸人들은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해 努力하는 分野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同盟體들을 完全히 信賴하면서 建設的인 競爭을 할 수 있는 能力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相互間에 그리고 우리 國民을 위해서 平和를 이룰때에 비로소 世界에서 平和的 關係를 促進시키려는 모든 努力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確信할 수 있습니다.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形式的인 文書만으로는 不充分합니다. 關係를 正常化함으로써 兩側市民들은 무엇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廣範한 分野가 提示될 수 있으며, 本人은 이 分野에 관해서 단지 暗示的으로 한계를 짓고자 합니다. 具體的인 內容은 앞으로의 會談과 다른 次元의 實務的 協議에서 취급되도록 留保되어야 합니다. 本人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人間的인 苦痛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두가지만 들어 보면, 子息들이 兩親과 結合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들을 再結合시킬 方案을 마련해야 합니다. 愛人들이 境界線의 兩側에서 서로의 結合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우리는 그들의 結婚을 可能하게 해야 합니다.

交易이 계속 發展되고 있음을 本人은 滿足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管轄 官廳들이 지난 1年半동안의 肯定的인 資料에 滿足하지 말도록 當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經濟와 技術分野에서도 本質的으로 더욱 活潑한 交流를 追求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領域에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道路交通分野에서 우리국가와 他國들의 計劃을 調整해서 國際高速道路(Fernstraße)를 建設하고 더 많은 越境通路의 開放과 其他 通信業務의 改善을 圖謀해야 합니다. 旅客列車往來의 促進, 一般料金表에 의한 統一된 運送法規의 制定 및 鐵道行政間의 技術的 接觸의 改善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兩獨間의 水路航行分野에서도 改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兩獨間에 서로 緣故關係가 있는 個人이나 商社間의 接觸을 改善하는데 關心을 가지고 電話交流, 電報交流 및 「텔레타이프」交流를 強化하고 其他 電信制度와 施設의 効果的 利用 및 清算交流에서의 難關을 克服하기 위한 協定을 締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本人은 境界線을 사이에 두고 發生하는 문제, 그리고 그 地方의 問題들을 解決하는데 必要한 수 많은 實際的인 問題와 行政的인 問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獨逸聯邦共和國과 東歐의 諸國家間에 이미 進行되고 있는 것처럼 東·西伯林과 兩獨間에 相互訪問, 文化交流, 「스포츠」交流등을 더욱 擴大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發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始作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正常化를 원한다면

면, 그리고 條約이 空虛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단 始作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솔직히 말하자면, 眞正한 意味의 正常化가 이루어지면 兩獨間의 境界와 障礙物의 克服에도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특수하고도 안타까운 狀況을 상징합니다. 今明間 現狀을 變更시킬 수 있는 展望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自由로운 往來와 人權伸張을 이룩하는 關係發展이 우리가 追求하는 目的이요 意味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와같은 우리의 見解에는 變함이 없습니다.

本人은 우리들의 關係가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脚하여 樹立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出發하고 있습니다. 우리 雙方은 누구도 다른 쪽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으며, 對外的으로 獨逸의 다른 한 部分을 代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어떤 感情으로서든—우리가 認識하고 있는 發展의 結果입니다.

一般的인 關係樹立이 進歩임에는 틀림없지만 兩獨國家의 目標은 特別히 密接한 關係를 樹立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本人은 今年 1月 14日 獨逸聯邦議會에서 行한 本人의 演說속에 列舉했던 우리가 指向해야 할 點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兩獨逸國家中 어느 國家도 다른 國家를 後見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의 어떤 法이나 어떤 社會形態의 廢止를 要求하기 위해 이 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한 同一한 要求를 수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首相! 貴下가 이 곳에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立場을 提示하면서 言及한 一連의 중요한 個別問題들에 관하여 本人은 오늘의 對話와 次後의 對話過程에서 기꺼이 論議하고 싶고 또한 本人이 말한 內容도 貴側이 주의깊게 檢討해 줄 것을 要請합니다.

다만 本人이 이 機會에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內政治發展의 여러 相異한 局面에 관한 貴下의 評價, 여러 個別的 政治集團과 政治의 人士들에 관한 貴下의 評價,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의 發展과 兩獨國家의 成立에 관한 貴下의 諸分析等에 本人이 일일이 反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貴下의 見解에 同意한 것은 아니라는 點입니다.

本人은 또한 貴下가 방금 「나토」에서의 獨逸聯邦共和國의 役割에 관해 發言한 內容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本人은 貴下가 聯邦政府의 國防相이며 本人의 社會民主黨 副黨首의 한 사람인 本人의 親舊 「헬무트·슈미트」의 特殊하고 個人的인 役割에 관해 貴下가 根據없는 非難을 한 內容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하한 侵略的 國防政策을 追求하고 있지 않습니다. 貴側도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所屬하고 있는 同盟의 充實한 「파트너」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東西間에 또는 同盟間에 歐洲의 政策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 限해서 兩側에 變化가 招來됩니다. 故로 本人은 그와 같은 變化가 오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首相, 貴下는 貴下의 觀點에서, 本人에게 全般的인 問題와 原則的인 問題에 討議를 集中해야 하고, 2次的이며 3次的인 問題에 沒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本人은—몇가지 더 補充發言을 해야 하겠습니까—本人의 觀點에 立脚해서 全般的이며 原則的인 問題와 個別的으로 는 原則的인 問題만큼 重要하지 않은 實際問題를 對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對比는 雙方에게 여러가지 問題를 提起해 줍니다. 우리의 關係가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脚해야 한다는 것, 어느 側도 다른 側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느 側도 對外的으로 獨逸의 다른 部分을 代表할 수 없다는 것 등은 獨逸內部關係의 次元에서 말하는 意味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強調하는 바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貴側은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를 獨逸內部關係라고 하지 않고 獨逸國家間(Zwischendeutschland)의 關係即 두 獨逸國家間의 關係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貴下는 具體的으로 두차례에 걸쳐 本人이 協商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對해 本人은, 우리는 協商에 적합한 時期가 언제인가를 決定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對答했습니다. 本人은 時期가 到來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本人은 이제 雙方이 協商을 위해 提議했거나 앞으로 提議할 모든 問題를 添加해서 協商할 準備가 되어있다고 分明히 對答합니다. 本人은 統一獨逸을 展望하면서 우리 兩 國家의 憲法에 관해서 言及했습니다.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이 締結한 諸 條約들에도 해당합니다.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條約은 蘇聯과 貴側의 友好條約에서와 마찬가지로 國家統一의 可能性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雙方이 하나의 目的을 標榜한 一連의 態度 表明이 있습니다. 따라서 諸 條約에 있어서는 물론 民族自決權과 관련되는 이러한 展望에 대한 意圖와 目的에서 어떤 變化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明白합니다.

바로 이러한 理由에서 本人은 國際法的 承認은 물론 內政不干涉의 概念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關係 樹立에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兩 國家의 各 政府는 自己의 權限으로 自己領土內에서 規制한 바를 各各 尊重해야 할 同一한 義務를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勿論 이 경우 獨逸聯邦共和國과 그의 指導의 人士들을 非難攻擊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正當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國家間의 無差別原則의 一部입니다.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이 將次 實現될 하나의 固有한 自主的 獨逸民族이라는 우리의 目的을 侵害하여서는 안됩니다.

首相, 貴下의 發言과 本人의 發言에 비추어 判斷할 때 우리는 멀고도 험난한 艱 路程의 始發點에서 있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그러나 過去에 있었던 모든 것과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모든 것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이 길을 떠날 準備가 되어있다는 또 하나의 結論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要因들을 度外視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合意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問題에 重點을 두고 對話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선 豫備的인 宣言을 했다는 것은 두 國家의 政府首腦들이 처음으로 合席했다는 特異한 事情에 비추어 理解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經驗을 土臺로 問題의 解決에 關心을 갖고 보다 信賴의 霧圍氣속에서 對話를 進行시켜야 하며 마치 窓밖의 경치구경하듯 形式的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本人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러한 方法으로 對話를 進行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이 對話方式을 基礎로 해서 獨逸聯邦共和國이 蘇聯政府와 「폴란드」人民共和國政府를 相對로 갖게 될 對話를 展開할 것입니다.

首相, 本人은 끝을 맺기 前에 우리의 對話를 繼續하기 위해 곧 貴下가 獨逸聯邦共和國을 訪問해 주도록 招請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오후에 계속해서 本人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本人은 우리가 오늘 演說을 마친 後에 雙方의 代表를 任命해서 그들이 몇몇 補佐官들과 함께 5月初頃 우리의 第2次會談때까지 兩側에서 提議한 內容을 充分히 評價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우리가 第2次 會談時 報告받을 수 있도록 檢討를 必要로 하는 問題들의 目錄을 提示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 이 目錄에 根據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會議節次, 특히 우리의 實務代表團 또는 委員會의 課題들을 論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는 그들이 우리 政府의 首都, 즉 「본」에서 恒久的으로 作業을 할 수 있도록 條件을 保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입니다.

이것은 本人의 節次上的 提議이며, 아주 合當한 提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問題를 逆으로 解決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고도 現實主義적으로 일을 進行시켜 나가는 경우에만 우리는 우리 國民들과 더 나아가서 東西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期待하는 바를 達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出處：1970年 3月 20日字의 公報 39號〉

### ③ 공동성명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슈토프」의 招請으로 1970年 3月 19日 「에어폴트」에서 第1次 會談을 갖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과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 「빌리·브란트」가 만났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은 이 會談에서 「오토·빈쩌」(Otto Winzer)長官, 「미카엘·콜」博士, 「귄터·코올트」(Günter Kohrt)次官, 內閣 副局長 「게르하르트·쉬슬러」(Gerhard Schüßler)博士, 局長 「한스·보스」博士(Hans Voss)를 隨行員으로 대동했다.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隨行員으로 「에곤·프랑케」(Egon Franke)長官, 「볼프람·도른」(Wolfram Dorn)次官, 「콘라드·아알러스」(Conrad Ahlers)次官, 局長 「울리히·사암」(Ulrich Sahm)博士, 「위르겐·바이헤르트」(Jürgen Weichert)局長이 同行하였다. 이 會談에는 이 밖에도 兩側의 高문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은 1970年 5月 21日, 「캇셀」에서의 第2次 會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招請을 수락하였다.

聯邦首相 「브란트」는 「부헨발트」(Buchenwald) 기념관에 헌화함으로써 「나치스」의 暴力統治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오토·빈쩌」長官의 안내를 받았다.

〈出處：1970年 3月 21日字 公報 第40號〉

## 文 書 11

###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 相互 取扱業務에 대한 決算 및 清算에 관한 合意書 및 附屬文書

1970年 4月 29日

#### 1) 合 意 書

獨逸聯邦共和國遞信省과 獨逸民主共和國遞信省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간의 相互 郵

便 및 電信交流에 관한 全般的 規制가 아직 없다는 諒解를 根據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雙方은 兩獨間의 相互郵便電信交流를 최소한 現存하는 規模內에서 可能한 程度로 實施한다.

第2條

(1) 1967年 1月 1日부터 相互 取扱한 業務實績에 대한 補償은 總額清算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2) 上記 (1)項의 總額清算規定은 本 合意書의 附屬文書인 追加議定書에 규정된다.

第3條 1966年 12月 31日까지 兩獨間의 郵便과 電信交流에서 相互 取扱한 業務實績에 대한 總額報償은 조속한 時日內에 協商을 통해 處理한다.

第4條 雙方은 第1條의 規定을 참작하여 兩獨間의 相互郵便, 電信交流 業務의 改善을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追加 長距離電話 및 「텔레क्स」線을 架設할 義務를 진다.

第5條 本 合意는 署名함으로써 効力을 가진다. 本 合意書는 2통을 作成한다.

1970年 4月 29日, 「본」

獨逸聯邦共和國 遞信省을 代表하여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을 代表하여

「에크너」博士

「렘케」

## 2) 附屬文書

合意書 第2條 2項에 따른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의 相互取扱 業務에 대한 決算 및 清算에 대한 議定書

第1條

(1) 相互間의 遞信 및 電信交流에서 遂行된 業務에 대해서 每年 總括적으로 清算하며, 年度가 경과함에 따라 滿了한다.

(2) 獨逸聯邦郵便局은 獨逸郵便局에서 每年 取扱한 業務에 대해 總 3,000萬「마르크」를 報償한다.

(3) 計算書의 作成과 送達節次는 省略한다.

第2條

(1) 第1條 2項에 따라 合意된 總額은 우선 1973年末까지 有効하다. 이 規定은 合意한 어느 한 便이 總額의 變更을 希望하여 이 總額의 額數에 있어 交流規模에 合當하지 않음을 證明하 지 않는 限 계속 有効하다. 이 證明은 每 當該年度 6月 30日까지, 즉 總額의 變更이 確立 되는 時期의 6個月前에 提示되어야 한다.

(2) 變更된 清算總額은 總額을 變更하기로 合意한 다음해가 시작되면 有効하게 된다. 이 時期까지는 그 때까지 通用되던 合意書가 有効하다.

第3條 1967年, 1968年, 및 1969년에 대한 支拂總額은 지금까지 獨逸聯邦郵便局이 支拂한 22,016,100「마르크」를 算定해서 本 合意書 締結後 14日以內에 支拂하여야 한다.

第4條 支拂하게 될 金額은 獨逸聯邦銀行 細部計定/3-4003號의 獨逸民主共和國 國立銀行 計定을 통해서 獨逸民主共和國 遞信省앞으로 支拂한다.

〈出處：(聯邦遞信省의 文書에서 나온) 原文〉

## 나. 제2차 정상회담(카셀, '70. 5. 21)

### ①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회담전 성명문

聯邦首相!

우리가 對話를 始作하기 前, 本人이 獨逸聯邦共和國에 到着해서 言及한 바 있는 다음의 問題들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습니다.

즉 本人은 다음과 같이 言明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아직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機關들과 法院이 國際法을 違反하면서 聯邦共和國의 國境線을 넘어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들의 權利와 管轄權을 侵害하는 立法, 判決, 其他의 國家的 行爲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一般的으로 認識되고 있는 國際法에 對한 恒久的이고 엄중한 違反이며, 本人이 言及한 獨逸聯邦共和國의 立法活動과 司法行爲는 完全히 諸 國家의 主權的인 平等, 不干涉 및 無差別의 原則에 不합되지 않습니다. 全世界에서 通用되고 있는 바와 같이 國家間의 平和的 協調라는 觀點에서 볼 때,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法院의 權限은 國內에서만 拘束力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効力範圍가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을 超越하여 擴大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 其他 法令, 決定, 判決 그리고 그 外의 國家機關의 行爲는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들에 對하여 이제까지 전혀 法的 効力을 갖지 않으며 現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對해서는 無効입니다. 不法에서 法이 成立될 수는 없습니다.

1970年 3月 19日 獨逸民主共和國에서 우리는 모든 差別을 떠나 두 主權國家의 首腦로서 對談하였습니다.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의 立法뿐 아니라 政策 역시 主權國家로서의 國家代表들간의 關係樹立을 위해 國際法的인 規範과 完全히 一致하고 있기 때문에 可能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會合을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도 물론 이러한 點을 前提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70年 5月 5日字 書翰에서, 本人은 貴下에게 모든 差別을 止揚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 政府代表團의 自由로운 滯留를 保障해 줄 것을 要求했습니다. 本人은 聯邦首相인 貴下에게 再次 獨逸民主共和國의 代表들에 對한 「파시즘」적인 策動과 直接的인 殺人使曠을 禁해 줄 것을 強力히 要求했습니다.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新「나치」勢力들을 制止하지 않고 公公然한 殺害威脅을 禁止시키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聯邦首相!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代表團은 貴下가 引導했던 代表團이 「에어폴트」를 訪問했던 때와 同一한 權利와 同一한 待遇를 享有할 것이라는 貴下의 確約과 이것이 어떻게 不합하는지를 本人은 貴下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問題點들에 對해서 世界輿論은 應當한 結論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이러한 式의 策動으로 오늘 우리 會合이 부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差別的인 立法措處에 關해서, 本人은 聯邦首相인 貴下에게 貴下가 우리의 「에어

플트」會合에서 公式的으로 천명했던 것, 즉 『各者가 自己側단을 代表할 수 있다는 것은 分明하다』는 發言을 상기시키코자 합니다. 聯邦政府는—貴下는 거듭 이렇게 강조했습니다—自己側 以外에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는 越權을 要求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貴下는 獨逸聯邦共和國의 無差別한 同等關係를 보증한다고 宣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行爲들은 이러한 貴下의 表明들과는 矛盾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依據한 聯邦首相인 貴下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路線을 決定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고 內閣의 이름으로 本人은 貴下에게 「에어플트」에서 한 貴下의 確約에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其他 法令, 判決, 獨逸聯邦共和國 國家機關의 決定 또는 行爲들이 그의 現存境界內의 獨逸聯邦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 대해서만 効力을 가지며,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게까지 國際法을 違反하여 擴大함은 無効라는 事實에 同意할 것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解明을 하는 것은 우리의 對話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意義를 가집니다.

〈出處：1970年 5月 22日字 東伯林的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 ②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의 답변

첫째로 本人은 그렇지 않아도 序頭에서 立法分野의 抵觸問題, 즉 「에어플트」에서 이미 討議된 「테마」에 관해서 우리의 立場을 밝히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5月 6日字의 書翰에서, 本人은 貴下에게 兩 獨逸國家內에는 한쪽이 다른 편에 對해 差別을 느끼게 하는 法律이 있다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는 本人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本人은 우리가 「캇셀」에서 相逢하는 경우 이러한 問題들을 解明하고 難關들을 除去하기 위해 一定한 措置를 마련할 機會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한 바 있습니다. 本人은 貴下가 오늘 아침 이 「테마」에 관해 이미 言及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른 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서 法律上 侵害하고 있다는 「테마」에 관해 本人이 貴下에게 提示한 우리의 立場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會談이 進行되면 이에 관해 다시 討議할 수 있도록 여기 이 論文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다 狹義의 問題로서 貴下의 이 곳 「캇셀」訪問과 滯留의 條件에 관해 言及하고자 합니다. 5月 6日字의 書翰—貴下는 잘 記憶하실 것입니다—에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本人은 貴下와 貴 政府의 代表, 隨行員들이 豫定된 「캇셀」訪問時에 우리가 「에어플트」를 訪問했을 때 받은 것과 同一한 權利와 同一한 待遇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貴下에서 確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明白한 바와 같이 이것은 언제나 兩獨國家의 與件의 差異를 前提로 하는 것이며 우리의 경우처럼 公開할 수 있는 分野 또는 行爲를 통해서 確認시킬 수 있는 分野를 前提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事實上 주어진 與件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손님으로서, 本人이 이미 5月 6日字의 書翰에서 밝힌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內



에서 保護와 禮遇를 받는 立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이미 言及한 대로 立法問題에 관해서 貴下에게 이 두개의 文書를 傳해 드리는 바입니다. <出處: 1970年 3月 23日字의 公報 71號>

### ③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오전)

內閣首相,

紳士 여러분!

本人은 尊敬하는 首相과 그 隨行員들이 이곳 「캄셀」에 와서 우리와 第2次會合을 갖게 된 자리에서 人事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人은 原則的인 問題와 實際的인 問題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見解差에도 不拘하고 本會談이 成功할 것을 希望하는 바입니다.

「에어폴트」에서의 우리의 會合이 당시 貴下의 첫 演說에서 表明되었던 바와 같이 政治的 重要性을 지닌 하나의 事件이었다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國民은 獨逸內의 또는 獨逸問題와 함께 提起되는 모든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注意를 기울이고 있는 다른나라 國民들과 같이, 우리에게 큰 關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相當한 義務와 責任을 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義務와 責任을 다하기 위해서는, 本人이 「에어폴트」에서 宣言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獨逸의 平和와 獨逸國民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領域을 追求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폴트」에서의 우리의 會談이 끝난 후 遞信分野에서 部分的이지만 成功的인 協定이 이루어진 것을 本人은 고무적인 徵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提起되어 있는 課業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可能性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물론 하나의 사소한 始作에 不過한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우리의 關係를 規制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에어폴트」會談以後 多樣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움지 못한 批判과 責任追窮을 提起함으로써 더 險難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란히 서 있다는 事實은—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兩者는 함께 공헌해 왔습니다. —兩側에 緊張을 緩和하려는 意志가 있다는 것을 充分히 證明하고 있습니다.

서로 抗議하는 聲明들 때문에 우리의 會談이 負擔을 받게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우리 政府가 거의 매일 當面하고 있는 不信과 비난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信念이 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本人은 貴下에게 確言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有利的한 輿論造成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네바」世界保健機構會議에서 보여준 우리 聯邦政府의 立場에 대한 批判도 같은 結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가 兩獨關係의 發展如何에 달려 있다는 것을 公言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食言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엔」歐洲經濟委員會의 事業에 共同으로 參與하려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提議가 그 機構에서 差別을 받고 있다는 貴下의 陳述을 本人으로서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그로 인

해서 同 機構의 活動에 參加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코 獨逸聯邦共和國의 責任이 아닙니다.

우리의 態度는 後見이나 越權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態度는 獨逸의 兩國家關係를 段階的으로 改善시키려는 努力의 表現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어폴트」에서 全權代表를 任命하여 첫 번째의 協定을 締結하는 問題에 合意하였더라면 그것은 매우 合理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妥協하기 위한 時間은 아직도 있습니다.

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우리 두 國家間的 同等權에 基礎한 條約上의 規制에 關係해서 協商할 것을 거듭 提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그러한 規制를 통해서 相互間的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決意를 本人은 이 곳에서 最大限 강조하고자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계속 差別에 關係해서 여러가지 言及할 경우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措置로 인해서 여러 分野—例를 들면 交易分野에서—獨逸民主共和國側이 이미 取했고, 또 取하고 있는 여러 利得에 대해 言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獨逸民主共和國政府가 聯邦政府의 東歐諸國과의 關係改善 努力을 妨害하는데 대해 言及해야 하겠습니까.

本人이 이미 「에어폴트」에서 強調했듯이 兩獨逸國家의 憲法은 民族의 單一性에 立脚하고 있습니다. 兩國 憲法은 모두 分斷을 永久化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우리가 이러한 憲法의 原則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關係를 뜻있게 規制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故로 本人은 우리의 根本問題에 대해서 言及합니다.

本人은 第2의 措置를 第1의 措置보다 먼저 取할수 없다고 主張하거나, 第1의 措置를 取하기도 전에 第2나 第3의 措置가 무엇이나고 論爭하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에게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 그때 可能한 緊急한 措置를 取하는 問題입니다. 오직 事態如何에 따라—그것은 이미 상당히 可能性이 많은—이러한 措置를 取해 나감으로써 兩 政府는 實際問題와 政治的 問題로 까지도 協商을 進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協商의 目的은 人間과 平和에 有益하고 동시에 民族의 將來에 有益한 方向으로 兩獨逸國家間的 關係를 條約으로 規制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聯邦政府는 이러한 準備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條約들은 물론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입각해서 締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條約上의 規制는 또한 우리의 關係發展과, 그리고 獨逸에서의 人間生活의 進歩를 意味하는 具體的 內容을 包含해야 한다는 것도 自明한 事實입니다. 條約이 形式的으로만 履行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어폴트」에서 本人은 우리가 規制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問題들에 關係해서 상세히 言及하였습니다. 그 경우 條約上의 規制들이 우리 兩獨逸國家間에 存在하고 있는 것 같은 特殊한 事情과 符合해야 하며, 法的으로 兩側이 第3國家와 締結한 모든 條約과 同一한 拘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疑問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本人은 밝힌 바 있습니다. 本人은 동시에 우리가 4大強國의 持續的 權利行使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獨逸의 分斷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지 않는다는 것을 分明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우리의 協商에서 形式的 承認만을 要求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協商으로 相互關係發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構想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批判, 責任轉嫁, 要求, 前提條件以外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提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會談의 意義, 人間의 期待와 우리

의 廣範한 課題에 올바로 對處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리라는 希望과 假定下에 本人은 오늘 貴下에게 協商開催에 關係 妥協하고 그 方法의 細部事項을 決定할 것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本人은 協定內容에 우리 國家間的 關係規制를 위한 原則을 樹立하는 條約이 包含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聯邦政府는 그와 같은 條約을 위해 一連의 原則과 內容을 提議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1969年 12月 18日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聯邦大統領에게 傳達했던 條約草案에 대해서도 立場을 밝힌 바 있습니다. 首相, 本人이 貴下에게 1970年 1月 22日字의 書翰으로 알렸던 이러한 原則中 몇 가지를 本人은 이미 「에어폴트」에서 상기 시킨 바 있습니다.

眞正한 意味의 協商을 始作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짧은 日程을 利用해야 한다고 本人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單獨으로 일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課題를 賦與하고 決斷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任務인 것입니다. 豫備協商節次를 決定하는 것은 우리가 協商의 開催에 關係 意見을 같이 할 경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效果的인 協力を 위해서는 前提條件들이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本人은 이에 「에어폴트」에서 兩側 政府廳舍가 있는 곳에 우리 兩側의 全權受任者들의 일을 可能케 할 常設機關을 設置하자고 提議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聯邦政府는 우리 兩獨國家間 條約의 主要內容에 關係 自身の 構想을 表明하였습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그 構想의 細目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 聯邦政府는 우리들 相互間的 條約上의 規制가 兩獨國家間的 條約上 및 其他 關係의 內容과 密接한 相互關係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대해서도—다른 모든 差異를 감안하여 그렇게 理解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同等한 地位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原則과 條約要素에 關係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各其 그 憲法에 民族의 統一을 目標로 提示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平和와 民族의 將來, 團結에 關心을 갖고 兩獨國家間 關係를 規定하며, 獨逸民族과 兩獨逸 國家間的 結束을 增進하며 既存의 不利益을 除去함에 이바지할 條約에 合意한다.
2. 條約은 憲法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서 兩側의 立法機關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3. 兩側은 國際法의 一般原則으로서의 人權, 同等權, 平和의 共同生活 및 無差別의 原則에 立脚하여 關係를 맺겠다는 意思를 公約한다.
4. 兩側은 相互間 모든 暴力의 威脅 또는 모든 暴力行使를 禁止하고 그들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題들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이것은 領土保全과 國境의 尊重도 포함한다.
5. 兩側은 그들의 內的인 統治權에 該當하는 事項에 대해서 兩獨逸國家의 獨立성과 自主성을 尊重한다.
6. 兩獨逸國家中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代理하여 行動하거나 代表할 수 없다.
7. 條約締結 雙方은 결코 독일땅에서 戰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宣言해야 한다.
8. 兩側은 諸民族의 平和的 共同生活을 沮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止시킬 義務를 진다.
9. 兩側은 歐洲安保強化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한다는 自身の 意思를 確認한다.

10. 本條約은 獨逸國民이 두 國家內에서 生活하고 있으나 한 民族이라는 것을 理解하고 獨逸 및 獨逸人의 特殊狀況과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부터 出發해야 한다.
11. 伯林과 全體獨逸에 관한 強大國의 特殊한 權利와 合意에 立脚해서 佛蘭西, 英國, 美國, 소聯의 모든 義務들은 本條約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12. 伯林과 獨逸에 관한 4大國 合意는 尊重된다. 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存在하는 結束關係에 대해서도 同一하다.  
 兩側은 伯林內部와 伯林問題의 地位를 正常化하기 위한 4大國의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진다.
13. 兩側은 兩 獨逸國家의 立法活動中 어느 부문에 相互矛盾이 있는지 檢討할 것이며, 兩側은 兩 獨逸國家市民의 不利益을 解消하기 위해 相互矛盾을 除去하는데 協力한다. 이 때 兩側은 兩側의 統治權은 各自의 領土에 限定된다는 原則에서 出發하여야 한다.
14. 이 條約은 相互間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키고 通行自由를 實現하기 위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15. 家族의 離散으로 생긴 問題들은 解決되어야 한다.
16. 共同境界地域의 郡과 面들은 現地의 問題를 가능한 한 善隣關係로 解決하도록 해야 한다.
17. 兩側은 특히 交通, 郵便, 電信交流, 科學, 教育, 文化, 環境問題, 그리고 「스포츠」分野에 걸쳐 相互間의 利益을 目標로 協力을 強化하고 擴大함은 물론 細目에 관한 協商을 開始한다는 立場을 確認해야 한다.
18. 兩獨間의 交易을 위해 앞으로도 既存의 協定, 委任事項과 合意는 계속 効力을 갖는다.  
 交易關係는 계속 擴大되어야 한다.
19. 兩政府는 長官級의 全權代表를 任命하고 全權代表의 常駐를 위한 事務所를 設置한다. 全權代表와 그의 受任課業은 상세히 規定되며, 그들에게는 各其 政府廳舍의 所在地에서 業務遂行이 可能토록 하며 그에 必要한 便宜와 特權이 保障된다.
20. 獨逸邦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간에 合意할 수 있는 條約을 土臺로 하여 國際機構加入과 協力을 規制함에 必要한 措置를 강구한다.

首相! 이것들이 本人이 文書上으로 傳達하는 原則과 內容의 全部입니다. 이러한 提議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과 이미 提起된 또는 앞으로 提起될 其他의 宣言, 努力과 함께 우리의 意見交換의 對象들입니다. 이 경우 어떤 問題들이 實際적으로 着手되어 解決될 수 있으며, 어떤 問題들이 兩國家間關係의 原則적인 規制와 관련되어 取扱될 수 있는지 檢討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協商이 進行됨에 따라서 더 具體적인 提議를 할 것입니다.

「에어플트」에서 本人은 伯林에 관한 見解도 仔細히 表明했습니다. 本人은 그에 관해 지금은 다음의 事項만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즉, 邦聯政府는 시작된 4大國의 對話를 환영합니다. 聯邦政府는 伯林問題의 正常化를 위한 努力의 進展이 우리 兩 政府間의 協商을 持續하는데도 重要性을 지닐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本人은 지금 以上の 事項에 관해서만 強調하고자 합니다. 首相! 本人은 우선 實下가 實側의 聲明을 發表할 意思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관심을 갖는 바입니다. 그 後에 우리는 오늘 다음 日程을 協議해야 할 것입니다.

〈出處: 1970年 5月 22日字 公報 70號〉

#### ④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문(오전)

尊敬하는 聯邦首相!

먼저 核心問題부터 言及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고 同時에 歐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해 뜻깊은 공헌을 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모든 일을 하고자 聯邦共和國에 왔습니다.

聯邦首相, 今年 3월에 貴下와 相逢한 후 獨逸民主共和國의 立場이 새롭게 그리고 持續적으로 支持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分明히 우리는 우리 兩 國家間的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어떤 副次的인 것들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解決을 위해 國際法的 留保없는 適用이 要求되는 歐洲平和가 核心的인 問題임을 누구나 理解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國家들이 獨逸民主共和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할슈타인」原則의 옹호자들이 그들의 공갈 협박적인 政策을 계속 成功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不可能해지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도 正當한 根據를 들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을 主張하는 者의 數가 增加하고 있습니다. 결국 獨逸民主共和國을 差別하는 政策을 終結시키고 참다운 同等資格의 關係를 樹立하라는 要求가 점점 提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聯邦首相, 貴下 自身은 그와 같은 理性的이고 現實主義的인 見解들이 獨逸聯邦共和國 住民大多數, 특히 젊은 世代에서 公式的으로 發表된 政治的 表明보다 더 廣範圍하게 普及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지난 數週동안에 우리의 具體的이고도 建設的인 提議들을 根本的으로 熟考하여 이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意思가 있는지에 대해 明白한 對答을 얻으려는 期待를 가지고 「캄셀」에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1969年 12月 17日以來 이미 「본」에서 條約草案을 提示한 바 있고 우리 側에서 討議와 論證을 한 바 있으므로 이제 時期가 成熟하여 行動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이름으로 本人은 우리가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을 즉각 準備하여 署名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國家間的 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的 平和共存關係를 우리 兩國家는 成就할 수 있습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하여 條約上 規制된 同等한 平和共存關係가 主權國家들간에 通用되고 있고 그것이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 不可缺한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도 이러한 關係를 樹立해야 하며 이를 위한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가 있고, 우리 代表團이 이 人民會議의 明白하고 適法한 委任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것은 今年 3月 21日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該當決議에서 表明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對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態度에서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側이 獨逸民主共和國이 提示한 關係正常化, 緊張緩和와 平和에 對한 宣言들을 眞正하게 熟考하는가의 與否를 評價할 수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미 數個月前에 提示된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對해 公式的으로 回答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國家間의 國際法的 關係에 對한 貴政府의 否定的 態度가—또한 條約의 原則에 對한 否定的 態度도—變함없이 繼續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貴下가 처음부터 同 條約締結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貴側에서 條約問題를 말한다면 고양이 爪가 뜨거운 죽을 먹을 듯이 맴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大衆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歐洲大陸 心臟部의 어떤 國家가 이웃 國家를 國際的으로 承認하지 않고, 그의 主權的 平等을 무시하고 또한 그 國家가 國境을 問題視하고 領土의 現狀을 修正하러 한다면 그것은 歐洲平和의 基本的인 利害와 矛盾됩니다. 軍事的인 集團들간의 境界線問題 때문에 戰爭과 平和라는 이 基本問題들을 保留하는 것은 끊임없이 眞正한 紛爭狀況의 危險을 惹起시켜 緊張을 緩和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緊張을 激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을 國際法的으로 認定하고 歐洲에 있어서의 領土의 現狀을 國際法的으로 認定하는 것은—本人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法律問題 또는 獨逸民主共和國이나 어느 다른 國家의 特權問題일뿐만 아니라 歐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한 基本的인 要請인 것입니다.

社會主義國家의 政府로서 우리의 行爲는 人間의 利害에 의해 主導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平和保障을 追求합니다. 萬一 우리 國家間의 平和的 正常關係樹立을 위한 原則的 前提條件을 未解決로 남겨둔 채, 懸案問題들 여러 사소한 措置로 解決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人間의 感情的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과거 20年間 以上—單獨貨幣改革과 分斷, 對獨逸民主共和國 長期冷戰에 이르기까지—많은 사람들이 聯邦共和國政策에 의해 加重的인 苦痛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人間性和 가장 矛盾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事態를 改善시키지 않고 도리어 尖銳化시켜 人間에게 그릇된 希望을 주거나 人道的이라는 말을 남용해야 되겠습니까?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우리가 이러한 點에서—특히 1961年 8月 13日에 이르기까지—쓰라린 經驗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지난번 會談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反復되지 않을 것입니다.

不安하고 緊張으로 가득 찬 世界에서, 政治家에게 맡겨진 가장 人間的인 使命은 平和의 確保임을 明白히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人道的 問題는 重大한 政治的 決斷을 要求합니다.

人道的 問題는 바로 歐洲의 複雜한 狀況에도 不拘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있어 國際法을 엄격히 遵守할 것을 要求합니다. 本人은 여기에서 歐洲人들이 國際法을 無視하고 결국엔 이것을 破棄했던 代價로 數百萬의 사람들의 人命과 財產을 支拂했었던 여러가지 歷史的 事實을 例로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人間이나 人間生活의 便宜에 對해 言及할 때—分明히 밝히고 싶은 것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파리」條約과 社會主義的 社會秩序에 對한 反革命的인 「灰色的 計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하여 敵對的인 目的을 追求하는 限, 『人間生活의 便宜』라는 말은 우리側에서는 獨特한 意味로 理解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他 主權國家와의 關係

에 있어서 國際法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연히 國際法와 人間的 基本的 要求에 逆行하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國境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拒否한다는 것은 부득이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과 그 國家秩序와 社會秩序에 대한 侵略的인 行爲를 하면서도 이것으로써 國際法上 侵略者의 責任을 지지 않겠다는 態度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의 그와 같은 計劃들이 沙上樓閣이라는 것을 分明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과 社會主義的 人民主權은 不可侵이라는 것을 貴下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獨逸 帝國主義의 모험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歐洲平和와 安定을 점차 위협한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의 自由로운 自決을 通해서 「나치즘」, 軍國主義 및 帝國主義를 根絶하고 「포츠담」協定の 基本要求를 實現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認識해야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歷史의 敎訓을 터득하고 不幸한 過去로부터 解放되어 社會主義의 길을 밝게 되었습니다. 聯邦共和國에서 이러한 社會的, 政治的 現實을 修正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者는 그러한 希望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아테나워」時代에 成功하지 못한 것은 오늘날 또는 앞으로도 成就되지 못할 것입니다. 變化에 대해서 말한다면 復仇主義的 目的을 가지고 歐洲平和를 威脅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이 變化되어야 합니다. 「포츠담」協定이 履行되지 않고 있는 곳, 罪를 지은 過去의 勢力들이 再活하고 있는 곳에서는 무엇인가 變化되어야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基本的이며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保有하고 있음은 물론 自身의 社會主義的 獨逸國家의 完全한 同等資格, 國際法的 主體로서의 無條件的 承認이라는 倫理的인 要求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平和가 保障된 未來를 指向하는 우리 人民의 生存利益에 따라 행동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우리 兩獨間의 關係에 있어 國際法的 留保없는 適用을 위해 努力한다면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의 社會主義的인 建設事業을 平和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實現시키려는 獨逸民主共和國 모든 人民의 安保利益, 그들의 利害關係와 符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利害關係는 獨逸民主共和國과 밀접히 結束되어 있는 他社會主義國家들의 利害와 一致하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第2次世界大戰이 끝난 지 2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現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히틀러파시즘」의 敗北 結果를 分明히 認定하고, 歷史의 敎訓을 거울삼아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修正하려는 基民黨/基社黨의 復仇主義的 政策의 殘滓를 拋棄할 意圖를 表明하지 않고 있습니다.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 歐洲에서 成立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는 물론 「오데르—나이세」境界를 포함하여—國境線들을 궁극적으로, 留保없이 承認해야 한다는 無條件的인 必要性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의해 여전히 否定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제까지 「핀헨」協定을 처음부터 無効라고 宣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聯邦議會, 社會民主黨의 黨大會 및 他機會에 行한 貴下의 演說에 상당히 注意를 集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現實的인 變化를 위한 徵表, 純粹한 根本的인 革新, 不幸한 過去의 궁극적인 克服을 目標로 하는 內容은 전혀 없습니다. 貴 政府가 最近 數週, 그리고 數個月 동안에 내린 決斷들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그 政策樹立에 있어서 이러한 事實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밖에도 基民黨의 政治人들이 말했던 『占領地帶의 解放』(Befreiung der Zone)이라는

「슬로건」을 아직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이 20年間 對獨逸民主共和國 敵對政治를 한 후, 단지 理解와 同等資格이라는 말을 하고 平和的 意圖를 宣誓함으로써만 正常的인 關係를 樹立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貴政府의 他 權威있는 代表者들과 같이 最近 여러 機會에 獨逸聯邦共和國의 낮은 基本立場들을 固守한다고 公式的으로 公表하였습니다. 더구나 最近에는 境界線을 變更시킬 方法에 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同時에 「分界線」이라는 概念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間의 궁극적인 國境의 存在를 否定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은 問題視되지 않는다고 累次 宣言되었습니다.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家性까지도 「아테나워」時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獨逸聯邦共和國의 公式的 代表들에 의해 이미 再論難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大西洋同盟에 대한 西獨의 忠誠과 現在 世界的으로 非難과 反對를 받고 있는 美國의 政策과의 連帶性에 基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西伯林에 관해 한마디 言及해야 하겠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強硬한 語調로 지난 數週동안에 西伯林에 關한 違法的인 要求를 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內에, 그리고 그의 領土위에 位置한 西伯林이라는 獨自的인 政治的 單位體가 결코 앞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의 構成要素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構成要素일 수도 없었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알려진 事實입니다.

西方3大強國 政府도 역시 西伯林이 聯邦共和國의 한 州가 아니며 聯邦政府에 의해 統治될 수도 없다는 것을 反復해서 確認하였습니다. 聯邦首相, 貴政府가 西伯林을 條件으로 또는 西伯林에 關해서 去來를 始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即 聯邦政府가 西伯林에 대해서 그리고 西伯林을 위해서 여하한 權利나 管轄權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西伯林을 代表하여 어떠한 行動도 할 수 없고 協商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外相이 최근의 公式的인 宣言에서 西伯林問題와 그의 通行路問題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上의 規制問題와 연결시키고자 試圖했다면 그것은 西伯林問題의 規制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이 相互 無關하기 때문에 단연 거부되어야 합니다. 西伯林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越權들은 다만 不必要한 마찰과 緊張을 招來할 뿐이며, 西伯林과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西伯林 市民에게는 負擔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西伯林問題에 干涉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모든 試圖를 다시금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基民黨/基社黨 指導者들이 여전히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平和共存은 不可能하다고 宣言하는 것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基民黨/基社黨의 宣言이며, 「슈트라우스」氏와 「바르첼」氏의 宣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貴政府가 이러한 宣言들을 拒否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代身에 5月 27日 聯邦議會에서 取扱될 「基民黨의 大質疑」에 대해서 貴下의 內閣은 聯邦政府의 「이니셔티브」가 獨逸聯邦共和國의 從來의 政策目標를 전혀 修正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오직 強度만이 變化했다고 말했습니다.

聯邦軍의 武裝化도 역시 強化되었습니다. 復仇主義의 精神으로 教育받은 高度로 武裝된 軍隊가 「히틀러」의 歐洲 侵攻을 準備하고 執行한 將星과 將校들, 所謂 「獨逸의 統一政策」을 軍事的으로 解決하려는 將星과 將校의 命令下에 있습니다. 本人은 바로 이와 關連하여 다시 한번 貴政府內에서 그에 대한 管轄權을 가지고 있는 「슈미트」長官에 대해 言及해야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슈미트」氏가 힘의 政策, 즉 緊張緩和의 目的보다 힘의 政策이 우선하다고 說明하기 위해서 「아메리카」合衆國에 滯留했



다는 사실입니다. 「슈미트」氏는 「나토」同盟의 테두리 안에서 武裝化의 強化를 소위 「東方政策」의 前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盟邦들은 이러한 概念에 留意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直面하여 安保의 自衛手段을 강구한다는 것을 貴下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聯邦軍에 있어서 主要한 問題가 되고 있는것은 결국 聯邦共和國이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지 않은 우리의 境界地域에, 그의 訓練된 軍事組織이 주둔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過度한 武裝化와 國境의 不承認은 聯邦共和國이 不斷히 「1937年度 領土下의 獨逸」을 再建하려는 目標을 표방하고 있다는 事實과도 無關한 것이 아닙니다. 數日前 政府側의 資金支援을 받아 편협한 愛國主義的 目的을 표방하고 있는 復仇主義的인 結社들이 所謂 「聖靈降臨祭大會」를 召集했습니다. 貴 政府內의 研究委員會가 推進하는 「灰色的인 計劃」은—明確히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反革命的인 侵略의 개념임—變함없이 그 效力을 發揮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委員會의 活動은 公式的인 報告에 의하면 보다 擴大될 것이라고 합니다. 大資本主義的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되고 있는 「매스 미디어」는—예컨대 「슈프링거」系列(Springer-Konzern)만 보더라도—每日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社會主義秩序에 대한 敵對感을 說教하고 있습니다. 聯邦共和國에는 合法的으로 「네오나치」黨이 存在하고 있습니다. 「네오나치」主義者들의 狂亂性은 文書로 普及되도록 許容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獨逸民主共和國 市民도 상당히 분노를 느껴야 했던 것처럼—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이 殺害威脅을 받을 때 政府가 이에 一貫性 있게 對處하고, 效果的으로 處理하지 않은 事件이 바로 1970年度에 聯邦共和國에서 發生하였습니다. 그러한 威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責任은 全的으로 貴下가 져야 합니다.

聯邦首相, 그와 같은 事實에 直面하여 우리는 어느날엔가 이른바 國際的 違反이 아니며, 또 責任 必要도 없는 重大한 「國內」事項이라는 口實下에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을 侵略하는것을 막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絶對로 必要하다는 것이 全世界적으로 分明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聯邦共和國 땅위에서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이 결국 聯邦共和國 市民自身の 死活의 問題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곳에서도 사람들은 平和, 緊張緩和 및 安全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이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冷戰과 復仇政策의 負擔에서 解放된다면, 그것은 그 市民을 위해서도 크게 有益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聯邦首相, 貴下가 本人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할슈타인」原則을 유지하기 위해 使用되는 그 방대한 金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金額을 有用한 目的을 위해 使用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兩國家가 軍縮措置에 관한 合意을 한다면, 그것은 聯邦共和國 市民의 社會的 要求를 위해, 그들이 원하는 民主的 改革을 위해 상당히 有益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聯邦共和國의 市民들이 바로 이제까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復仇政策으로 苦痛을 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西獨獨占資本의 모험적이고도 不安한 政策으로 因하여 不安과 財政的인 負擔, 其他 많은 苦難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밖에, 이러한 政策은 聯邦共和國을 歐洲內의 紛爭의 火山과 平和의 妨害者로 만드는 結果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우리가 잘 理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時 間이 지나갈수록 不安한 事態로 될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先入見없이 받아들인 聯邦共和國의 모든 市民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이 바로 聯邦共和國 市民, 그 중에서도 이땅의 勞動하는 사람들에게 有益한 것이라고 確信하게 될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正常的인 國際法的 相互關係를 「獨逸內部」(innerdeutsche)라든가 「獨逸內 關係」(Zwischendeutsche Beziehungen)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拒否하였읍니다. 따라서 本人은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을—또는 어떠한 表現이 그에 代身하여 使用될 수 있든—우리의 兩國家間의 關係樹立을 위해 絶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한번 分명히 宣言하는 바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경우 그것이 서로 獨立한 두 개의 國家라는 것이 重要的 問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獨逸內部」라는 公式을 排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서로 相異하고 對立的인 社會秩序를 가진 두 國家가 存在한다는 것이 主要한 問題가 됩니다. 勞動者가 生産手段을 所有하고 있으며 모든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과 軍需資本과 金融資本이 君臨하고 大獨占企業들이 社會의 모든 富를 處分하며 政治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間에는 하등 「內部的」關係가 있을 수 없읍니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에 社會生活의 어느 分野를 보든—混合이란 不可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에 대해서 말한다면, 客觀的인 狀況으로 判斷할 때—그 때 그 때의 國內狀況은 물론 世界의 事件들에 對한 우리의 立場에 있어서도—우리는 完全히 相異한 基本的 利害關係로부터 出發한다는 事實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現實에 執着하고 있습니다. 1945年 以來, 「아메리카」合衆國 帝國主義者와 同盟한 西獨帝國主義勢力들의 過誤로 招來된 民族單一性의 破壞는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虛構的인 存續을 사칭하는 여하한 概念造作에 의해서도 原狀復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獨逸歷史를 회고해 볼 때, 그러한 것이 우리 모두가 周知하는 要因에 依해 發生한 것처럼, 그것은 民族的 感情을 非平和的 目的을 위해 濫用하려는 試圖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때 「全獨」이라는 概念때문에 얼마나 不運한 政策이 追求되어 왔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大獨逸的」이라는 概念으로 全歐洲를 戰爭으로 몰아 넣고 諸國民에게 무서운 苦痛을 招來했던 權力과 領土의 要求를 提起, 征服政策이 追求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歷史上 周知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觀念을 가지고 이러한 政策을 持續하고자 한다면 이는 아주 不幸한 일입니다.

「파리」條約 署名, 西獨住民의 廣範한 輿論에 背馳되는 同 條約의 批准,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의 NATO加入으로 分斷은 굳어졌고 또한 聯邦共和國은 自己 스스로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 外國이 되었읍니다. 聯邦共和國은 이러한 發展의 結果에 대해 責任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하나의 主權國家이고 獨逸聯邦共和國의 內國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읍니다.

이에 關連하여, 本人은 聯邦首相 貴下에게 「파리」條約中 소위 「獨逸條約」第7條에 대한 貴下의 立場을 명백히 說明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第7條는 우리가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關係가 問題되는 경우 省略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獨逸條約」第7條에는 獨逸民主共和國을 聯邦共和國의 社會秩序와 國家秩序에 合併하고 獨逸民主共和國을 帝國主義的인 「나토」條約體에 歸屬시키려는 目的이 아주 明白히 表明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聯邦首相, 貴下는 反復해서 「파리」條約은 無制限 效力을 가진다고 천명해 왔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貴下가 오늘 다른 立場을 闡明하시겠습니까?

要約해서 말하자면 : 「獨逸內部 關係」라는 公式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아테나워」와 「넬레스」以後 實用化된, 그러나 展望없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聯邦共和國의 唯一代表權이라는 越權政策의 새로운 表現方式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들에 대한 唯一代表權의 要求는—그 要求가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든—敗北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唯一代表라는 越權의 카아드를 가지려는 者는 우리가 基本問題에서 進展되는것을 妨害하는 者이며, 또한 그로부터 惹起되는 모든 結果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합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國際法과 不干涉의 原則을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適用시키지 않으려는 破壞的인 立場을 포기할 것을 要求합니다. 그와 같은 立場은 우리 對話에 있어 집이 될뿐만 아니라 그것을 궁지에 몰아 넣을 것이 확실합니다. 貴政府側의 이러한 前提條件은 우리 두 國家가 正常的인 同等關係에 이르는 길을 沮止시키고 있습니다.

貴下가 최근 「아메리카」合衆國을 訪問하였을 때 貴下는 「닉슨」 「아메리카」合衆國 大統領의 政策과 完全한 合意를 보았다고 強調하였습니다. 現在 越南, 「캄보디아」, 近東 또는 其他 다른 곳에서 이러한 政策의 標榜으로 어떤 結果가 나타나고 있는 지를 全世界가 알고 있습니다. 諸國民의 平和意志와 自由意志에 矛盾되는 이러한 侵略戰爭이 亡身당하고 있음은 모르는 자가 없으며, 또한 聯邦首相, 貴政府가 이러한 政策에 同意하고 있는 지에 關係 疑問이 提起되어 있습니다.

「닉슨」氏와 貴下間의 政治的 合意에는—貴下가 分明히 說明했던 바와 같이—歐洲의 社會主義諸國, 그 중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라는 「테마」도 包含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貴下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聯邦共和國의 政策을 美國의 世界戰略的인 外交政策과 軍事政策의 目的안에 配列시킨 것이라고 評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條約과 「特殊」한 關係와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을 手段으로 歐洲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을 「아메리카」合衆國의 世界戰略에 包含시킬 수 있으리라는 希望을 가지는 것은 狀況을 完全히 誤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聯邦共和國의 經濟的 潜在力을 利用하고 「새로운 東方政策」의 도움을 받아 社會主義諸國으로 들어가기 위한 「乘車」를 할수있다고 論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토가 결코 「獨逸內部」라는 지붕』을 타고 社會主義諸國의 共同體에 「乘車」할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이 그와 같은 侵略的인 目的을 위해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있는 者는 現實感覺이 없고 獨逸民主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始作된 歷史的인 轉換에 대한 理解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우리들의 첫 會談과 그 以後에, 貴下는 再三 同等資格과 無差別이라는 用語를 使用했습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言行이 一致하는 경우에만 그 用語들은 의의를 자집니다. 물론 우리가 貴政府의 行動을 「에어플트」와 「캄셀」會談의 數週동안만 관찰해 볼때, 言行의 一致에 關係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때 發生했던 일, 특히 國際關係分野에서 發生했던 일을 우리는 다만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不平等과 差別을 위한 鬭爭이었다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事實을 말하겠습니다. 즉 이른바 우리에게 好意를 表한다는 口實下에 「유엔」歐洲經濟委員會에서 貴政府의 代表者들은 우리가 正會員加入을 斷念하겠다고 同意할 경우에만 獨逸民主共和國이라는 名牌를 會議卓子 위에 세워 놓는 것을 「許可」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엔」歐洲經濟委員會의 正會員이며 모든 權利를 享有하고 있는 聯邦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이 그의 占領地帶(東獨)의

낮고 差別的인 地位로 因하여 이러한 國際的인 委員會의 「결 冊床」에 表決權없이 出席해야 한다는 特異한 方法으로 獨逸民主共和國에게 善心을 쓰려고 했습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에어폴트」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을 낮은 地位에 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後 겨우 四週동안에 「제네바」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者들은 정확히 그와 對立된 指示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差別이지 同等資格이 아닙니다.

다른 例를 들시다. 즉 貴政府는 體系的으로 高度로 發達한 保健制度를 保有한 獨逸民主共和國이 同等한 正會員으로 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배후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兇박하고 兇박적인 方法으로 貴政府의 代表者들은 「제네바」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世界保健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에서는 그것을 위해 聯邦政府가 提示한 「獨逸內部的」인 後見關係라는 條件에 獨逸民主共和國이 屈服하는 경우에만 獨逸聯邦共和國은 그 態度를 變更할 수 있을 것이라고 公式表明했음은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聯邦首相, 물론 貴政府가 有利하다고 생각했던 카아트는 效力이 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 聯邦政府의 行動方式에 관한 國際的인 反應은 分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貴下에게 우리 人民, 특히 醫師들과 醫學者들이 이러한 反人道的인 行動方式에 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이러한 行動方式이 差別이지, 同等資格이 아니라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습니다.

貴政府의 外相은 최근에 「아프리카」諸國의 大使들과의 特殊한 會議에서 第3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지 말도록하는 越權的인 要求를 反復했는데, 그것은 貴政府 外相의 「業務指示」——貴政府가 發足한 후 곧 示達했음——가 비록 修正되었지만, 完全히 效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示唆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貴下가 지난번 우리의 對話時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對外的으로 오직 各其 自身만을 代表하며, 어느 側도 他側을 代表할 수 없다고 말하였었습니다. 言行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극히 矛盾的입니다. 同等資格에 관한 말은 差別的 行動에 의해 止揚되고 있습니다.

더 以上 實例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貴下가 主導하는 聯邦政府가 同等資格을 眞正으로 어떻게 理解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如前히 重要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습니다. 聯邦政府가 主權的 獨逸民主共和國의 同等權利를 거부하고 또 聯邦政府가 앞으로도 自己 自身만을 國際法의 主體로서 간주하는 것이 과연 同等資格의 原則을 옳게 理解하는 것입니까? 聯邦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同等한 基本權利에 관해 論爭을 誘發하면서 聯邦政府가 그의 國際的 關係樹立에서 國際法의 原則과 一致하는 主權國의 모든 權利를 要求한다는 것이 과연 同等資格의 原則을 옳게 理解하고 있는 것입니까? 聯邦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에 干涉하고 또한——어떤 用語를 쓰든——唯一代表라는 越權에 執着하고 있는 것이 同等資格의 原則을 옳게 理解하는 것입니까? 聯邦首相, 貴下는 萬一 우리가 唯一代表權을 完全히 拋棄하라고 要求한다면 그것은 無用한 일일 것이라고 말하였었습니다. 事實을 고찰할 때, 이러한 말들이 차지하는 比重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언필칭 同等資格에 대해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差別에 執着한다면 여하한 合意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합니다.

貴下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對外關係에 대한 聯邦政府의 態度는 全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의 對聯邦

共和國의 態度에 달렸다고 數次言及하였는데 이 말은 곧 獨逸民主共和國이 獨逸內部的 特殊關係에 屈服하라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습니다. 聯邦首相, 獨逸民主共和國이 이미 그러한 越權的인 要求에 복종할 것이라는 希望은 완전히 沙上樓閣이라는 것은 論議할 必要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類의 前提條件은 絶대로 受諾할 수 없습니다.

國際法에 따른다면 同等資格을 어떤 意味로 理解해야 합니까? 유엔憲章 第2條에 規定되어 있는 主權平等의 原則은 모든 國家가 따라야 할 모든 原則들 중 첫째 原則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國家들의 主權平等의 原則은 특히 다음과 같은 規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國家들은 法律上 同等하다.

—모든 國家는 完全主權에 內在하고 있는 權利를 享有한다.

—모든 國家는 他國의 主權을 尊重할 義務를 진다.

—한 나라의 領土的 保全과 政治的 獨立은 不可侵한 것이다.

—모든 國家는 自由로이 自身の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및 文化的인 體制를 選擇하고 發展시킬 權利를 가진다.

—모든 國家는 自身の 國際的인 義務를 엄격히 그리고 信義와 믿음에 따라서 履行하고 또한 他國과 平和로이 生活할 義務를 진다.

「유엔」에 의해 확인된 國家의 同等主權에 관한 이 모든 事項들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도 완전히 適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同等資格은 獨逸聯邦共和國이 國際關係에 있어 自身을 위해 要求하는 것을 獨逸民主共和國도 國際法에 一致해서 要求할 수 있고 또한 要求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이 機會에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對外經濟關係에 관해 한마디 言及하고자 합니다. 最近에 獨逸聯邦共和國과 其他 機關의 代表者들은 노골적인 方法으로 이른바 獨逸聯邦共和國과의 相互貿易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利得을 取하고 있다는 主張을 펴뜨리고 있는데 실상 이러한 歪曲된 報道的 目的은 무엇입니까? 本人은 이곳에서 細目을 取扱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原則的인 宣言만을 하고자 합니다. 즉 許可節次, 割當總額, 價格制限等을 통한 通商規制의 全體系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수많은 特殊規制를 創案한 것은 바로 獨逸聯邦共和國側입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貿易을 分析할 경우——그런데 우리는 分析을 하였읍니다. —바로 獨逸聯邦共和國이 刮目할 만한 利得을 얻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거기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의 第3國과의 經濟關係에 獨逸聯邦共和國이 干涉함으로써 獨逸民主共和國이 입은 損害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現實的인 事實입니다.

聯邦首相, 貴下가 도대체 貴下의 政策이 무엇을 指向하며, 貴下는 어떠한 戰略的인 目的을 追求하는가 라는 本人의 質問에 對答을 하지 않음으로 本人은 이러한 原則的인 質問을 反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貴下로부터 直接 적절한 對答을 듣고자 합니다. 本人의 質問을 부연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貴下는 歐洲平和의 利益을 위해서 우리 大陸의 모든 國家가 同等資格으로 參加하는 歐洲安保會議의 準備를 能動的으로 支持할 생각이 있는가?

—貴下는 歐洲의 現狀, 歐洲의 現國境線을 留保없이 궁극적으로 承認할 생각이 있으며, 不干涉

의 原則에 따라 貴下의 外交政策目的을 追求할 것인가?

— 貴下는 分明히 侵略的인 目的으로 設定해 놓고 있는 모든 形態의 唯一代表權要求를 聯邦政府의 政治手段으로 使用하지 않고, 그 代身에 同等資格의 原則으로 代置하여 이 原則에 따라 行動할 생각이 있는가?

— 貴下는 歐洲의 平和와 安全을 軍縮協定을 통해 促進시킬 생각이 있는가?

— 貴下는 무엇보다도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생각이 있는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法の의 適用을 「拒否」하고 또 이미 1969年 12月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했던 條約에 대하여 「拒否」하는 것은 바로 緊張緩和와 歐洲安保의 建設的인 措置,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正常化와 平和스러운 未來의 確保에 관한 人間 本來의 關心에 反對하는 것임을 本人은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여전히 建設的인 立場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提議들은 제시되어 있고— 本人은 人民會議의 委任에 立脚하여,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이름으로 宣稱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곧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처음에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는 條約草案에 관해 協商을 始作할 것에 合意했습니다.

現 事情으로는 政府首腦들간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에 관한 原則的인 合意를 보기도 前에 當場 副次的인 問題나 3次的인 問題들을 協議하기 위해 어떤 委員會나 代表者를 任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것이며 또한 問題의 核心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兩獨間의 正常的인 關係를 위해 確固한 土臺를 마련할 眞正한 解決을 원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을 主權的인 國家間의 同等關係를 위한 基本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 첫 날부터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의 精神속에서 그 政策을 樹立했습니다. 이미 오래 前부터 獨逸民主共和國이 「유엔」加入申請을 내고 있는 것은 그와 符合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平和와 諸民族의 理解를 위해 創立된 「유엔」의 原則과 目的에 따라 會員國으로 活動하기 위해 「유엔」에 加入하는 것이 時期에 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그 경우 獨逸聯邦共和國側에서 어떠한 留保나 附帶條件을 부과할 수 없는 主權國家로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完全히 同等한 會員資格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임은 分明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유엔」機構의 會員國이 되어도 좋은가에 관하여 評價하려고 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越權的인 態度는 「유엔」憲章과 矛盾되고 世界機構인 「유엔」의 普遍性의 原則과도 矛盾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見解에 의하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加入은 議事日程에 올라 있습니다. 聯邦首相, 貴下가 貴政府에게 그와 符合하는 準備를 하도록 오늘 이 곳에서 指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歐洲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모든 必要한 것을 다 하겠다는 확고한 決斷을 確認하고 있습니다. 聯邦政府의 變함없는 拒否로 지금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이 不可能하게 된다면 獨逸民主共和國으로서 이 것을 가장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歐洲의 人民들도 이에 대해 理解할 수 없을 것입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당신들에

게 우리 時代의 必要性을 고려하고 歐洲中心部의 平和를 위한 확고한 擔保를 마련하는데 協力할 것을 呼訴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貴下가 끝까지 留意하여 들어 주신데 대해 感謝드립니다.

〈出處：1970年 5月 22日字「노이에스 도이취란트」〉

### ⑤ 『빌리·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오후)

首相! 紳士 여러분!

本人이 本論自體에 대해 言及하기 前에 오늘 發生한 事件과 성가신 일들에 關해 여러가지로 尤감의 뜻을 表明하고 싶습니다. 특히 尤감스러운 것은 오늘 午後에 우리가 매우 尊敬하는 손님에게 花環奉呈을 許容하지 않을 정도로 身邊保護措置를 取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首相, 貴下는 오늘 午前에 殺害使噤에 대해 非難하였습니다. 聯邦共和國의 法務相은 本人이 指示한대로 發表했고, 그의 觀點에서 다시 한번 一部の 示威的인 意思表明을 聯邦政府의 責任으로 돌린다는 것이 그 얼마나 不當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示唆했습니다. 法務相은 우리 刑法의 濫用을 統制하기 위해 그의 管轄權과 그의 力量에 屬한 모든 措置를 취했다고 本人에게 確認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點에서 法務相은 모든 州의 法務相의 充分한 支持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詳細히 밝혔고 또한 本人은 우리의 會議와 關連하여 貴下에게 무엇이 重要的인 問題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首相, 本人은 貴下가 오늘 午前에 (本人이 이제 對答하려고 하는 바) 貴下의 陳述에서 語調와 形式에 있어 그토록 強力한 抗議, 個人的인 非難 그리고 責任追窮으로 一貫된 發言을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된 것을 尤감스럽게 생각합니다.

本人은 本人自身이 받은 攻擊에 關해 지금 言及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聯邦共和國의 다른 人士에 대한 攻擊을 反駁해야 겠습니다. 그것은 「바르첼」과 「슈트라우스」와 같은 聯邦議會議員에 대해서는 물론 「셸」과 「슈미트」氏와 같은 內閣閣僚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의 陳述을 對照해 본 결과 相互矛盾과 對立點들을 發見했을 뿐만 아니라 一連의 實質的인 共通點들도 發見했습니다. 貴下는 지난 해의 12月 17日字 貴下의 條約草案에 대해 우리가 具體的으로 充分히 回答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非難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閣首相은 5月 7日 聯邦政府가 아직까지 그에 대하여 하등의 實質的인 對案을 提議하지 않았다고 宣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重要的인 點은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反對하는 主張을 羅列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兩側이 關係正常化와 規制를 위해 提議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며 또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原則的으로 協商만을 持續할 생각을 했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오늘 兩側이 提示한 文書를 基반으로 하여 協商할 것에 合意하고 同等關係를 規制하며 동시에 兩側의 利益에 따라 벌써부터 規制될 수 있었던 問題에 관해서 合意하기에 알맞는 時期라고 하는 本人의 생각을 言及했습니다.

그와 같은 協商을 始作하는 것이 아직도 不可能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一定 期間동안 意見交換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그 동안 實際적으로 緊張의 解消와 우리가 追求하는 正常化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와 그와 관련된 兩獨國家의 發展의 結果로써 이루어진 獨逸과 獨逸人의 現狀況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原則에 立脚해서 獨逸의 兩國家는 그들의 相互關係를 條約上 規制하는 問題에 合意해야 합니다. 兩獨國家間에 一定한 實質問題領域에서 特別한 條約上의 規制가 必要하지 않는 限, 一般적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特히 主權平等의 原則, 同等資格의 原則, 領土保全의 原則, 不干涉의 原則이 適用됩니다. 우리가 主權平等, 同等資格 등등을 말하는 경우, 이것은 「유엔」憲章 第11條에 規定되어 있는 原則에 對立하지 않음은 自明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條約草案의 核心은—그리고 首相, 貴下는 오늘 午前에 다시 한번 그것을 자세히 說明했음—國際法의 承認問題입니다. 그러나 이 條約草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過去 貴側의 수많은 다른 示唆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비록 한 民族이 두 개의 國家內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獨逸內에 形成된 獨逸民族의 關係와 將來를 고려해야 한다는데 대한 根據를 提供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基本觀點은 條約上의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基本觀點은 條約上의 規制를 위해 우리가 提示한 內容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貴下의 條約草案과 우리의 그것을 對照하여 協商時 一定한 경우 우리 國家相互間의 關係를 위해 國際法의 原則의 適用을 規定上 表現할 수 있는 現實에 符合되는 合意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本人은 앞으로도 貴下가 言及한 民族이라는 概念에 同意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서로를 說得시킬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다시 한번 간결히 이에 대한 本人의 見解를 要約하겠습니다.

우리는 民族이라는 概念이 단지 過去만을 包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民族이란 共通的인 言語와 文化 以上の 것을, 國家秩序와 社會秩序 以上の 것을 包括합니다. 民族이란 사람들의 共同體所屬感에 立脚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뜻에 民族의 單一性이 있습니다. 民族의 單一性은 貴下나 우리들에 의해서 廢棄될 수 없습니다.

貴下가 한편으로는 「나토」同盟에 다른 한편으로는 「바르 샤바」同盟에 兩獨國家가 統合되었다는 것을 決定的인 特徵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의해서 國家의 領域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理解하는 바에 의하면 民族의 要件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한편 兩分된 民族의 實際生活이 國家의 및 社會政策의 發達에 의해 많은 領域에서 矛盾되고 相異



하게 變化되고 있다는 事實을 論爭할 者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獨逸人들은 오늘날에도 共通의 言語, 共通된 歷史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持續的인 共同體 意識뿐만 아니라, 第2次 世界大戰과 그 結果에 의한 分斷이라는 共同運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本人이 希望하는 바와 같이—本人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時代로 인해 더욱 이를 바람—平和의 確保 및 維持에 對한 責任과 特殊한 發展意識, 그리고 諸民族들의 自決權侵害에 대한 民族保護意識으로 우리는 결속되어 있습니다.

兩政府는 「에어폴트」에서 이러한 責任意識을 가지고 獨逸땅위에서 결코 戰爭이 再發해서는 안된다는 決意에 合意했습니다. 그것은 不斷히 解決해야 할 많은 다른 問題의 한 局面에 不過합니다.

本人의 생각과 같이 한 獨逸國家의 法律과 其他法規가 理論上 他獨逸國家와 그 곳에서 生活하는 사람들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번과 오늘 午前 貴下의 첫 發言에서 批判되었습니다. 兩獨逸國家中 한 國家의 統治權限을 他國家의 市民에게 延長하고자 試圖하고 있다는 점도 言及되었습니다.

聯邦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人은 그와 같은 意圖가 없다고 宣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提起된 非難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領域에서의 歷史的 發展은 물론이고 聯邦共和國의 善意에 대하여 正當性을 부여할 수 없도록 聯邦共和國의 立法을 歪曲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差別할 意圖는 없습니다. 실상, 一連의 우리의 立法은 獨逸民主共和國 住民에게 有害한 것이 아닙니다. 本人은 다만 兩獨交易에서 關稅를 免除시켜 놓고 있는 1961年 7月의 關稅法을 例示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立法上의 抵觸이라는 모든 「콤플렉스」와 相互間의 差別에 대하여 協商하고 그것을 解消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貴下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差別問題의 非難과 관련하여, 그리고 同時에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전혀 不當한 復仇主義 非難과 관련해서 所謂 研究委員會에 관한 言及을 했습니다.

물론 獨逸의 國家的 統一이 4大強國政策의 한 要素였던 時期에 무엇보다도 全獨의 經濟的 關係를 規制할 可能한 모델들을 그 研究諮問委員會에서 檢討했던 것입니다. 本人은 이것을 侵略的인 計劃이라 말하거나 또는 그것이 4大國의 政策과 矛盾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考慮되었던 모델들이 獨逸聯邦共和國의 廣範圍한 政治的인 輿論과 符合되었음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首相, 本人은 本人의 說明으로 貴下를 달리 理解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貴下가 根本적으로 誤認하고 있는 學術委員會의 活動이 全體狀況의 變化와 함께, 그리고 방금 言及된 이러한 思考모델에 의거한 우리 政策의 變化와 함께 展開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同 委員會가 오늘 알게 된 바와 같이 우리의 協力狀態를 훨씬 앞질러 간 面이 있다고 하더라도 兩獨逸國家의 學術的 體制比較를 위해 상당한 公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貴下가 언제든지 適當한 時期에 貴側의 大學과 研究所의 專門家, 또는 그 밖의 어떤 사람이든 우리 研究所의 作業을 確認하기 위해 보내겠다면 우리는 그를 招請할 것입니다.

本人은 이미 「에어폴트」에서 모든 見解差異에도 不拘하고 獨逸땅 위에서 戰爭이 再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共同의 信念임을 分明히 할 것을 強調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貴下가 部分的으로는 우리와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우리 역시 貴下와는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있지만, 貴下와 마

한가지로 平和의 確固한 保障이 必要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見解로는 決定的인 問題는 平和를 確保하기 위한 兩獨國家의 特殊한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계속 진행될 우리의 對話는 바로 이 問題를 다루며 獨逸民主共和國과 같이 聯邦共和國도 相互間에 歐洲平和體制를 構築하기 위해 能動的인 政策을 追求하겠다는 意志를 確認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우리 兩側은 「에어플트」에서 우리가 追求하는 條約속에 暴力의 威脅과 行使를 拋棄하는 規制를 다같이 수락할 것을 闡明했습니다. 首相, 貴下는 國際法的인 承認과 不干涉의 原則에 관한 우리의 見解差가 暴力拋棄問題를 沮害할 수 있다고 異議를 提起했으나 本人은 그것을 納得할 수 없습니다. 暴力拋棄는 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基本前提이며 만일 條約을 締結하는 國家間的 政治的, 社會的 相異性이 問題視된다면, 우리는 더욱 貴下의 主張을 納得하지 못합니다. 蘇聯도 聯邦共和國과의 意見交換에서 언제나 다른 要因들 보다도 暴力拋棄가 우리 兩國家間的 條約上 規定의 主要部分임에 틀림없다는 데에 最大의 價値를 두었습니다.

萬一 보다 두터운 信賴의 雰圍氣속에서 條約上의 規制를 할 수 있을 정도로 既存 見解를 克服하기 위한 持續的인 發展이 이루어지는 경우, 暴力拋棄와 모든 紛爭問題를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한다는 義務가 規制되어야 함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歐洲의 安保를 더욱 保障하는 문제에 있어 聯邦政府가 指向하는 積極的인 態度는 周知의 事實입니다. 聯邦政府는 이에 必要한 모든 努力을 支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緊張의 除去가 있습니다. 단지 外的인 緊張狀態가 他形態로 탈바꿈한다면 이는 歐洲安保에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全歐洲住民을 위해 보다 現實的이고 強力한 安全保障策을 發見하기 위해서는 緊張의 原因이 除去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對話가 進展됨으로써, 歐洲의 安保提高를 위한 모든 努力은 成功的으로 遂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한 國家의 安保때문에 他國家의 不安이 招來되어서는 아니됩니다.

首相, 이와 관련해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聯邦軍 戰車의 鐵柵속에 對獨逸民主共和國 侵略計劃이 있으며 貴側이 이러한 計劃案을 入手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閣首相은 獨逸民主共和國이 이러한 計劃을 公表할 수 있다고 發表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反對할만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屬한 同盟體의 테두리안에서의 우리의 軍事計劃은 獨逸聯邦共和國의 防衛를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지 獨逸民主共和國이나 其他 나라들에 대한 侵略目的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計劃은 없습니다.

오늘 午前 本人의 發言序頭에서 本人은 이미 領土保全과 國境을 尊重하면서 關係를 樹立하자는데 兩側의 意思를 表明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本人은 國家間的 生活에 있어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이러한 原則이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關係에도 拘束力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國家間的 境界問題 以外에 本人은 다른 國境問題에 관해 다음의 사항만을 부언하고 싶습니다. 즉 「폴란드」人民共和國과 우리의 關係는, 貴下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곳에서 討議할 必要는 없으나 우리의 協商對象이며 對話가 계속 잘 進行되어 肯定的인 結論을 얻을 것을 希望합니다.

1938년에 成立된 「윈헨」協定 問題는 그 問題自體의 성격상,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協商할 對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問題는 獨逸聯邦共和國과 그 이웃 「체코슬로바키아」間的

協商에 의해서만 兩側이 滿足할 수 있는 方法으로 規制될 수 있다고 우리는 確信하며 聯邦政府는 그것을 위한 準備가 되어 있다고 宣言했습니다.

首相, 貴下는 오늘 午前 伯林에 관해서 聯邦政府는 아무 것도 協商할 것이 없다고 상당히 強硬한 語調로 말했습니다. 聯邦政府와 獨逸聯邦共和國의 立場에서 볼때 무엇보다도 同一한 貨幣制度와 同一한 經濟體制때문에 한 局面만 例로 들더라도 실상 伯林問題와 關聯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聯邦政府의 態度는 이미 「에어폴트」에서 說明되었습니다. 現在 伯林에 대해서 特殊한 權利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4大強國은 伯林的 未解決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方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協商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이 協商이 4大強國에 의해서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면 곧 兩獨政府가 그 對策을 강구하는 것을 要求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問題를 더 깊이 討議하는 것은 時期尚早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歐洲平和秩序와 歐洲安保體制가 要求하고 있는 原則的 問題에 合意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먼 將來의 問題라고 우려할 必要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에 이르기까지 歐洲의 安保는 우리가 그것에 흥미가 있든 없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加盟하고 있는 防衛同盟體의 均衡 잡힌 關係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相互間의 關係規制는 歐洲安保에 아주 重要하며 우리가 單獨으로 歐洲平和秩序를 創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前提로 既存防衛同盟體와 우리가 그 同盟體에 參與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貴下가 4大強國의 責任을 反對하지만, 그 主張에는 한 가지 重要한 觀點이 缺加되어 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즉 伯林問題와 獨逸問題를 4大國 責任에 귀속시킨 것은 지난 25年間 不滿足스러운 結果를 招來하긴 하였으나, 적어도 그것이 平和를 維持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獨逸內의 兩國家는 各其 安保의 必要性을 인식하여, 東과 西의 戰勝國의 盟邦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歐洲의 平和를 보다 安全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 土臺, 즉 本人이 理解하는 바에 의하면 바로 4大國의 立場에서 出發할 수 있습니다.

貴下는 獨逸條約 第7條에 대해 날카로운 批判을 加했고 本人에게 質問을 던졌습니다. 貴下가 그 條文을 잘못 解析하셨습니다. 本人은 貴下가 第7條 第1項에 유의하기를 권합니다. 즉 署名國들은 그들의 共同政策의 基本目的이 持續的인 平和의 기반을 이룩하기 위해 獨逸과 그의 以前 敵對國들간 에 自由로이 合意된 對全獨 平和條約 締結에 있음을 合意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다시는 歐洲平和와 世界平和에 대해 危險한 存在가 될 수 없는 平和스러운 獨逸』이 同條文의 主要內容입니다. 그 條約의 모든 他規定들은 이 重要한 目的에 예속됩니다.

이제 第3國과 國際機構와의 關係에 대해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兩獨國家 關係에 적합한 形態를 發見했거나 發見해야 할 경우 獨逸民主共和國의 第3國과의 關係에서 發生하는 難關들도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友邦國이 이러한 努力을 沮害하는 모든 일을 中止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關係를 平和적으로 秩序지우려는 努力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貴下도 貴下의 友邦國이 貴下의 政策을 支持할 것을 期待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兩側의 努力으로 相互理解가 可能해진다 면 궁극적으로 우리 周邊國家들과의 關係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 밖에 本人은 獨逸內 兩國家가 世界平和를 維持하기 위해 努力하는 「유엔」의 事業에 重大한 意義

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이제까지 「유엔」會員國이 아님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결국 從來의 兩國家關係의 結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關係는 앞으로 條約에 의해서 새로 規制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努力이 成功한다면, 他 領域에서도 크게 成功하리라는 展望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協力을 規制하는데 必要한 對策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번째로 「유엔」歐洲經濟委員會에 關係 言及할 機會가 있었는데, 이 問題도 演說의 對象으로 되기 때문에 本人은 또 이에 關係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4月の 「유엔」歐洲經濟委員會 會議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協力問題에 關係 聯邦政府가 취했던 態度는—本人은 「제네바」에서 表明된 어떤 文章 또는 切取된 文章이나 其他의 發言에 집중하지 않고 問題의 核心에서 出發하고 있습니다.—國際적으로 兩獨의 相互理解를 위한 準備段階로서 하나의 徵表를 設定하려는 意圖에서 取해진 것입니다. 그 當時 聯邦政府는 「유엔」歐洲經濟委員會 事務局의 通告와 「제네바」에 있었던 獨逸民主共和國代表의 態度表明을 土臺로 貴政府도 地位의 問題를 떠나 實用主義的인 問題解決에 關心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誤解하였던 것이고, 결국 그 試圖는 失敗로 끝났습니다.

「유엔」歐洲經濟委員會 會議의 經驗으로부터 우리는 國際分野에 있어서는 中間解決은 거의 無用하다는 認識을 얻어냈습니다. 本人은 그러므로 우리가 第3國과의 關係 및 國際機構에 대한 우리의 關係를 合意하고 規制하기 前에, 우선 우리 兩國家間의 政治的 關係를 規制해야 한다고 結論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認識을 土臺로 世界保健機構會議에 臨하는 聯邦政府의 態度가 決定되었던 것입니다. 즉 일단 中間解決의 可能性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拒否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의 留保를 擇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 代表가 獨逸民主共和國이 取하는 通商利得에 關係한 主張을 펴뜨리고 있다는 貴下의 非難에 本人은 當황하였습니다. 여하간 그것은 聯邦政府와는 無關합니다. 聯邦政府는 貴下의 發言에도 不拘하고 그 점에 대해서 意識적으로 實質적으로 行動했었고 自制하였습니다. 聯邦政府는 「파트너」의 利益뿐 아니라 自己 自身の 利益에도 符合하도록 好意的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確信합니다. 利得이 있는가 없는가에 關係한 論爭은 이 곳에서는 不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經濟交流를 兩側에게 有利하도록 發展시켜 나가기 위한 前提條件을 追求해야 하며 그에 符合되는 合意를 맺어야 합니다. 現在의 兩獨間 交流의 基盤을 離脫하는 것은 利로울 것이 없습니다. 聯邦政府는 앞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特殊한 經濟的 關係를 促進시키고자 努力할 것이며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制는 現存協定, 委任事項 및 合意事項을 확인해야 합니다.

本人은 첫째로 聯邦政府가 條約을 위해 提議한 草案에 同等資格, 無差別, 第3國에게 侵害당하지 않는 主權的 行爲, 暴力拋棄等の 모든 確約이—條約締結國家의 政治秩序와 社會秩序까지 考慮한— 包含되어 있다는 點과 問題의 本質上 例外的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際法的 慣例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聯邦政府는 지금까지 努力해온 바와 같이 또 실제로 提議한 方案에 따라 協力問題를 條約上 規制하면서, 國際機構에의 加入 및 協力에 關係해서 協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分明히 共同利益에 符合되는 우리들 提議의 核心에—貴下는 貴下의 觀點에서 「核心」을 言及하고 있습니다.—貴下가 反對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質問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貴側은 「에어폴트」會談 以來 所謂 우리가 反革命的 意圖를 가지고—歐洲와 獨逸에서—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써 이루어진 現實狀況을 修正시키려고 努力했다는 不信을 表明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告發에 대해 本人이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貴下에게 提議한 草案文속에 明白히 表明되어 있는 聯邦政府의 立場 即 모든 暴力의 公式的인 拋棄뿐만 아니라, 平和的인 協力 意思의 公式的인 表明, 領土保全과 境界線尊重等이 貴側의 告發과는 矛盾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이것이 條約上 拘束的인 內容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第2次 世界大戰後에 成立된 獨逸과 獨逸人의 現實狀況에서 出發하여 本人은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겠습니다. 매우 尊敬하는 首相, 貴下는 우리의 狀況에서 獨逸과 伯林에 관한 現存 4大國의 合意를 尊重한다는 것을 合意하지 않은 兩獨間의 條約이 締結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또 歐洲의 同盟體들과 우리를 에워싼 同盟體 밖에 있는 國家들에 의해 그런 條約이 환영받을 수 있고, 수락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어진 狀況속에서 이루어진 合意가 佛蘭西, 英國, 美合衆國 및 蘇聯을 相對로 우리가 받아 들인 義務條項을 除外하고 또한 獨逸과 伯林과 伯林에 대한 이들 強大國들의 特殊한 權利와 義務를 바탕으로 한다는 保障條項이 除外된 條約이 무슨 價値가 있겠습니까? 兩國家는 그들의 戰後史를 政治的 社會的으로 主導하려는 政策目標의 結果로, 그리고 各其 自己安保의 利害關係를 바탕으로 各其 自己側의 立場에서 東西戰勝國들의 盟邦이 되었습니다. 萬一 우리가 歐洲平和를 보다 安全한 기반위에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原則에서 出發해야 합니다.

本人은 오직 貴下의 條約草案에 立脚하여 우리 關係를 規制할 수 있다는 貴下의 立場을 계속 固守하는 것이 無意味하다고 貴下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관해서는 우리도 貴下를 이해하고자 하며 또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關係의 諸 形態가 法的 拘束力을 지닌 文書로만 이루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首相, 本人으로서 貴下의 條約草案에서 우리의 協商對象인 兩獨國家의 市民 即 獨逸人 相互間의 利益을 위해 實際的인 協力和 關係樹立을 위한 決意를 認識할 수 있겠는가 하는 疑問이 생깁니다. 우리가—本人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獨逸인들이 이제 國家的인 分斷에도 不拘하고 共同生活에 秩序를 찾고, 이것이 歐洲平和를 보다 安全하게 할 것이라는 點을 國民들에게 認識시키지 않고서도 條約協商에 合意할 수 있겠습니까? 貴側의 條約草案에서는—실제적 概念은 여기에 의거함—그 點을 거의 認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本人을 不安하게 합니다. 具體的 內容에 關해 不分明하고 극히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 第6條의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숨어 있으며, 부분적인 領域에 대한 合意도 可能한 것인지가 疑問視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獨逸의 現實狀況과 人間을 위해 얻을 수 있는 結果는 무엇입니까?

問題는 歐洲平和의 確保를 위해 우리가 공헌하기를 度外視한다면 우리 두 國家의 市民間에 보다 강한 結束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人이 質問하고 싶은 것은: 首相, 貴下도 우리 國家間의 條約이 一般的인 目標만을 公布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간에 存在하는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해 拘束力있는 措置를 取하는 경우에만 어려운 關係狀況이 改善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오늘 午前에 要約했던 것과 같이 아직도 다른 많은 問題들, 즉 離散家族에 관계되는 問題, 共同境界線에 沿한 郡·面의 問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相互間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키는 具體的인 措置들을 우리 國家間 條約에서 規制한다면 그것이 우리사이에 存在

하는, 지울수 없는 政治的인 對立, 社會的인 對立,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對立을 侵害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首相, 貴側의 막연한 推測으로서 共同生活과 共同課業을 發展시키기 위한 具體的인 措置를 원하는 우리 國家의 市民을 失望시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責任을 질 수 있는가를 貴下는 熟考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午前에 言及한 分野에 있어서 實際的인 協力の 與件을 發展시키거나 혹은 이미 協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分野에서 이것을 強化시킬 準備가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責任을 질 準備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追求하는 條約에는 結局 個別問題의 協商에 까지 着手하고 그 協商結果를 가까운 時日內에 兩國家의 國民들에게 共同的으로 報告할 수 있도록 알찬 內容의 合意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兩國家間의 條約속에 包含시켜야 할 內容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方案을 提示한 바 있고 貴下는 또 貴下의 생각을 展開하셨습니다. 우리의 見解가 여러 面에서 不一致하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이미 意見一致를 確認할 수 있는 事項도 있습니다. 이제 兩側이 言及한 原則的인 問題를 論議해야 할 것입니다.

首相, 아마도 貴下는 本人도 그런데로 理解할 수 있는 바이지만 本人이 提議한 方案에 貴下의 公式立場을 表明할 形편은 아직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貴下는 더 檢討하고 相議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本人은 물론 萬一 貴下가 오늘 兩側이 提示한 原則的인 問題에 관해 協商을 始作하겠다는 決定을 하지 않는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準備가 되어 있으며 또한 協商의 形態에 관해서도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同時에 이러한 形態의 豫備的인 對話가 우리의 決斷을 결코 不可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見解와 判斷에는 물론 差異點이 언제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날엔가는 이루어져야 할 合意點과 決定을 위한 基礎는 그 解決可能性을 事前에 摸索하고 그와 같은 形態로 事實上의 對立點들을 解消하는 것이 建設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本人이 序頭에서 言及한 대로 오늘날의 여러가지 附隨的인 現象에서 오는 失望에도 不拘하고, 그리고 우리의 見解差들이 매우 深刻하고 根本的인 性質의 것임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가 對話의 실마리를 끊어서는 아니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것이 歐洲 및 우리 兩國家住民의 平和와 安保에 대한 關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本人은 우리가 對話를 進展시키는데 있어서, 努力할 수 있는 一連의 共同點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두 國家間 關係가 規制되기 前에, 이루어져야 할 協商에 관해 言及했습니다. 本人은 그러한 協商이 前提條件에 의해 負擔을 지게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과 兩側의 提議들이 그와 같은 協商의 土臺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서로 양해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協商을 통해서 兩國家의 國際機構에 있어서의 協력과 會員加入은 물론 國際關係의 問題를 規制하는 것도 試圖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 即 國際法의 原則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再次 反復하여 強調하였기 때문에 더 言及할 必要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어플트」에서 全權代表者를 任命할 것에 合意했다라면, 이 點에 있어서 進展이 이루어졌을 것이 확실하다고 本人은 이미 오늘 아침에 示唆한 바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條約上의 規制에 관한 協商을 進行시키기 위해 우리 兩政府間의 接觸을 進行시킬 方法에 대해 숙고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發言에 共通된 利害關係가 있다는 事實은 本人을 고무해 주고 있습니다. 暴力拋棄, 領土保全과 國境尊重, 相互不干渉과 兩國家의 統治權의 尊重等의 原則이 바로 그 것입니다.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努力도 그에 屬하는 原則입니다. 또한—本人이 이미 指摘하였읍니다—특히 貴下가 強調하는 相互間의 立法上의 抵觸을 排除하고 이러한 方式으로 差別規制와 差別이라고 느끼는 規制를 廢棄시키는 문제가 解決可能한 지의 問題를 놓고 兩國家의 立法問題를 檢討하기 위한 努力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意見差異에도 不拘하고 貴下의 一連의 政治的 質問에 肯定的인 對答이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關聯해서, 聯邦政府는 얼마 前부터 論議에 들어간 歐洲安保會議를 위해 慎重하게 準備中에 있습니다. 聯邦政府는 歐洲國境을 尊重하고 있고 歐洲平和와 安保를 위한 努力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分野의 問題를 둘러싼 여러가지 批判的 發言이 되풀이 되어도 事實을 전혀 變更시킬 수 없습니다. 貴下는 우리의 本質的 問題를 놓고 계속 兩者擇一의 立場을 固守하고 있으나 과연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關係라는 事實로부터 어떠한 肯定的인 結果를 兩國家의 住民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鮮명한 印象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貴下는 우리들이 追求하고 있는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도 人間의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制와 關聯하여 意味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具體的으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首相, 貴下는 우리의 이 質問에 對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對答을 얻는 경우,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貴下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이라고 強調하는 그 問題 역시 解決可能性이 있다고 確信합니다. 本人은 다시 한번 우리의 條約이 우리의 全般的 相互關係와 關連시킴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고 그 條約이 純 形式的인 法律行爲로만 考察할 수는 없다는 點을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에서 이 問題를 다른 角度에서 보려한다면 本人은 그것을 理解할 수 없을 것입니다. 本人은 우리 國民이 우리의 實際的 關係改善을 가져오게 될 모든 規制를 支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보장합니다. 우리 政府 역시 모든 態勢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貴下도 貴側의 立場을 再檢討하고 一定한 時期에 우리 兩政府間의 對話를 계속 하기 위해 서로 接觸할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中斷하지 말고 可能한 모든 問題 解決方案을 찾기위해 努力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소한 問題일지라도 어떠한 進展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出處：1970年 5月 23日字 公報 71號〉

## ⑥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초발언문(오후)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가 序頭에서 提起한 여러가지 質問과 방금 發言한 質問들이 根本的으로 本人이 앞에

서 사실상 對答했던 問題들이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이제 時間이 許諾하는 程度에서 一連의 質問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貴下의 質問中 몇가지 問題에 本人이 答辯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가 答辯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貴側의 見解에 同意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相互間의 見解差異를 對比할 必要性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다시 한번 總괄적으로 몇가지 基本的인 생각을 表明하겠습니다. 그 中の 몇가지는 이미 本人의 演說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主權國家들간에 通用되고 있는 바와같이 歐洲平和와 安全에 關心을 가지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提議를 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모든 基本問題에서 具體的인 事項을 확정하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에 관한 條約草案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즉각적인 유엔 加入과 그의 傘下機構加入을 위해 努力해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家 政府首腦間의 對話를 위한 提案을 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會談場所와 其他 問題에 있어 恒時 큰 好意를 表示했고, 많은 忍耐을 發揮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곳 「캄셀」 本會談에도 해당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代表團의 「캄셀」旅行이 「네오나치즘」적인 挑發과 暗殺陰謀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問題에 대한 關心과 本會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에 오기로 決定했습니다. 本人은 貴下가 이에 대한 올바른 評價를 해줄 것을 바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도 認定하는 바와 같이 社會體制의 根本的인 對立성과 異質性에도 不拘하고, 社會主義的인 獨逸民主共和國과 後期資本主義的인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平和的 共存關係를 達成하는 方法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主導的인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根本的인 問題에 있어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否定的 態度에 直面하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의 異議, 留保, 條件들로 인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위한 길이 지금까지 차단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本人은 貴下의 오늘의 發言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계속해서 이런 破壞的인 態度를 公公연히 表明하고 있다는 것을 看破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規制를 위해서 貴下가 提議한 原則들은 단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대한 偽裝된 그러나 分명한 拒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貴下가 言及한 多數의 項目에도 不拘하고 本人이 貴下의 言及에서 看取할 수 있었던 것처럼 貴下는 決定的인 項目이라 할 수 있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必要한 核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貴下가 우선 第1次的인 措置를 먼저 取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現實狀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오직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平和와 人間을 위해서, 그리고 歐洲安保를 위해서 긴급히 要求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아직도 變함없이 國際法的 原則에 입각한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樹立을 拒否하는데 집착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歐洲平和라는 긴급한 問題가 바로 그 때문에 未解決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聯邦政府의 몇가지 宣言中에는 聯邦政府도 現實的 기반위에 서려는 것을 보여주는데, 例를 들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立的인 兩體制를 서로 混合시킬 수 없다고 宣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概念은 이러한 宣言을 또 公公연히 否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어폴트」에서의 對話와 「캣셀」에서의 오늘의 對話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아직 現實的인 狀況에 입각하여 唯一한 可能性있는 結論을 導出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를 수립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表明하였습니다. 貴下는 수락할 수 없는 「獨逸內部關係」를 立證하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必要한 國際法的 關係 代身에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概念을 여러번 使用하였습니다. 貴下는 確實히 本人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社會的 現實과 政治的 現實에 一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와 關係해서 政治的 現實들을 상기시켜 立證했던 本人의 發言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首相閣下는 獨逸聯邦共和國이 憲法上 「民族의 單一性」에 拘束되고 있는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도 憲法上 그것에 拘束되어 있다고 闡明하였는데, 聯邦共和國 基本法과 獨逸民主共和國 憲法을 이처럼 比較하는 것은 正當하지 못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은 實上 周知하는 바와 같이 聯邦共和國 代表者에 의해서 制定된 憲法이 아니라 西方強大國, 특히 「아메리카」合衆國의 代表者들에 의해 成案되어 西獨住民에게 分斷의 憲法으로서 強요된 것입니다.

그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은 民族團合에서 分離되었고 單獨國家로, 「나토」의 加盟國으로 되어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만이 저주스러운 獨逸歷史로부터 참다운 教訓을 받았다는 事實, 獨逸民主共和國에서만 「포츠담」協定の 根本的인 規定들이 決定的으로 實現되었다는 事實,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만이 人民이 統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的 獨逸民族國家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戰爭의 根源이 除去되었고 또한 獨逸人民의 平和國家이기 때문에 그 存在와 政治는 國際法과 一致합니다.

그러므로 犯罪的인 獨逸「파시즘」에 대한 反「히틀러」聯合의 勝利의 結果로 이루어진 歷史的 變化와 帝國主義로부터의 獨逸民主共和國人民의 解放을 白紙化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소위 獨逸內部的 特殊關係를 樹立하려는 모든 試圖는 오직 唯一代表라는 越權行爲를 유지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을 後見하려는 目標을 追求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다시 한번 아주 明白히 그와 같은 方式이 결코 모든 差別을 止揚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原則일 수 없고 따라서 受諾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오늘 貴下의 發言에서 결코 다시는 독일땅 위에 戰爭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強調하면서 1945年以來 反「파시즘」勢力이 追求한 原則을 再引用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保障하는 것이 「포츠담」協定을 체결했던 反「히틀러」聯合에 屬한 主要強大國의 主目標였으며 同協定은 國際法上 拘束力을 가지고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해서도 그 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파시즘」과 軍國主義를 帝國主義의 뿌리와 함께 완전히 根絶하고 社會生活을 基本的으로 民主化함으로써 再論의 여지없이 保障되었습니다. 따라서 獨逸民主共

和國은 歐洲에서 平和와 安保를 위한 主要國家가 되었고 따라서 自主的인 獨立國家로서 1955年 9月 20日字의 獨逸民主共和國과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間의 國家條約에서 固定된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을 포함하여 모든 國家와의 關係를 完全히 自由로 이 樹立할 수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國際法的 關係를 거부함에 있어 4大強國을 방패로 삼는 것은 誤導이며 그릇된 處事입니다. 그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포츠담」協定の 基本的 規定들이 오늘날까지 履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치즘」이나 軍國主義도 根絶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會談과 관련하여 우리는 결코 枝葉的 現象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克服되지 못한 過去를 政治的으로 表現하는 것을 問題視하는 것이며 우리의 相面이 바로 「네오나치즘」적인 策動의 目擊場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反「히틀러」聯合의 主要強大國들은 여전히 獨逸聯邦共和國에서 「포츠담」協定을 實現할 權利와 義務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聯邦首相, 貴下가 오늘 4大強國의 權利와 責任을 말했을 때 分明히 바로 그 點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貴下의 提案의 目的은 오히려 分斷을 고착시키고 聯邦共和國을 「나토」에 統合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의 合併을 追求하고 있는 「파리」條約에 獨逸民主共和國을 묶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貴下는 오늘 午後 이곳에서 「파리」條約 第7條 第1項을 引用하였으나 그 項目은 원래 問題되는 項目은 아니며, 참으로 問題되는 項目은 引用하지 않았다는 것을 補充하여 부언하고 싶습니다. 本人은 第2項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講和條約締結時까지 署名國家들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그의 共同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協力할 것이다. 즉 聯邦共和國의 그것과 유사한 自由民主主義 憲法을 가지고 또한 歐洲共同體에 統合된 再統一된 獨逸이라는 共同目的을 實現시키기 위해 努力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의 政治的 目的인 것입니다.

本人의 見解에 의하면 第7條 2項은—條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本 第7條 1項과 同一한 意義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條文은 아직 完全히 効力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있는 이 條約文書가 舊版인지?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項目이 삭제되었는지? 萬一 그렇다면 本人은 本人의 發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本人은 이제까지 그에 관해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故로 本人은 第2項이 여전히 存在하고 있고 앞으로도 署名國家들이 그 條文은 効力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聯邦首相, 獨逸民主共和國이 本 第7條에 대해서 그어떤 諒解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오늘 獨逸民主共和國이 聯邦共和國의 他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방해하고 있다고 主張하였습니다. 이는 本人에게 금시초문이며, 聯邦共和國의 對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妨害하는 者가 있다면, 우리의 見解로는 그것은 바로 貴政府自體라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無條件 받아들이는 것을 拒否하는 側은 바로 聯邦政府입니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을 拒否하고 있습니다. 貴下는 그것이 우리의 對話의 目的이 아니며 또 우리가 規制해야 할 事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他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言及하였지만, 그것은 聯邦政府가 다름아닌 「오데르·나이세」境界의 承認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貴政府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1938年의 「뮌헨」協定の 無効를 拒否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獨逸民主共和國이

聯邦共和國의 對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妨害하고 있다고 不平하다면 本人은 솔직히 말해서 貴下가 그릇된 情報에 의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國家가 同等한 기반위에서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모든 差別을 떠나 正常的인 關係를 갖는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1970年 現在 이곳 歐洲에 살고 있는 時點에서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完全히 認定하는 것을 前提로 합니다. 그것은 달리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第2次世界大戰이 終了된 지 25年이 된 이제 關係正常化와 歐洲緊張緩和에 관해서 진지하게 論議하고 現實的인 政治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現狀認定부터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演說에서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貴政府의 態度에는 後見도 越權도 없다고 主張하였고, 나아가서 貴下 自身이 相互間의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最近의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態度를 注意깊게 지켜 보았는데, 貴政府는 여러 方法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대한 後見과 差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強化시켰다는 事實을 발견하였습니다. 本人은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의 主權的 權利를 侵害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을 後見하고자 하는 그같은 政策이 계속됨으로써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를 몹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獨立國家 즉 國際法의 主體로서 存在하고 있으므로 兩 國家의 相互關係는 第3國과의 關係에 있어서와 같이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을 無制限 適用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主權國家間의 關係에서 本質的 基準이 되는 이러한 規範을 무시하는 貴側의 態度는 本人이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獨逸民主共和國의 「유엔」歐洲經濟委員會 및 世界保健機構에의 同等한 加入을 妨害하는 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本人은, 聯邦首相 貴下가 오늘 午前의 演說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態度에 言及하면서 그것이 差別的인 것이라고 特徵지운데 대하여 貴下의 沒理解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로 되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歐洲經濟委員會의 貴下의 代表가 말한 것처럼 獨逸民主共和國을 主權國으로서가 아니라 「占領地帶」로서 내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대해 너무도 無理한 要求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論據는 文書로 提示되어 있습니다. 貴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參席과 活動에 대한 前提條件으로 提示한 目錄은 國際關係에서 한 國家를 差別하기 위한 典型的인 例입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貴下가 유감스럽게도 獨逸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을 差別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法令을 廢止하라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正當한 要求에 대해 對答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代身 貴下는 本人에게 聯邦政府 公報省의 公表된 資料를 전해주었으나 그 資料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法律에 관한 知識이 缺乏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誤解부성 이었습니다.

이 資料는 西獨 立法과 司法이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國家들의 領域에 까지 擴大되고 있음을 確認하고 있고, 또한 越權的인 方法으로 이러한 法律上의 侵略을 『法の 平和와 法の 安保』라고 宣布하고자 試圖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現政府가 20年前부터 基民黨/基社黨에 의해 追求된 西獨 立法과 司法의 効力圈을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國家들에게 까지 擴大시키려는 復仇主義的인 政策에 執着하고자 意圖하고 있음을 뚜렷이 表現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動機를 가지고 主題를 다루는 것이 언제나 合理的이기 때문에 本人은——오늘은 5月 21日입니다——言及하지 않으면

안 될 한가지 事實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 本人은 5月 27日부터 6月 6日에 이르기까지 聯邦共和國에서 實施되는 人口調査를 위한 質疑書를 가지고 있습니다. 本人이 아는 한 이 質疑書는 5月 20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會談하기 하루 前에 住民들에게 分配되었습니다.

本人은 특히 그 質疑書의 第19項과 第20項에 유의하면서 그것을 여기 引用하겠습니다.

『第19項：本面은 獨逸國籍을 가진 者만이 記入하시오：즉 1939年 9月 1日(戰爭勃發)以後의 住所가 西伯林,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 獨逸 東方地域,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슈테텐란트」 東南 歐洲와 기타 地域의 東方 이웃 나라들을 포함해서 西獨地域에 있는 者

第20項：貴下는 終戰後,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에서 넘어 왔는가?

그것을 記入하면 어떤 條件들이 記錄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蘇聯占領地帶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그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貴下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本人은 5月 19日 그 質疑書를 報告받았을 때, 「브란트」聯邦首相이 한편으로는 10月 그의 施政演說에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을 두개의 獨逸國家라고 言及하고 또 한편으로는 上記 質疑書를 發行한다면 5月 21日 會談때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해 무엇이냐고 말할 지 모르겠다고 自問했었다는 것을 貴下께 말해야겠습니다. 결코 어떤 個人的 行動이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問題로 삼는것은 낡은 政策의 持續을 어떻게 評價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本人은 그것을 달리 表現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貴下의 發言에서 그에 관해 言及했을 때 本人의 發言表現이—本人은 貴下가 어떻게 表現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挑戰적이었거나 攻擊적이었다고 한다면 貴下는 原因과 結果를 混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原因은 물론 단순히 없어지지 않는 이곳 西獨의 事情에 있습니다.

다른 問題를 例로 든다면 一連의 法律問題인데 本人은 원래 貴下에게 잘 제본된 法律集을 傳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本人이 그것을 포기하려는 것은 貴側의 法律은 貴下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本人은 오늘 그것이 資料銀行에 保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개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最近의 法律을 例로 들자면 聯邦法律集 1970年 1月號 第2面 §6b에 있는 1969年 12月 22日字 公布 貨物自動車交通法을 보겠습니다. 즉 越境의 道路貨物交通에 있어 外國 또는 1937年 12月 31日을 기준으로 한 外國人管理下의 獨逸帝國領域에서 交通이 許容되어 있는 貨物車의 경우 境界通過地點의 地方當局이 그 主務官廳이 된다.

聯邦共和國에 所屬하지 않으나 1937年 現在로 獨逸帝國領域에 住所地를 둔 自動車에 대한 管轄權은 國境通過地域의 地方當局에 있다. 獨逸國境을 1回以上 通過할 경우에는 첫 번 通過地點의 地方當局이 主務官廳이 된다. 國內에 本社를 갖지 않은 企業體車輛에 대해서는 國境稅關이 所在하는 州 交通官廳이 外國으로 부터의 첫 通行時에 ……를 決定한다. 等等……입니다.

그리하여 이 分野에는 그밖에 一連의 여러가지 法律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內國」 「獨逸航空機」라는 개념을 一般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1969年 11月 6日에 制定된 移轉法, 1969年 11月 16日字의 航空交通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再三 言及되고 있는 內國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立法에 의하면 內國이란 1937年의 獨逸帝國의 領域을 뜻합니다.

그것은 물론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聯邦共和國의 內國은 여기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을 包含하여 聯

邦共和國의 이웃 國家들과 境界를 하고 있는 聯邦共和國의 領域을 指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오늘 貴下의 政府 代表者가 새삼스럽게 分界線(Demarkationslinie)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言及했던 것입니다. 서로 獨立한 두 國家間의 國境이 問題되고 있으며, 그것이 누구의 마음에 든다든가 그렇지 못한가의 與否는 전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事實上의 國境이 主要한 問題입니다. 그런데 貴側은 우리가 「에어폴트」와 「캇셀」에서 가진 對話에서 하나의 分界線을 만들고 그것을 命名했을 뿐 아니라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線이 지워진 「에어폴트」—「캇셀」』이라는 歷史的인 記念銅錢을 發行하고 있습니다.

本人이 「에어폴트」에서 라디오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비열한 보도를 들었다고 귀하에게 말한 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낡은 동전에는 아직도 一種의 境界線이 가늘게 그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完全히 사라졌습니다.

本人은 그것이 霧圍氣改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貴下에게 그것을 留意해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貴側이 무엇이라고 하건 語調에 있어서 攻擊的인 것은 우리 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基本的인 問題가 重視되고 있는데, 過去의 모든 累犯—우리는 이를 慎重히 記錄할 것이고 또 記錄해야 합니다—과 그와 유사한 行爲들은 부득이 不信을 惹起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 立法과 司法에 있어 一般的으로 認定된 엄격한 國際法的 原則에서 出發하고 있고 이것은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에도 해당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어떤 方法으로든 결코 獨逸聯邦共和國의 主權的 權利를 侵害할 정도로 越權하고 있지 않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한 國家의 統治權이 根本的으로 自己領土의 境界內에 限定한다는 原則을 決定的으로 固守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이러한 原則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는 것은 同等資格을 認定하는 것이 아닙니다.

貴下는 貴下의 演說內容에 비추어 볼 때 分明히 反革命的인 「灰色的인 計劃」을 持續하고 —聯邦政府의 閣僚들의 公式的 宣言에서 確認하고 있듯이— 그 計劃을 擴大시키는 努力을 集中하고 있다는 本人의 見解에 對答하지 않고 있습니다.

貴下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專門家와 學者들이 資料에 精通하지 못하다고 批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資料에 精通해 왔고 不斷히 이를 위해 努力하고 있기 때문에 貴下의 主張은 無根據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入手可能한 새로운 資料를 상세히 分析함으로써 얻은 結論입니다.

復仇主義的인 結社와, 「후프카」(Hupka)氏와 같은 聯邦議會의 社會黨 所屬 議員까지도 여전히 歐洲 平和를 위협하는 그들의 目的을 公言하고 있습니다. 「네오나치즘」은 계속 擴大되고 있으며 특히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平和共存을 決定的으로 拒否하고 最近 그것을 강조하는 基民黨/基社黨과 그 指導者의 周邊에 계속적으로 雲集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支配勢力들은 反「파시즘」的이며, 民主的인 길을 걷는 것을 공공연히 拒否하고 있습니다. 反對로 그들은 「네오나치즘」을 寬容하고 그들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캇셀」會談과 關係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번 言及한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政府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파시즘」的 殺人陰謀가 활기있게 움직였습니다.

本人은 그동안 貴下로부터 貴政府가 司法相과 檢察廳에 指示하여 몇가지 措置를 取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그것이 報道되지도 않았고 우리 自身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指摘해야 겠습니다. 反對로 言論界에서는 방대한 經費를 들여 新聞, 특히 特定 新聞「콘

제른」을 통해서 殺人陰謀를 선동했고 또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歲出은 —本人이 이미 한번 言及했지만— 史上最高의 金額에 達하였습니다. 執權黨인 社民黨黨員의 領導下에 있는 聯邦軍은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國家에 對한 前進戰略의 精神으로 教育받고 있습니다.

貴下는 오늘 午後, 貴下의 軍隊를 防衛目的으로 保有하고 있다고 闡明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公表된 「나토」文書, 決議文, 「콤무니케」 및 其他의 文書資料를 想起할 수 있으며, 그 어느 곳에도 소위 前進戰略이 포기되었다고 言及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最近 —本人은 그것을 이곳에서도 言及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 對한 美國의 공격이 軍事上 必然的인 것이었다고 한 貴政府 外相의 聲明을 留意해야 합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말과 行動이 엄청난 矛盾에 빠져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平和를 말했으면 行動이 반드시 뒤따라야 歐洲人民에게 寄與하는 것이 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聯邦政府에게 反復하여 그와 같은 行動을 促求하였습니다.

따라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가능한 限 곧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的 關係를 수립할데 關한 條約을 締結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條約은 兩國家의 住民들에 對해서는 물론 歐洲安保를 위해서도 대단히 有益할 것입니다. 現國境의 承認과 歐洲의 領土의 現狀으로부터 出發하여 이 條約이 完全한 同等資格과 不干涉의 土臺 위에서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할 수 있도록 基本前提를 마련한다면, 獨逸民主共和國으로서 이를 即刻 締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本人은 貴下가 오늘 午後에 條約內容에 關해 提起했던 質問에도 對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는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해 基本前提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합니다.

聯邦共和國 市民多數의 利害關係에 따라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拒否할 하등의 理由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條約締結에 關한 聯邦共和國 政府의 從來의 否定的인 立場은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利害關係가 決定權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基民黨/基社黨과 美國의 支配集團의 利害關係가 決定權을 갖느냐하는 兩者擇一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即刻 「유엔」에 加入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이것을 그 條約草案 第8條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그리고 本人은 특히 이것을 指摘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思考에 根據합니다. 즉 「유엔」憲章에 明文化된 바와같이 「유엔」創始者들은 大戰은 끝났으나 「파시즘」적 獨逸에 의해 勃發可能性이 높아가고 있는 戰爭에 對備하여 앞으로의 새 世代를 戰爭의 災殃으로부터 保護하려는 諸國民의 意志에 의해 繼承될 수 있습니다.

獨逸帝國主義의 侵略政策에 의해 兩次世界大戰이 일어났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유엔」憲章과 「포츠담」協定이 이처럼 崇高한 目的에 符合되게 함으로써 獨逸땅으로부터 결코 世界 平和를 威脅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할 特殊한 責任을 지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加入이 歐洲協力, 國際的 協力 그리고 平和를 위해 오래동안 기다려온 必須的 措置라고 간주합니다.

「유엔」은 벌써 4半世紀동안 機能을 다해 왔습니다. 世界의 거의 大部分의 國家를 會員國으로 하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世界機構의 活動에 參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이미 1966年에 「유엔」加入申請을 한 바 있습니다. 聯邦政府도 即刻 會員加入申請을 해야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의 會員加入을 妨害하는 違法行爲를 中止하고 또한 「유엔」憲章의 精神에 따라 建設的인 協力을 한 意思가 있다는 것을 宣言해야 할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下는 一面 聯邦共和國이 主權國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他面에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유엔」機構加入申請을 共同聲明에 包含시킬 것을 反對하면서 特히 그 理由로서 美國의 反對意思를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聯邦共和國의 政策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의 利益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美國의 利益에 一致하고 있다는 結論이 導出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아직까지 同盟國의 反對를 理由로 그렇게 간단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加入申請에 同意한다고 闡明하지 않으면서도, 貴下는 지연적인 질문에 答辯하는 데만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아직도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妨害하고 있는 保守的이며 反動的인 勢力이 逐出될 時期가 오리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유엔」會員國이 되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外交關係가 樹立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確信하고 있습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캣셀」에서 進行되는 協商에서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에 同意하고 그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準備을 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非現實主義的인 態度는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의 利害關係는 물론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利害關係와 矛盾되는 것입니다. 그런 態度는 歐洲心臟部의 緊張緩和와 安保를 追求하는 모든 歐洲人民의 努力과도 對立되고 있습니다. 우리 大陸의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수 10年間에 걸친 敵對的인 立場으로부터 現實을 承認하는 理性的인 政策으로 轉換되고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생긴 現狀을—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와 「오데르·나이세」境界를 포함해서—궁극적으로, 留保함이 없이 承認함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고 內閣의 이름으로 本人은 다시 한번 結論적으로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수립하는데 관한 條約을 即刻 締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은 그에 適當한 草案을 提出했으며 그 草案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關係規制를 위해 要求되는 모든 內容을 包含하고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유엔」機構에 同等한 會員國으로 즉각 加入하는 措置를 取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어폴트」와 「캣셀」에서의 우리의 對話經過를 高찰해 보건데 유감스럽게도 聯邦政府는 아직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한 意圖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結論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關係 規制속에는 一連의 其他問題들의 規制가 종속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解決해야 할 것인가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自身の態度에 관해 熟考할 수 있는 一定한 時間을 必要로 하고 있음은 分明합니다.

聯邦首相,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의 提議가 兩國間의 平和共存을 達成하기 위한 最善의 길을 提供해 준다는 것을 貴政府가 認識하기를 希望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이러한 基本問題에 있어 現實主義的 態度를 보일 때에는 언제든지 곧 政府首腦들의 對話를 持續할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即刻 「유엔」에 同等한 會員國으로 加入해야 하며, 그것은 獨逸民主共和國 人民과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에게 利益이 됨은 물론 모든 國家의 普遍的, 平和的 協力을 追求하는 世界機構의 利益에 寄與하기도 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유엔」憲章의 崇高한 目的을 尊重하고 世界人民 相互間의 理解에 公헌할 것임을 다시 闡明하는 바 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의 20年間에 걸친 一貫性있는 平和政策을 계속 推進하면서 將次 人間을 위해 歐洲의 平和와 安全에 寄與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다할 것입니다.

〈出處：1970年 5月 23日 東柏林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